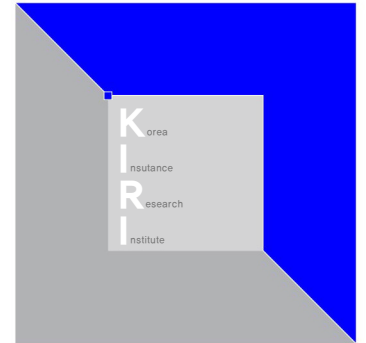




2016 연차보고서

2017. 1

『2016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고사성어에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칼을 강에 빠뜨렸는데, 배에 칼이 떨어진 자리를 표시하였고, 배가 물에 이르자 칼을 찾으러 표시된 자리 바로 아래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을 따라하는 경우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저수익 지속,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새로운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 자율과 경쟁 심화, 제4차 산업혁명 태동 등 전인미답의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사례나 경험 등을 고집할 경우 각주구검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도 자연에서 살아남는 종(種)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고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며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이며,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보험연구원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연구계획 등을 정리한 2016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은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건강보장 강화, 보험시장 변화 대응 등 3대 사업목표하에 이루어진 2016년 연구성과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상품 개발, 판매채널, 소비자 보호, 자본 확충 등과 관련하여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급여 관리 및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보완 등 사회안전망 개선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보험산업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보험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영 및 정책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장의 경우 주요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 각종 연구행사 내용입니다. 지진 리스크에서부터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사적연금,



저금리 대응, 소비자 보호,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그리고 4차산업혁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는 회계·자본제도 대응,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 제고, 신성장 동력 발굴, 경영효율화 지원 등 2017년의 4대 사업목표하에 수행하게 될 보험연구원의 주요 연구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보험법제, 연금·세제·사회안전망,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자율주행자동차·핀테크 등과 관련된 현안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4장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 관련 활동입니다. 보험 및 금융전문 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 정기간행물 소개와 금융·보험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등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인 5장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 연구조직과 각 연구부서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동안 꺾어보지 못한 길을 짙은 안개 속 걷듯 걸어감에 따라 보험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험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보험연구원장

한기정

한기정

I . 2016년 주요 연구

1.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16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0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현황 비교 및 시사점
- 21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시사점
- 22 유전자변형생물체 리스크와 보험제도 운영 방안 고찰
- 23 보험회사 지배구조 OECD 권고안의 내용과 시사점 - 이사회 구조 및 권한을 중심으로
- 24 기업성 손해보험의 요율규제 변화와 영향
- 25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관계
- 26 일본의 퇴직연금기금 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과 시사점
- 27 고령자 주거 실태와 주거정책 방향
- 28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된 명목확정기여방식 적용에 대한 검토
- 29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사례 연구

2.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 32 보험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3.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건강보장 강화

- 3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제언
- 38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 40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 42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 44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46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4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보장 기능을 중심으로

4. 보험시장 변화 대응

- 52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54 보험산업 미래
- 56 온라인 채널 활성화 방안
- 58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 6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62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방안
- 64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제도 개선 방안
- 66 보험사기 규모 추정

5.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70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 방안: 판매단계 의무 및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 7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장기 가입 인센티브 도입 방안 및 재정 설계
- 74 우체국보험 고객복지 증진 방안 연구: 시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 76 보험상품 표준약관제도 개선 방안 연구
- 78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 중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 80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6. 금융·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 84 인구 변화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요율 최적화
- 84 상품 다각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85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과 경영 성과

CEO Report

- 87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87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88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89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 91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점검과 대응 방안
- 92 세액공제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 변화와 시사점
- 92 행태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 사례와 시사점
- 93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
- 94 MetLife 분사 계획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 95 국민연금의 소득상한 인상 타당한가?

Contents

- 96 연금해지 및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은 과도한가?
- 97 저금리환경하에서 신상품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 98 보험회사 기업대출 증가 원인과 시사점
- 98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 100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도입에 대한 제언: 호주 퇴직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1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
- 101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진단과 평가
- 102 국민연금 반·추납 및 임의가입 확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103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 103 비급여 진료 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 10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 105 타겟데이트 펀드의 역할과 의미
- 106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 107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방안
- 108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08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 비교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 109 일본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제휴전략과 시사점
- 110 전속설계사체널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 111 M&A에 의한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시사점
- 112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 112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 113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Solvency II 개정의 시사점
- 114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 방안
- 115 정신질환자의 보험 접근성 제고 방안
- 116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급증과 과제
- 116 치량 노후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
- 117 브렉시트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주는 시사점
- 118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 118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 119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20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 121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 122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 123 정부3.0과 보험산업의 정보 이용
- 123 미 대선결과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 124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 방향: DCDS 운영 사례
- 125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
- 126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의 의미

- 127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1년 평가
- 128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 128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 129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 사항
- 130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131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논의와 보험상품 개발 추이
- 131 세계 재보험시장 연성화 동향

KiRi 리포트 이슈분석

- 133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검토에 관한 소고
- 133 빅데이터 분석모형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전략
- 133 차이나리스크가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134 변액연금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 사항
- 134 「보험다모아」의 평가 및 개선 방안
- 135 자동차보험 CM상품 판매 증가의 영향 및 시사점
- 135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의미와 시사점
- 136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 136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일시정지 표지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136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 137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 1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
- 138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
- 138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서의 주가연계증권(ELS)
- 139 종신보험 가입자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 140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보험산업의 미래
- 140 1인 가구 증가가 보험수요 감소를 초래하는가?
- 140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 141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
- 141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증가와 위험관리
- 141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의료비지출
- 142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
- 143 MetLife의 SIFI 지정 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
- 143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
- 144 한국의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과 시사점
- 144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
- 145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보험회사의 진출 기회
- 145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Contents

146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
146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147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147	저성장기 생명보험 마케팅 전략
147	통합연금포털 현황과 평가
148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방안 검토
148	ISA 판매 현황 분석
148	일본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평가와 시사점
149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
149	금리 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50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150	스마트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 조건
1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시사점
151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52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152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의 시사점
153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의 공동행위 관련 쟁점
153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153	비전속 채널에 대한 감독규제 개편 필요성
154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납부기간 확대 방안
155	국민연금 대납자 소득공제법안의 시사점
155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156	보험회사의 중금리 대출사업 관련 고려 사항
156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156	P2P 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
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57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본질적 업무 위탁 필요성
158	초장기 국고채 도입 의미와 시사점
158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159	생산물리콜보험의 활성화 필요
159	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책 평가
16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이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
160	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
161	비급여 관리 관련 논쟁

- 161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162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 162 대형 법인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실효성 제고 방안
- 163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확대와 그 배경
- 163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도입과 과제
- 163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평가
- 164 연금저축 가입 현황과 맞춤형 세제 지원 필요성
- 164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 제고 필요
- 165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
- 165 인공지능의 보험 판매채널 진출 의미
- 166 트럼프의 당선과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방향
- 166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 16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 방안과 고려 사항
- 167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 방안
- 167 경기순환과 해지환급금
- 168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평가와 과제
- 168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의 시사점

고령화리뷰 포커스

- 169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계와 개선 방안
- 169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비: 생애말기 의료비를 중심으로
- 170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 과제
- 17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도의 도입 여건 평가 및 과제
- 172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의 변화와 특징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 173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차등제도 적용
- 173 거치연금의 노후소득 증대 효과
- 174 만혼·비혼자의 성별 특성과 저출산
- 174 퇴직연금 거래 비용의 표준화 필요성
- 175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국제 비교
- 175 트럼프와 오바마케어
- 176 연기연금의 혜택은 누가 받는가?

Ⅱ . 2016년 주관 행사

1. 정책·경영세미나

- 180 제주의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과 가능성
- 183 한국의 지진 리스크, 현황 점검과 대비 방안
- 187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 189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191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 방향
- 193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 195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197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 20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 203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방안
- 206 자율주행차시대, 법적 현황과 과제
- 209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

2. 국제세미나

- 214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220 장기보험 계약가치 평가 및 활용 방안
- 221 IFRS4 2단계하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 222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시각: 구조 변화 및 투자 환경
- 223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위험경감기법 비교와 활용 방안

4. 고령화포럼

- 2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227 OECD 국가의 공·사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5. 금융정책포럼

- 230 미국 GA의 선진 사례와 한국 판매채널의 발전 방향

6. 기타행사

- 232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 233 보험사기 규모 추정

Ⅲ. 2017년 주요 연구계획

1. 회계·자본제도 대응

- 236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방안
- 236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전략

2.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 제고

- 237 퇴직연금세제 환경 변화와 개선 방안
- 237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 방안
- 237 노후 자산포트폴리오 적정화 방안
- 238 주요국 공·사건강보험 연계체계 분석
- 238 도덕적 해이 완화 정책의 후생효과 분석

3. 신성장 동력 발굴

- 239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 239 건강생활서비스 보험산업 활용 방안
- 239 정신질환 보장 상품 활성화 방안
- 240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방안
- 240 EW 연계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 240 보험상품 변천과 향후 과제

4. 경영효율화 지원

- 242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방안
- 242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 242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개선 방안
- 243 보험회사 해외투자 환헛징 전략

IV. 2016년 연구 관련 활동

- 246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247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 24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249 KiRi 고령화리뷰
- 249 각종 대외 연구 활동
- 253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 254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V. 일반 현황

- 256 경영비전
- 256 연혁
- 257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258 임직원 현황
- 258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261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2016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포커스·이슈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 및 웹 월간지 『고령화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2016년 주요 연구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건강보장 강화

보험시장 변화 대응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금융·보험 이슈 연구



Chapter 1

금융·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현황 비교 및 시사점
-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시사점
- 유전자변형생물체 리스크와 보험제도 운영 방안 고찰
- 보험회사 지배구조 OECD 권고안의 내용과 시사점
- 기업성 손해보험의 요율규제 변화와 영향
-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관계
- 일본의 퇴직연금기금 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과 시사점
- 고령자 주거 실태와 주거정책 방향
-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된 명목확정기여방식 적용에 대한 검토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사례 연구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정책보고서

16

연구배경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도 나타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산업은 국내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금리는 보험회사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여력 약화도 야기하고 있다. 과거 고성장을 주도하였던 저축성보험이 저금리로 인해 신규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 둔화 효과를 상쇄하면서 지속적인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FRS17과 이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규제 환경의 변화도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시행과 이에 따른 자본확충 요구 확대는 보험회사의 목표 및 영업전략 수립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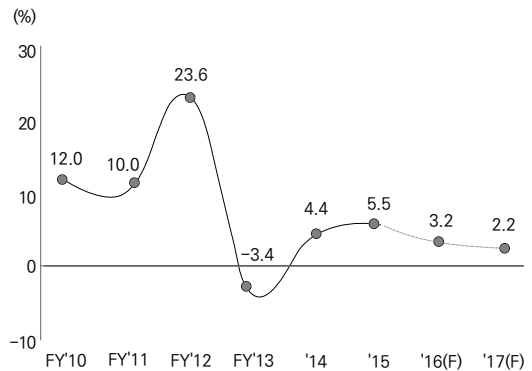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토대로 2017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를 전망함과 더불어 효과적인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경영과제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보험산업 전망

〈보험산업 종합〉

2016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2% 증가에 그치고, 2017년 들어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어 2.2%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자료: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생명보험〉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보험은 생존보장을 강화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과 유병자 및 고령자 건강보험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부진으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 호조세에 힘입어 7.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으로 연금보험 부진이 계속되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1.6% 증가가 예상된다.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2016년에 비해 1.0%p 하락한 1.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계속되어 역성장(-1.2%)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 신규 수요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5.8% 증가가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생명보험	117.2	6.0	120.4	2.7	122.4	1.7
보장성보험 ²⁾	37.7	9.2	40.6	7.7	42.6	4.7
저축성보험 ³⁾	64.9	2.6	63.6	-2.0	62.9	-1.2
퇴직연금	13.6	15.9	15.2	11.6	16.1	5.8
기타 ⁴⁾	0.7	-5.1	0.7	-0.4	0.7	0.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종신보험, 이,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

3) 생장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

4) 일반단체보험을 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

2016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세로 인해 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증가가 예상된다. 종목별로 보면, 우선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 의료비 보장 관련 신규수요 확대 등으로 장기상해·질병보험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신규수요가 위축되며 성장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으로 역성장(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대물담보 보장 금액 확대 등에 따라 11.0% 증가가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3.0% 증가가 예상된다.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부문과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부진으로 인해 2016년 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이 계속해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높은 의료수요와 보험니

즈 변화 및 보험료 현실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금운용 부담 및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1.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의 보험료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와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 인상 효과에 힘입어 4.8% 증가가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15		2016(F)		201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전체 손해보험	80.2	4.8	83.3	3.8	85.7	2.9
장기손해보험	46.6	4.9	47.8	2.6	49.2	2.9
연금부문	10.4	-0.9	10.3	-1.0	10.2	-1.1
자동차보험	15.0	10.7	16.6	11.0	17.4	4.8
일반손해보험	8.3	1.8	8.5	3.0	8.9	4.2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전망 근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전망의 근거로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금융규제 변화, 보험 영업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화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고령자의

료비보장 필요성을 확대시켜 보험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대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향후 보험수요를 잠재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상품에 대한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간 차이가 커져 보험회사들은 장수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착화 추세가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보험료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경제는 미국 대선 결과, 자본건전성 강화,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중국 경제 둔화 및 과다부채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잠복하고 있다.

셋째,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에 영향을 주어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금리역마진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저금리로 적립이율대비 운용자산이익률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최근 금융규제 환경 변화로 보험료 수입 확대와 수익 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규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영업전략 변화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보험수요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예정, 소비자보호 강화, 그리

2017년 보험회사에게 직면한 주요 경영과제로 경영목표 재정립, 금리위험 관리, 자본구조 관리, 자산운용, 신수익원 창출, 판매채널 관리를 제시하였다.

고 금융규제 완화가 있다.

다섯째, 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와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저축성보험은 부진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변동성 축소를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경영과제 2017년 보험산업 주요 경영과제로 경영목표 재정립, 금리위험 관리, 자본구조 관리, 자산운용, 신수익원 창출, 판매채널 관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보험회사들은 성장 위주의 경영목표 수립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가치(EV) 제고를 위해 경영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양적인 성장전략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어야 하며, 비용 관리, 위험관리, 자본관리가 항상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성과 및 보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금리역마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보증이율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헷지 방안 마련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셋째, 보험회사들은 가용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할인율, 가용자본 인정 범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요구자본 관리 능력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적인 자본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산운용전략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본확충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 즉, 요구자본 관리를 고려한 부채 특성에 따른 투자전략(LDI)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만큼 해외투자 환경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관리 전략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신수익원 창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투자자문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방안, 후취형 변액보험 판매 확대, 중고자동차 보증연장보험 도입,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속과 비전속 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채널전략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은 향후 채널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C-P-C(Customer-Product-Channel)전략에 따라 고객, 주력상품과 해당 채널 간의 유기적 연관성과 특성화된 고객군별 맞춤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테마진단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겨울호

저금리 기조 속 대체투자 수요 확대에 의해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국내외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시장이 발달한 결과 보험회사의 부동산 간접투자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미국 전체 부동산 투자 중 부동산 대출이 57.4%, CMBS 26.2%, REITs, 조인트 벤처 투자 등은 각각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저금리 시대에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2015년 글로벌 보험회사 CFO·CIO 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대체투자 가운데서도 상업용 모기지론,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른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축적된 투자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해 부동산 자산 리스크 측정 기준을 다양화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관련 위험계수를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안에 따라 상당수 부동산 관련 투자 위험계수가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경우 리스크 측정 기준의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뿐 아니라 담보대출 상환 일정에 따른 현금흐름 및 부채상환가능비율(DSC) 등을 통해 리스크 측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투자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상업용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익성 지표 개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경우 NPI, NCREIF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인덱스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예측관리가 용이하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의 Case-Shiller Index에 준하는 부동산 거래 지표 개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은 향후 수익률을 예측하고 표준화된 수익성 측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시사점

류건식(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년 겨울호

현재 우리나라는 근퇴법에서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가입 근로자의 약 35%(2012년)가 가입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대부분이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에서의 퇴직연금 교육 사례 및 특징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가입자 교육은 2002년에 제정된 확정각출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계속교육 실시에 대한 법규와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계속교육 실시가 미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가입자 교육 실시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투자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1년 8월 확정각출연금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추상성을 제거하고 가입자가 투자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업주의 계속적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투자상품 다양화에 따른 투자 관련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였다. 첫째, 가입자의 디폴트 운용 상품의 적극적 활용에 대비하여 운용손실 책임주체 등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둘째, 가입자에게 매칭 기여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기여 한도액과 그 효과, 운용리스크별 자산배분 예시를 하도록 하였다.

일본 가입자 교육의 특징은 첫째, 최근 디폴트 옵션상품, 라이프사이클 펀드상품 등과 같은 다양

한 운용상품 투자에 대비하여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둘째, 법령에 입각하여 기업연금연합회 등의 전문기관이 가입자 교육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 실시에 대한 기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교육모범 사례 발굴 및 사례집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 교육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넷째,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 교육 자격자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용규제 완화 및 선택폭 확대 등의 퇴직연금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므로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의 교육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입자 교육 가이드라인(교육지침)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처럼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를 상시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가입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투자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가입자 교육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가입자 교육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가입자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본의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과 같은 가입자 교육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리스크와 보험제도 운영 방안 고찰

이기형(선임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년 여름호

22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zations, 이하 ‘LMO’ 라 함)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정의되며, 그 자체로 생물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다.

LMO의 증가로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 피해사례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LMO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나고야 쿠티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어 손해배상책임법제 마련이 이슈화되고 있다. 추가의정서는 LMO 피해구제 사항을 자국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바이오안전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의정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고는 LMO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재무적 보장장치인 보험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보험제도의 담보대상이 되는 LMO 리스크는 LMO를 이용,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LMO 리스크를 보편적인 부보가능 리스크(insurable risk) 관점에서 보면, 보험 가입집단의 대량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고발생의 우연성, 손해액의 측정가능성, 거대손해 가능성 등은 일반적인 리스크에 비해 다른 특징이 있으며,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MO 리스크의 보험제도화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독일, 스위스 등은 유전공학법 등에 LMO 손해배상책임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보험회사들은 LMO(GMO) 면책특약을 첨부하거나 보상한도액을 축소하고 자기 부담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인수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가의정서를 시행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불특정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제도로 보험제도가 국가보증 등 다른 제도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보증의 도입은 LMO 리스크보다 더 큰 환경오염 사고, 원자력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사기업의 경제활동에 국가가 보증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부적합한 책임이행방법에 해당된다.

향후 LMO 보험제도는 LMO 피해 특성 상 보험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되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으로 하고, 일정한 손해배상한도와 면책조항을 두어 독립적인 “LMO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보험 등에서는 LMO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여 상품운영의 혼란을 배제하고, LMO 리스크가 거대리스크임을 감안하여 글로벌 위험분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OECD 권고안의 내용과 시사점 - 이사회 구조 및 권한을 중심으로

이승준(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년 봄호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는 주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을 넘어 계약자,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ECD, IAIS, BCB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국제기준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OECD는 일반적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인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별도로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권고안」(이하 ‘OECD 권고안’)을 2005년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원칙 수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 권고안을 올해 말 채택할 예정이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 이사회의 리더십, 경력 및 독립적 의사결정과 효과적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수정된 권고안의 내용 중 주로 이사회 및 주요 임원의 권한, 책임, 구성 등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근간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이사회 관련 내용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OECD 권고안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이사회 등 각 기능의 주요 의무와 적격성, 독립성과 구성 및 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거버넌스 구조는 감시와 행정책임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책임자의 의무, 책임,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주(또는 상호회사의 회원 계약자) 권리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보호해야 한다.

이사회와 관련하여 수정된 OECD 권고안은 이사회 결정의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을 강조하며 의사 결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 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그 구성원 및 외부감사의 주요 의무, 책임, 적격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변화,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임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도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이사회 관련 조항은 OECD 권고안의 권고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제도상으로 많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법 집행 및 보험회사 경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성 손해보험의 요율규제 변화와 영향

김석영(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년 봄호

24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보험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도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보험 개발 자율성을 제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변경안의 의미와 향후 일반손해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협의요율로 구분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협의요율 적용대상 조건을 강화하여 협의요율 사용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요율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신고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반면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은 기본 요율의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요율의 자율성 강화, 보험회사 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반손해보험 요율 체계의 개선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의요율 외에 비통계적 요율 산출법인 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함에도 비통계적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규정 개정안은 비통계 요율 사용 시 사후 추가 적립금만이 반영되므로 미국의 자본 규제에 비해 영업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제도이다. 보험회사에 재무건전성 감독뿐 아니라 보험요율 산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험요율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역량에 맞는 전략이 요구되며, 일반손해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관계

이정택(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년 여름호

질병의 양상이 전염성 질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신상·신체상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이 금연·절주·건강한 식습관·규칙적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로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의 부족 및 흡연·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절주·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원인인 생활습관을 교정하며,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발병의 요인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중증질환으로 발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예방행위’로 정의하고,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서비스 이용이 수반되는 것을 ‘예방적 의료 서비스’라 정의한다.

이론적으로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한다. 치료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으로 인해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유인은 더욱 더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적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사후적 도덕적 해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예방행위의 차이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다면 보험 가입이 예방행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내재적인 특성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한다.

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나이, 성별, 교육, 소득수준 등에서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예방행위 및 예방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예방서비스 이용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관리·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퇴직연금기금 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 |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6년 제6호

26

정부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제도는 가입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연금모델이며, 최근 일본에서는 대규모 기금형제도 사기사건인 ‘AIJ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실패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AIJ 투자자문회사의 후생연금기금 사기사건’(이하 ‘AIJ 연기금 사기사건’)은 연기금 수탁사인 AIJ(투자자문회사)와 관계사들이 연기금들이 위탁한 적립금을 불법으로 운용하여 투자원금의 약 95% 손실을 입힌 ‘은퇴자금 도둑사건’이다. 일본 금융청에 의하면 투자실적을 조작한 안내자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수탁 계약을 모집하고, 관계사를 동원하여 고객을 속이고 파생금융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여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신규 고객의 수탁자금을 기존 고객의 지급에 충당하고,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투자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청이 밝힌 피해규모는 연기금 투자 원금 1,458억 엔 중에서 1,377억 엔의 손실이 발생하

였고, 총 84개 피해 연기금에 가입한 약 88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어 피해 연기금 대부분이 해산할 위기에 놓였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버스, 트럭, 택시, 백화점, 기계, 건설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자로 사실상 이들의 은퇴자금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이 퇴직연금과 함께 운용되는 구조로서 부실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적연금의 제공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탁제도 감시 기능, 고객에 대한 공시 및 상품정보 제공, 처벌 등 벌칙, 감독 및 검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 또한, 후생연금기금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등 책임 강화, 수탁자 평가절차 개선 및 교육 의무화, 연기금 전문성 확보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후생연금기금제도 해산을 유도하여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향후 일본의 실패사례를 우리나라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연기금의 목적과 지배구조, 책임과 권한을 법규에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사업자 특성별로 각각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연기금이 상품설명 등 일반투자자와 동등한 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적인 감독체계 정립과 수탁회사 및 연기금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가입자 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 주거 실태와 주거정책 방향

오승연(연구위원) |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6년 제6호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Aging in place 개념에 따르면, 고령자는 익숙한 장소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장소에서 생활하기 원한다.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며 신체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는 건강 및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주거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일상생활동작(ADL)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요구된다. 노인의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동작능력의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주택의 물리적 기능으로 보완하느냐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주거욕구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노후 주거환경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을 꼽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거주할 주택의 선호도가 달라지는데 건강이 나빠졌을 때 고령자 전용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의 주거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거노인일수록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최저주거 수준

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은 대부분이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이거나 장기요양대상자를 수용하는 요양기관이다.

선진국의 노인주거정책은 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의 주거욕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설보다 재택거주자를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주거약자지원법』에 근거해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이 부족하며 의료 및 복지가 결합된 주거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은 i) 노인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지원 및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ii) 주거와 의료 요소를 모두 갖춘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iii)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건강상태별로 케어의 필요 수준에 따라 자립 혹은 일부의존형 노인의 경우 주택개량과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완전의존형의 경우는 기존의 요양시설을 주거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만으로는 건강상태, 가구유형,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기업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전용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된 명목확정기여방식 적용에 대한 검토

최장훈(연구위원) |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6년 제7호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재정 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연금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높이거나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보수적 개혁¹⁾을 시행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혁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웨덴과 유사한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자동조정장치²⁾가 장착되어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으므로 도입하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와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개혁의 일환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추가한 수정 명목확정기여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A값을 명목확정기여산식에 추가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에서와 같은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대수명에 따라 급여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전체

적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정명목확정기여방식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증액되어야 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어야 하는 기본전제가 필요하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 기본원리는 기본적으로 수익비가 1인 상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연금급여 수준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연금 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 또는 급여 수준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임.

2)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또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등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사례 연구

전성주(연구위원) |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6년 제7호

정부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적 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해외 공적 퇴직연금 기금의 지배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도입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4가지 지배구조 모델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투자의사결정과 자산관리의사결정의 위임 형태에 따라 통합적 기능 위임형과 분리적 기능 위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투자의사결정에만 책임을 지는 투자관리 기능 분리형과 선출 혹은 임명된 정부관리인 1인에 의해 운영되는 1인 신탁형이 있다.

투자 의사결정과 자산관리 의사결정을 통합하여 위임할 경우 의사결정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자산부채 매칭을 달성할 수 있다. 각 의사결정을 분리하여 위임할 경우 엄격한 업무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있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은행의 퇴직연금기금을 운영하는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별도의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자산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투자관리 기능 분리형 모델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투자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CalPERS는 연금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이사과 투자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담당책임자를 별도로 고용하는 분리적 기능 위임형 모델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연금자산 관리 기능과 투자의사결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무 및 행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투자 의사결정과 자산관리 의사결정의 분리를 통해 엄격한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있는 분리적 기능 위임형이나 투자관리 기능 분리형 모델 도입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적 기금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방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운용위원회를 비롯한 연금기구들의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Chapter

2

금융개혁 이후 과제 모색

- 보험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변혜원(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박선영(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본 보고서는 상품가격 자율성 제고와 상품개발 다양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후 이루어진 보험규제 변화가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마련된 보험소비자 보호 조치들의 진행 상황과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보험규제 개혁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적 과제들을 정보공시제도, 영업행위 규제, 분쟁 및 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첫째, 정보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모집 단계별 정보 제공 내용, 자료, 설명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 이후,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보험회사 간의 상품경쟁, 가격경쟁을 통해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보험상품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돕는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별로 보험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은 확인사항을 제공하고,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도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저축성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질의응답형으로 재구성하고, 정보 제시 방식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의 비교공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선택, 가공할 수 있는 선택 엔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정보 집적방식도 표준화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보보안 관련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편을 통해 판매자의 소속을 알릴 의무와 500인 이상 대형 법인대리점을 대상으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제도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교 추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향과 계약내용 합치 여부, 비교 추천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서면화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면 비교추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효과적 정보공시를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한다. 셋째, 비교공시의 사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 엔진을 개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 사각 지대에 있는 비전속 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대형 판매채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형 비전속 대리점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비전속 대형 대리점의 전문인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로드맵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분쟁해결 및 배상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격규제 등 사전 규제가 대폭 완화된에 따라 보험회사 간 경쟁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보험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 주체는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 등 크게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기존의 민원자율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민원 관련 제도를 감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민원 데이터의 정보 집중과 투명한 공개

를 원칙으로 민원 정보 공개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민원 포털 사이트에 금융회사 및 업권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종 민원 데이터를 비교표로 게재해 소비자가 회사의 민원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분쟁해결 절차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구로부터 분리된 통합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감독기구에서 분리된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를 설립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민원을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결론 최근 실시된 보험규제 완화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보험회사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그로부터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Chapter

3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정립 및 노후소득·건강보장 강화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제언
-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제언

이태열(선임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본고는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2014)(이하 ‘선행보고서’)의 후속 과제이다. 따라서 선행보고서의 논의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책 제언에 있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보고서는 첫째, 거시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저성장에 따라 이를 부담할 거시경제적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현재 계획된 복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공적부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현 세대부터 점진적인 요율 인상을 시작해야 함을 제언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원 확충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총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사적부문(사적연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중간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공·사 협력을 통한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논의를 부문별로 재평가하면서 정책 제언의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우선, 본고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복지 부담 능력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와 국민부담(조세+사회보험료)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복지 감당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복지 비용 증가에 지나치게 불안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는 복지 부담 구조에 있어서 구성원 상호 간 형평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담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는 다른 국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현상은 조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각각 개별사안으로 다룬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조세와 사회보험 등 국민 부담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조직을 두고 납부자의 입장에서 국민 부담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셋째,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강한 공감대가 필요한 부문,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나 절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문 등 우리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에 근거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후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수익비가 나빠지는 만큼 가급적 전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확대 하지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 굳이 현 세대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수익비가 아닌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현 세대인 베이비부머가 다른 세대보다 많은 수혜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 세대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부담 인상을 시작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넷째, 국민건강보험의 요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심지어 개선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보다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보험료를 가중 평균하는 형태의 절충형 보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퇴직연금의 경우 세제 인센티브나 수익성에 비해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 DB형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사실상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퇴법상의 3년치 법정퇴직금을 보장하는 수준이 전부이다. DC형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원리금보장형에 한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

고 있는데,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보장 한도 내에서 분산 운용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용관리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겸할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는 보장 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가입자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건강보험의 경우 공보험은 민영보험이 의료 과소비를 조장하여 공공 보장률을 낮추고,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질병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에 공보험 급여액을 비교한 결과 질병에 따라서는 민영보험 비가입자가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소비를 더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상병별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공·사 보험 사이에 계약자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결론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강한 공감대가 필요한 부문,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나 절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문 등 우리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에 근거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가시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2013년 기준)은 27.4%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지니고 있는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등과 비교하더라도 자영업자 비중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영업자 증가가 노후빈곤의 위험 증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노후빈곤에 처할 위험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12.4%인데 반해 근로자의 빈곤율은 4.4%에 그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의 노후빈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상의 문제,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등을 살펴 본 후에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를 비교·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적 소득보장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내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0층(무기여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공적연금)은 국민연금, 2층(퇴직연금) 및 3층(사적연금)은 각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의 문제는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와 사적 소득보장체계의 문제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공적 소득보장체계 측면에서 볼 때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사업장 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공적 보장이 취약한 실정이다. 사적 소득보장체계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적연금의 운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있으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차별화는 미흡하다. 또한,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닌 노란우산공제 역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보다는 사업재기 등 생활유지 기능에 보다 목적을 두고 있어 3층 노후소득보장 역할은 매우 취약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은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의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금제도의 사각지대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적연금을 제공하는 사례(미국의 Solo 401(k), Keogh Plan, 독일의 Rürup-Rente 등)보다는 자국 내에 운영 중인 사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동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연금가입이 이루어지는 임의가입 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 자영업자가 전문가에 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올바른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상품 가입 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연금사업자가 제시한 특정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펀드(default fund)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연금자산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 특화된 Solo 401(k) 제도는 타 제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발생 시 적립금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실태, 주요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 소득보장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 소득보장체계는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자동가입제도 등)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2017년 이후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중도인출 요건의 개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긴급자금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투자중심 가입자 교육 강화 및 자동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최근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합의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정성희(연구위원)·이정택(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최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10년 이내에 2배 이상으로 급등이 예상되고, 결국 3,200만 명 국민이 가입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비급여 부문에 상존하는 과잉진료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곧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므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보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건강보험 역할 확대가 공보험 보장성 강화의 장애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소비자 편의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제안해 본다.

주요내용

현재 실손의료보험제도를 상품 구조·운영과 보험금 지급관리로 나눠 진단해 본 결과 다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 상품으로 단일 보장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과잉진료 유발 항목도 포함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 유인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액은 대부분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부담 구조를 보면 실손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 대로 이 중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는 4%에 불과한 상황으로,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대부분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또한 패키지 형태 가입 권유의 판매 관행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특약형(97%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소형 병원과 근골격계 비급여 의료비에 집중·심화되고 있으며, 비급여 의료의 명칭, 코드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고 비급여 의료의 가격·진료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진료 적정성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손보험 통계의 보험업계 집적·관리 기준 부재로 보험회사별 통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최근 손해를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비급여 부분의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
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의 미
비로 실손보험금 지급관리가 어렵고 공보험의 보장성도 약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사 간 협업을 통한 국민건강보장과 의료
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편의성과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현행 표준화된 단일 보장구조에서 필수 성격 기본형과 선택 성격 특약형으로 이원화된 상품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은 특약으로 별도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확대나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부과제도로 무사고자나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No Claim Bonus/Discount) 혹은 보험료 환급제도(Premium Refund System) 도입이다. 차등제 도입 검토 시 보험료 할인·환급 재원 확보를 위한 적정 보험료 수준 유지와 함께 의료 필수 이용자의 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계약전 환제도 도입으로, 특히 단체실손계약의 개인계약 전환옵션 도입 혹은 기존 특약형 가입자의 단독형 전환 유도를 위한 절차 간편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형 가입 및 판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와 같이 보험기간 1년의 단독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다섯째, 실손보험금의 청구·지급통계와 관련한

보험업계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손해율과 비용 구조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가 용이한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급여 의료의 명칭·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내역서의 표준서식 마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 사용 의무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실손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 편의 증대를 도모해 볼 수 있다.

결론

이제 곧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초고령 사회를 10여 년 앞두고 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은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 의료비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장을 확대하면서 총의료비도 관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국민의 건강보장을 책임진다는 면에서 공보험과 민영보험은 유기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상호 간의 협력과 역할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 효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 할 것이다.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정성희(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김미화(연구위원) | 보고서

42

연구배경 고령인구·만성질환자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점증하는 국민 의료비의 총량 관리와 효율성 제고가 전 세계적인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 2026년 초 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질병구조도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강화로 전환되고, 헬스케어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발한 융합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외연이 확대되면서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의료서비스의 공간적인 제약요인 극복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단순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이전의 유헬스 개념은 디지털·모바일 헬스를 포함하는 스마트 헬스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의 최근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대효과를 도출해 봄으로써 보험회사의 참여에 대한 당위성 확보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기가 점차 소형화·모바일화되고, 개인 스스로 정량적 수치(Quantified Self)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식사량·혈압·운동량 등 건강상태를 기록·관리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이 극복되면서, IoT·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홈에서 노인·만성질환자·사후관리환자가 원격 진료를 받거나 일상 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디지털화로 의료업무의 간소화 및 의료정보의 전산화·표준화·실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이종산업의 진입으로 공급자 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스마트기기·IT 플랫폼 등의 보급으로 서비스 간 연계가 용이해지면서 통합적·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공유가 활발해지고 개인 스스로 건강 관련 정보를 생성·집적·관리하면서 개인 기준의 의료·건강정보가 융합되는 추세이다.

헬스케어서비스의 최근 트렌드를 요약하면 ‘대체 의료기기 등장’으로 ‘개인이 시·공간 초월한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 생성’이 가능하며, ‘서비스·공급자·정보 간 융합’ 추세로 ‘국가 인프라의 활용’이 시장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기 트렌드를 고려해 볼 때 시장 활성화를 위

최근 헬스케어서비스는 질병 예방 강화와 산업 간 융합으로 시장의 외연이 확대되고 기술 접목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첫째, 서비스 공급이 IT 등 국가가 보유한 인프라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의 산업 육성 정책이 시장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중국의 경우 열악한 의료 환경의 대안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매년 법안 통과가 무산되어 왔다. 둘째, 헬스케어서비스에서 제도상 주요 쟁점은 서비스 행위가 현행 의료법 등에서 명시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의료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다. 기존에는 비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웰니스의 범위가 질병 예방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로 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 질환자의 합병증의 예방이나 빠른 치유를 위한 치료 보조 영역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상 의료행위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이전에는 없던 대체 의료기기가 등장하고 비의료인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와 함께 건

강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기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 FDA는 그간 유지해온 보수적 견지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환경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환자에 미치는 위험 기준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폐지하고, 기술 발전 속도 감안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재량적 규제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건강정보의 생성·관리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어, 건강정보의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정보의 표준화·융합을 통한 활용 확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다. 헬스케어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 단위가 아닌 국가 인프라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융합서비스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비의료행위 기준 마련과 불필요한 규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과 정보 표준화 및 클라우드 허용 등을 통해 개인건강정보 보호 정책 및 활용 확대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임태준(연구위원)·이정택(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보고서

44

연구배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발맞춰 2014년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까지 68%, 2025년까지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2009~2013 중기보장성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보장률 80%에서 일보 후퇴한 목표치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한 반면, 보험료를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하락시켜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노동 유인의 왜곡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인상폭이 과소 산정되어 목표 보장률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가 보장률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정량 분석을 통해 보장률 인상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장률 인상안에 대한 모의국민투표(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개인의 후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내용 모형의 핵심 경제주체인 가계는 연령에 따라 청·장년층 가계와 노년층 가계로 구분된다. 청·장년층 가계는 생산가능인구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반면, 노년층 가계는 비생산인구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계는 위험회피적(Risk-averse) 선호체계를 가지며, 기업에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임금과 이자를 지급 받고 이를 재화의 소비, 저축, 세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에 사용한다. 가계는 노동생산성, 의료비지출, 저축의 측면에서 상이할 수 있는데, 노동생산성과 의료비지출은 개별 가계 충격(Idiosyncratic Shocks)으로 매기 확률적으로 변화한다. 그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매기 변동하는데 위험회피적 성향을 지닌 가계는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통해 평생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저축을 한다.

모형의 생산 부문은 한 개의 대표 기업으로 구성되며, 기업은 최적 노동 및 자본 투입량 결정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모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계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달성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의 일부를 지원하며, 국민건강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은 가계의 저축 및 노동공급 유인을 왜곡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장률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폭이 과소산정되어 목표 보장률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에 앞서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여 목표 보장률 달성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 보험료율을 산정함은 물론, 보험료율 인상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협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기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급여비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청·장년층 가계 중 노동공급에 참여하는 가계는 임금소득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외의 가계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고정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며, 그 재원은 소비세,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로 충당한다.

모형 경제가 현실 경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수의 값을 적절히 선택하는 과정을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이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 경제가 2015년 한국 경제 현실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교한 캘리브레이션을 완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모형경제를 활용하여 보장률 인상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사회후생적 파장을 분석하였다. 모형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65%에서 80%로 인상할 경우 총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23.1% 증가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6.5%에서 8.4%로 인상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소득세의 인상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장률 인상 정책

은 가계의 노동 공급 유인을 감소시키며, 이는 경제 내 총노동량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보장률을 65%에서 80%로 인상할 경우 총노동량은 0.7% 감소하고, 고용률은 64%에서 63.3%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률 인상은 의료비 지출 충격으로 인한 가계 가처분소득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가계의 저축 유인을 하락시키는데, 정부가 보장률을 65%에서 80%로 인상할 경우 총자본량은 1.4%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률 인상으로 경제 내 총노동량과 총자본량은 감소한 결과, 국내총생산은 1.0% 하락한다.

결론 이처럼 정부의 보장률 인상 정책은 가계의 저축 및 노동공급 유인을 왜곡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하락시키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회후생(social welfare)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형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65%에서 80%로 인상할 경우, 사회후생은 오히려 0.2%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의국민투표 결과 전체 가계의 79.7%가 보장률을 80%로 인상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정원석(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마지혜(인턴연구원) | 보고서

46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빈곤층일 정도로 심각한 노인 빈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약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약 20여 년 후인 2040년이 되면 100조 원에 이르러 미래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기에 은퇴 이후를 위한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그리고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는 3층에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입 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 소득대체율은 40%안팎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3층의 개인연금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는 개인연금의 특성상 연금가입자들은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납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해외

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뛰어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연금 납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례를 살펴보고 보조금 지급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내용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2001년 단행된 공적연금 보장률 축소로 인한 부족분을 수익비가 1인 사적연금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따라서 제도는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거나 가입자격은 공적연금 임의가입자를 포함한 공적연금 가입자로 한정된다. 리스터연금의 보조금 지급액은 가족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지급된다. 성인 1인당 154유로를 지급하며, 자녀 1인당 185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금액은 총 소득의 4%로 하여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가입금액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리스터연금 도입 이전 5% 미만이던 독일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09년 25%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사적연금에 대한 또 다른 보조금 지급 사례로는 뉴질랜드의 키위플랜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1989년 이후 경제주체는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

현재의 연금저축 가입유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의 세제혜택 방식은 사적연금 축적이 절실히 필요한 연세점 이하자에게는 아무런 사적연금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적연금 납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보조금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빈곤을 완화효과와 재정부담 수준을 추산하였다.

분한다는 가정 아래 금융교육은 강화하고 연금 및 장기저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 정책 실시 이후 뉴질랜드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기금형으로 운용되는 뉴질랜드 연금자산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뉴질랜드는 2007년 정부가 연금납입액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키위플랜을 도입하였다. 뉴질랜드의 키위플랜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18세 이상 65세 이하 직장인은 취업과 동시에 키위플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정부와 고용주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는 퇴직연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허용되며 이 경우 고용주 보조금은 수령할 수 없으나, 국가의 보조금은 수령이 가능하다. 키위플랜이 도입 이전 15% 수준이던 뉴질랜드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는 6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 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0%이나 평균 근로기간을 고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은 약 25% 수준이다. 따라서, 15%에 해당하는 차이를 보조금을 지급한 사적연금(공사연계연금) 가입 유도를 통해 충족시킬 경우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 할 경우 공사연금을 도입하여 40년간 가입 시 현재 49.6%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7%까지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부재정은 연간 10.4조원이 필요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중 절반이 빈곤층이며, 이러한 노인인구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적절한 소득원의 확보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현재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이의 2~3배에 달하는 노후 자금을 추가로 적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미래 재정적 안정과 우리와 자녀들의 미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연금자산 형성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 종신소득보장 기능을 중심으로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보고서

48

연구배경 생명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수요 확대 대응, 수익성 및 성장성 확보, 유사 연금상품과의 경쟁 측면에서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종신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 수요는 공적연금의 기능 약화,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상품을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자 및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외에도 펀드, 예금, 부동산 임대 등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유사 연금상품과의 경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점증하는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산업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 연금상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비적격 일반연금, 변액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 6월 상품공시 기준 총 157개의 연금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생명보험회사가 평균적으로 6.5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시이

율형 상품의 수는 113개로 변액연금 44개보다 2배 이상 많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연금상품은 지급기에 있어 종신연금 옵션을 통해 종신소득 보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종신연금 옵션의 형태는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액연금의 경우 지급기에는 대부분 공시이율형 연금상품의 지급옵션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기에 변액연금만의 특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연금상품에서 제공하는 종신소득보장 기능은 전통적인 종신연금에 한정되어 있으며, 종신연금 형태에 변화를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상품이 제공하는 종신소득보장 기능은 저금리와 기대여명 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은퇴자의 추가적인 니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종신소득보장 외에 추가적인 니즈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금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생활수준 유지, 유동성 확보, 수익성 추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활수준 유지, 유동성 확보, 수익성 추구 등의 니즈를 고려한 은퇴자의 노후생활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종신연금 옵션은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상당히 다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의 중요한 특징은 종신소득보장이 가능한 종신연금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 옵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종신소득보장과 함께 연금상품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을 제시한다.

른 연금시장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상품 다양화 노력에 있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필요 노후생활비 패턴을 고려한 연금상품과 연금상품의 유동성 제약 문제 극복을 위한 유연화 연금상품, 수익성 추구를 위한 고연령거치 연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전통적인 종신연금 옵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이다. 미국과 영국은 각 시장 환경에 적합한 대표적인 연금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표준하체연금, 미국의 경우 GLWB 옵션을 제공하는 변액연금 등이 그것이다.

은퇴자들의 니즈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생활수준보장 연금, 인플레이션 연금, 유연화 연금, 고연령거치 연금의 도입과 GLWB 옵션 활성화 등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을 제안한다. 생활수준 유지 니즈와 관련하여 생활수준보장 연금 또는 인플레이션 연금 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유동성 확보 니즈와 관련하여 일부 인출이나 연금급여의 일시적인 증액이 가능한 유연화 연금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추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GLWB 옵션 제공 확대, 고연령거치 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

생활수준보장 연금은 은퇴자의 다양한 필요 노후생활비 패턴을 반영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연금은 은퇴자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으며, 유연화 연금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GLWB 옵션은 이미 몇몇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종신연금 옵션의 대안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고연령거치연금 또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은퇴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기대효과 분석결과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들은 종신소득보장 니즈와 함께 생활수준 유지, 유동성 확보, 수익성 추구 등의 니즈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연금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생활수준보장 연금 및 인플레이션 연금, 유연화 연금, GLWB 제공 변액연금, 고연령거치 연금 등을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연금상품의 다양화와 함께 연금상품 판매 시 연금상품의 특성과 다양한 선택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금상품의 유용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는 공·사 협력을 통한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 문제 해결이라는 대의에도 부합하며,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일부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Chapter

4

보험시장 변화 대응

-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보험산업 미래
- 온라인 채널 활성화 방안
-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방안
-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제도 개선 방안
- 보험사기 규모 추정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조재린(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이경아(연구위원) | 보고서

52

연구배경 2021년 시행 예정인 보험부채 관련 재무회계 기준인 IFRS 4 Phase II는 현재와 같은 보험부채 원가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래이익을 부채로 표시한 후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천천히 인식하도록 하고, 이차역마진 등 장래 예상되는 결손은 즉시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IFRS 4 Phase II 도입 시 상당한 규모의 자본 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만약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 제도와 같이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II에서 산출한 자본에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면 국내 보험회사의 RBC 비율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IFRS 4 Phase II, EU Solvency II, 캐나다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에서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는 보험감독기관이 ‘예상치 못한 손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반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를 통해 기업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회계이다. 따라서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감독회계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회계는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EU의 경우 지급여력평가제도(Solvency II)와 재무회계 작성기준(IFRS4 Phase I)이 서로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도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감독회계 작성기준(SAP)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회계 작성기준(GAAP)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는 지급여력평가 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여력평가가 재무회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월에 시행한 EU Solvency II의 경우에는 보유계약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래이익을 가용자본 중에서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미납입보험료의 장래이익(EPIFP)에 대해서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MCCSR 또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의 준비금과 해지환급금 부족액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한도를 적용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EU나 캐나다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캐나다 MCCR 방식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EU Solvency II 방식이 제도의 연착륙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들을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적용한 결과 IFRS 4 Phase II에서 산출한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경우 RBC 비율 150% 미만은 13개 회사, 100% 미만 이 9개 회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 Solvency II와 같은 방법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RBC 비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캐나다 MCCR과 같이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무회계상 자본을 일부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계산하는 경우 RBC 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EU Solvency II 또는 캐나다 MCCR과 같은 방법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오히려 RBC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EU Solvency II, 캐나다 MCCR은 장래 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식한다. 이는 지급여력 평가의 목적이 예상 외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EU나 캐나다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캐나다 MCCR 방식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EU Solvency II 방식이 제도의 연착륙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EU Solvency II 방식을 적용한다면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을 정성 평가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감독당국은 EU, 캐나다와 같이 이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와 영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시가기준 지급여력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장래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IFRS 4 Phase II는 감독자 관점의 회계가 아닌 투자자 관점의 회계라는 점에서 감독목적의 지급여력평가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여러 국가에서 지급여력평가제도로써 벤치마킹

보험산업 미래

김석영(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이선주(연구원) | 보고서

54

연구배경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산업도 이러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보험산업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여러 변화들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예정으로 보험산업은 과거 어느 때에도 겪어 보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본 보고서는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향후에 보험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며 보험산업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그려보려고 한다.

주요내용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는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경제 변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보험제도 변화, 그리고 무인차, BIO 기술, 헬스케어 서비스, IOT, 인공지능 등이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 발달 등이 있다. 이 변화들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업무위탁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등장하여 판매채널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

다. 기존의 설계사채널은 축소되고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주요한 판매채널이 될 것이다. 상품전략도 사망보험은 축소되고 건강보험은 헬스케어 연계상품이 소개될 것이다. IOT 기술로 인하여 일반손해보험의 서비스 형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보험 가입자는 Hands Free 상태가 되어서 보험회사가 사고를 먼저 인식하고 고객에게 연락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사이버리스크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등장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전문화과정을 거치면서 자산운용전문회사,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 등으로 전환할 것이다. 보험의 기능을 위탁받는 전문보험회사들이 출현하여 보험회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개별상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며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 그리고 일상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주로 상품 3가지만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감독자는 보험회사 중심의 업무기능단위 규제에서 업무기능별 회사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산업을 구성하던 세 개의 축, 즉 공급자, 소비자, 감독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다수의 축으로 변경될 것이며 이에 맞추어 재무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행위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경제 변화, 보험제도 변화, 그리고 신기술 변화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업무위탁이 활성화되어 전문보험회사들이 출현할 것이고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주요 판매채널로 등장할 것이다. 헬스케어 연계상품이 주요 상품이 되고 IOT 기술로 보험회사가 사고를 먼저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체계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보험회사가 변화를 대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이 무엇이고 보험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보험회사로 탈바꿈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특화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채널 활성화 방안

박선영(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보고서

56

연구배경 저금리, 저성장 환경이 계속되면서 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와 수익성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사회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소비자 니즈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모델 및 판매채널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과거 판매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동적으로 보험 가입에 나섰던 보험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아나서고,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을 검색하는 적극적인 보험 소비자층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온라인 채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플랫폼 구축사업에 나서는 등 핀테크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2015년 11월 출범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같이 보험산업 발달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 온라인 채널의 도입이 보험 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는데 연구 의의와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 유통산업 가운데 보험산업의 온라인 채널 도입은 다소 늦은 편이다. 이미 다양한 소매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 채널의 도입이 기존 오프라인 채널과 시장구조 및 소비자 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도로 연구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할 경우, 오프라인만 존재할 경우의 시장 균형점과는 달리 가격, 시장 점유율, 수익성, 그리고 회사의 유형 측면에서 다각적인 변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온라인 채널이 도입되면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의 상품구입도 용이해지면서 소비자의 탐색 비용(search costs)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의 가격 및 특성 비교가 용이해지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

그러나 온라인 채널이 급성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거래의 특성인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거래는 실물 거래와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하는 만큼 다른 유통업보다도 더욱 소비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가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공간상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부재하면 미리 프로그래밍된 정보만을 전달받기 때문에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보험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의 상용화가 기대보다 미흡한 배경에는 온라인 시장의 성숙도가 낮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은데 기인한 바가 크다. 이같은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등급제, 정보 공개 등 온라인 채널 서비스업자의 신뢰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채널이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터넷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 아울러 공급자 측면에서는 온라인 채널 도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자본력이나 브랜드 경쟁력에서 기존의 전통채널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층의 세분화가 더욱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채널 스위처(Channel Switchers)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충성도가 높은 디지털 수요자(Loyal Customers)의 비중이 높을수록 온라인 시장의 성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널 스위처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글로벌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의 성숙도는 진입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의 성숙도에 따른 단계별 채널 전략이 필요하다.

각국별 설문조사 결과 보험소비자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회사와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X세대와 Y세대 등 20~30대 젊은 소비자층들은 회사 웹사이트

에서 보험상품을 검색하는 등 온라인채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입하기 이전에 대면으로 자문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하는 채널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경험과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웹사이트 및 옴니채널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면서 기술적인 장애에 부딪히게 되면 이를 상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가 보완될 경우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의 통합적인 고객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온라인 서비스 상용화의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판매자의 등급제, 정보 공개 등 온라인 채널 서비스업자의 신뢰도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고객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온라인 시장의 성숙도에 따른 채널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회 부여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채널이 채널환경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터넷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보고서

58

연구배경

최근 들어 외제차 등 고가차가 증가하고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리비 등으로 인한 보험금 증가로 과실비율의 금전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과실비율의 금전적 가치 상승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사고비용 부담 금액이 증가하고 보험료 할인할증 때문에 과실비율에 사고 당사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한다. 과실비율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과실비율 분쟁 증가로 이어지는데,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 그리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제기된 분쟁 건수가 증가하였다.

과실비율의 금전적 가치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불만은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의 금전적 부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제고, 그리고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 발표된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과실상계제도가 사고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2년 개인용 차량 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이던 과실비율 분쟁은 2014년 1.12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3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퍼센트 증가하였다.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액 배분과 관련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현황과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형손해보험회사의 2015년 4월과 9월의 자동차보험 보상자료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손해보험협회 분심위에 접수된 대형손해보험회사의 자료를 분쟁이 발생한 사고와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견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은 과실상계제도의 미흡한 공신력과 결합하여 사고 운전자들의 주장에 근거한 과실비율 결정을 초래한다. 또한 운전자들의 주장 반복은 과실비율 결정에 적용되는 수정요소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동일한 사고에서 상이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과실비율의 변동성을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 및 운전자 확인 의무화, 과실비율의 객관화, 수정요소 적용 개수 제한,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확대시킨다. 과실비율의 변동성 확대는 과실비율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일관성 훼손은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에 초래되는 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과실비율의 일관성 훼손은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과실비율분쟁 증가로 인한 조정비용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발생 단계에서는 사고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는 운전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운전자의 주장 번복에서 발생하는 과실비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과실상계 단계에서는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과실비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과 사고 운전자의 확인 의무화, 둘째, 수정요소 적용의 공신력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요소 적용의 법원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과실상계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법원의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 편람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결론 과실비율 결정에 필요한 교통사고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 및 운전자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정요소 적용의 단순화, 객관화, 재평가를 포괄하는 수정요소 적용의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제정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이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을 위해 학계, 업계, 검찰, 경찰,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약 7년의 시간을 투자하였다. 제도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 시야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보고서

60

연구배경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역사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군사용에 이어 자동차와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핸들이나 가감속 제어를 통해 운행하는 형태(driver controlled driving)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vehicle or driverless vehicle, autonomous vehicle, 이하 ‘AV’)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AV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제조업자가 상용화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험운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제조업자들이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AV의 정의와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신설하여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AV의 시험운행에 이어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AV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상 책임부담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와 병행하여 보험약관 및 요율 적용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는 2030년 전후로 AV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V가 상용화되는 경우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및 국내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가 AV에 부합되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운전자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자동차보험시장과 관련된 운전자보험 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사고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자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제조물책임리스크와 사이버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V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은 완전한 AV와 개입하는 부분 AV에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 AV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지배를 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현행 자배법 제3조를 적용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하면 사고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완전 AV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을 수정, 적용하거나 노폴트보험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AV는 2030년 이후 상용화될 전망이다. AV 사고는 운전자 요인이 제거된 것이므로 현재의 운전자기준의 책임부담법제와 보험제도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V 사고책임부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법리에 맞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AV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한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배법 적용방안은 책임부담자로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 등 오류에 의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고, 운전자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폴트보험제도 운영 방안은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제도이다. 미국, 일본, EU 등에서 동방안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국내의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거칠 필요가 있다.

향후 AV의 보험상품도 자율운전에 대한 인공지능의 진화정도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부분 AV의 경우 현재의 책임보험상품과 임의보험상품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에는 텔레매틱스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V는 인공지능시스템과 GPS 등 통신기능을 결합하고 있어 차량에 장착된 텔레매틱스 기능을 통해 마일리지보험제도(pay as you drive)와 운전습관연계보험제도(pay how you drive)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한 교통정보나 보험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 AV의 보험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AV의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AV 상용화 초기에는 자차손해를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상품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상기상조건 운전 부담보 특약, 사이버리스크 부담보 특약 등 자율주행 리스크에 부합한 상품운영이 필요하다.

보험요율 또한 현행 운전자중심요율제도(driver based rating)에서 운전자요인이 제거된 차량중심요율제도(e-driver based rating)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 가입경력과 범규위반 경력에 따른 가입자특성요율과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등과 같은 운전자요인을 반영하는 요소는 불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량할인할증률의 적용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V의 안전성 요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차량중심요율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AV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으며, 사고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AV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검토과제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가 향후 AV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방안

최창희(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이규성(인턴연구위원)·한성원(인턴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뉴노멀 시대의 도래로 국내 손해 보험업계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절감, 해외투자 확대, 해외진출, 비활성화 시장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현안 과제 중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해외사업에서 가시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충분한 역량을 성장시키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와 국내에서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보험종목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손해보험업계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분석해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역량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보험 종목을 발굴하며 손해보험업을 질적·양적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문제는 기업성 보험 시장과 가계성 소액보험 시장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성 보험에서의 역량 문제는 보험회사

의 장기보험에 대한 역량 집중,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에서의 높은 손해율, 자본투자 부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과 감독자의 요율규제로 기업성 손해보험과 장기보험에서 손해를 만회할 수밖에 없었던 보험회사들은 기업성 보험에서의 경쟁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단기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기업성 일반 손해보험은 타 종목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성 보험에서 높은 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강한 요율규제와 자본금 투자 부담으로 인해 높은 재보험 출재와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의존해 요율산출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장기보험 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온 손해보험회사들이 소액보험 시장 확대가 장기보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성장이 억제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이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소액보험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오지 못한 한국 손해보험 시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배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감독자가 조성한 환경하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중장기적 전략 없이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며 운영되

국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치열한 시장경쟁과 강한 요율규제 하에서 중장기적 전략 없이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며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의 자율 경쟁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중심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들은 단기 실적평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자와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손해보험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배상책임보험·소액보험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성보험(지진보험, 전통시장 화재보험) 등을 활성화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국내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 경쟁을 제고하는 환경 조성 중심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 단기 실적평가 중심의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배상책임보험, 소액보험, 정책성보험 등의 활성화를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의 양적·질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제도 개선 방안

이승준(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64

연구배경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은 “금융회사가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고용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금융업은 진입 시 인·허가가 필요하고 진입 이후에도 감독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금융당국의 포괄적인 규제 및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회사의 업무위탁도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서 행해진다.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은 포괄주의(negative) 규제방식을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인·허가 대상인 본질적인 금융업무의 제3자 위탁은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본질적 요소의 위탁을 일부 허용하여 업무위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의 위탁 관련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같은 단순 반복적 업무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본고는 국내외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은 모집, 보험계리, 손해사정 등의 업무가 보험업법 상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이외 보험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적 업무위탁 규제인 「금융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 규정’)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업법 중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가지며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상충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는 업무위탁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업무위탁 규정은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하 ‘인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업무 제3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업무위탁 규정은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지만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에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 등의 위탁은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 업무위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관련 제도의 개혁을 통해 보험회사 업무위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만나게 되면, 보험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수탁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 업무위탁 활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업무위탁(outsourcing)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업무수탁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업무위탁 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감독, 검사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위탁 책임의 경영진 부담, 서비스 제공자 선정 절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시감시 절차,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 유출주의 등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정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제도 개선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라 불리는 핵심업무 범위를 반드시 보험회사가 영위해야 하는 업무로 축소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폭넓게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본질적 업무 범위에 속한 업무 중 단순하고 반복적 업무로 업무위탁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무 위탁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핵심업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업무위탁이 가능해야 한다. 우선 해외의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외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 학습효과를 통한 국내 보험회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국내업무라도 소비자 편의 향상이 크고 보험회

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간이지급심사 등의 허용도 제안하였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위탁 및 수탁과 관련된 내용과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하위 법령에 보다 구체적인 위탁 및 수탁 관련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업무위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운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위탁 활성화로 늘어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보험회사의 수탁회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명시, 업무위탁에 따른 보험회사 운영리스크 관리와 감독당국의 사후적 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보험회사 업무위탁 활성화는 보험회사 업무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핵심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는 보험료 하락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임 준(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이성은(연구위원) | 보고서

66

연구배경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와 보험 연구원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 전체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3조 4천억 원 정도 되었다. 보험사기 적발통계의 경우에는 매년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되는 반면, 보험사기 규모 추정은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4년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였다.

주요내용

보험사기의 정의에는 보험금 사기에 국한된 협의의 정의와 보험금 사기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사기까지 포함한 광의의 정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에 있어서는 보험금 사기규모 추정과 보험료 사기규모 추정 시에 차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보험금 사기규모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방법과 보험사기 적발정보 포함 지급청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최종적인 추정치로는 두 방법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보험회사 관련 담당자의 주관적인 보험사기 추정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고, 보험사기 적발정보 포함 지급청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청구 건수를 토대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청구 건수까지 포함된 전체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Caron and Dionne(1996)의 연구방법을 참조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다는 점을, 그리고 보험사기 적발정보 포함 지급청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적발노력 등에 의해 추정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보험료 사기규모 추정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방법만을 사용하였다. 즉, 보험회사 관련 담당자의 주관적인 보험사기 추정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추정하였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보험종목별로 보험사기 적발정보가 포함된 지급청구 데이터를 보험회사 몇 곳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총건수가 934,763건이었고,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총 2,236,174건이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총 1,840,691건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건에는 비수사건과 수사건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수사건의 보험사기 적발 기준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송치단계 이후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약 4조 5,455억 원이고, 이를 가구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만 원 정도된다.

한편, 보험사기 전체 규모 추정의 범위에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유사보험도 포함시켰는데, 유사보험에는 우체국과 수협을 포함시켰다. 추정 범위는 서울대·보험연구원(2011)의 추정 규모와의 비교를 위해 일치시켰으며, 단 한 가지 차이는 농협이 이전 연구에서는 유사보험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민영보험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결론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기 추정 규모는 약 4조 5,455억 원이고, 이를 가구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만 원 정도된다.

Chapter 5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 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장기 가입 인센티브 도입 방안 및 재정 설계
- 우체국보험 고객복리 증진 방안 연구
- 보험상품 표준약관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 중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 방안 : 판매단계 의무 및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박선영(연구위원)·김경환(수석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하였다. 최근 미국, 영국 등 보험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주도했던 전속채널 위주의 판매채널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비전속채널이 점차 확대되고 제판(製販)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상품 제조회사에 종속된 판매행위가 아닌 판매행위만을 전담하는 판매 중심의 유통채널이 점차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비전속채널이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관계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형 판매채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시장의 양적 성장과 판매채널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보험설계사 정착률과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고 보험소비자로부터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속채널에서 비전속채널 중심의 채널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대형 독립 판매채널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한 새로운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 비전속 판매채널에 금융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과거 전속채널 중심의 채널환경이 최근 들어 다변화하면서 점차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비전속채널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환경의 틀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선진화된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자 책임 강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대형화된 판매채널의 인프라 개선 방안은 크게 판매단계의 개선 방안과 판매 후 단계에서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판매단계에서 판매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과실분담 및 손해배상의 원칙과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속과 달리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독립대리점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대형 독립대리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상품판매업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가. 판매단계의 의무 및 독립성 강화

최근 정부는 시행령 등 개정 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소속채널 고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비교·설명 의무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단계의 개선 방안과 판매 후 단계에서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판매단계에서는 판매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과실분담 및 손해배상의 원칙과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속과 달리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사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를 강화했지만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비전속 채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판매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비전속대리점의 독립성 유지 장치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다차원적인 독립성 요건을 모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따르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비전속대리점을 독립대리점으로 통칭한다. 독립대리점의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1)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비교판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객의향파악 의무 부과, 2) 3개 이상 보험회사와의 거래관계 유지 의무 부과, 3) 독립성 보장 관련 보험중개사의 영업행위규제를 준용하고 3개 이상의 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서 징구 의무를 제안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향과 계약내용 합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서면화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비교추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향 파악 및 합치여부 서면화는 향후 고객과의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근거를 남겨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시비를 가리는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독립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

독립보험대리점에게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사용자책

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독립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규정화할 수 있다. 현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험대리점에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법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계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립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1안]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실 전체에 대해 판매자 책임 부과

[제2안] 보험업법상 모집규제의 수범주체가 판매조직에게만 있는 규정(법 제97조)의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만 판매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제3안] 독일과 같이 독립보험대리점에 상담 의무(의향파악 의무)와 서면화 의무를 부과하고 동 의무 위반에 대해서 독립보험대리점에게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 부과

[제4안]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배상책임주체에 독립보험대리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독립보험대리점의 병존적 책임을 명문화

다. 보험상품판매업제도 도입 검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 독립적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진 판매회사(보험상품판매업)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를 그 법적 지위(대리 및 중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상품판매회사 또는 보험계약중개회사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판매회사로의 허가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형화에 따른 책임성을 부과한다. 판매회사의 진입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요건인 임원의 자격요건과 대주주 요건은 보험회사의 수준으로 맞추고(보험회사 규정 준용),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책임성 담보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한다.

판매회사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양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결론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판매단계에서 판매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과실분담 및 손해배상의 원칙과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속과 달리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독립대리점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형 독립대리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상품판매업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우체국보험 고객복리 증진 방안 연구 : 시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조영현(연구위원)·정봉은(연구위원)·김진역(수석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우체국보험은 한미 FTA에 따른 신상품 개발 규제 등으로 최근 신계약 성장률이 민영 생보사에 비해 악화되었다. 생명보험산업의 신계약건수 성장률은 2014, 2015년 각각 -15.5%, -3.2%였는데 비해, 우체국보험은 동 년도에 각각 -25.7%, -10.2%에 그쳤다. 이에 우체국보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복리 증진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보험상품 이외의 서비스 제고를 통한 우체국보험 고객복리 증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이외에도 우대서비스, 복지시설 등 비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수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고객이용 시 할인 혹은 배타적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수도 있다. 우체국보험은 사업비 제약과 고객의 대다수가 서민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복지시설을 이용한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은 민영보험회사와는 다르게 법적(우체국예금보험법 제47조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으로 보험적립금을 고객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이용할 수 있어 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저금리 환경으로 공공성 높은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부담(기회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점도 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은 사업의 비영리성 및 공익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제공 명분도 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체국보험 고객의 만족 제고를 위해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내용 우체국보험이 설립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종류는 휴양시설, 의료시설, 요양시설, 후생시설 등이다. 이 중 법적인 것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다수 고객이 이용가능하고 지역사회 및 이익단체와의 마찰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휴양시설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을 시장환경, 수익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업 우선순위 및 로드맵을 제시한다.

휴양시설의 사업환경, 규제환경, 휴양성, 대중성, 트렌드, 투자비, 수익성, 처분용이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정 휴양시설 모델은 다음과 같다.

- 1) 객실료(ADR)는 8~12만 원 수준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저가 호텔
- 2) 부지 1,000~1,500m², 지하 3층 지상 20층 내의, 연면적 13,000~20,000m², 건축비 300~400억 원
- 3) 부족한 휴양성에 대한 보완으로 주변 휴양, 관광, 문화시설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제공

다양한 복지시설 중 중저가 호텔이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시설로 판단되며 긍정적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투자 실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객실이용률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나,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4) 객실이용률 제고를 위해 글로벌 프랜차이즈와 제휴
- 5) 60% 정도의 객실 이용은 일반 고객으로 유치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
- 6) 1차적으로 서울, 부산에 설립하되 장기적으로 제주에 설립도 고려

이러한 휴양시설을 서울과 부산에 각 1개씩 설치하여 2020년부터 운영할 경우, 몇 가지 가정하에 도출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되는 연매출액은 188억 원이며, 자본환원율(cap rate)은 4.4%이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객실이용률을 평수기 20%, 비수기 30%로 가정하면 연간 이용 보험계약자는 52,920명(연 인원)으로 추정된다.

총자산대비 낮은 수준에서 제한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복지시설 중 제안한 유형의 중저가 호텔이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시설로 판단되며 긍정적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투자 실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객실이용률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나,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

우체국보험은 신상품 개발 규제로 인하여 비보험서비스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저렴하고 소액보험 중심인 우체국보험의 특성상 우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성 확보가 되지 않는 복지시설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복지시설 중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투자초기 3~4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지출만 있으며,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투자에 따른 부담이 크다. 또한 투자수익률이 낮고 수익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석영(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연구용역

76

연구배경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금감원이 직접규율하는 방식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문제, 약관규제법과의 이중규제 문제, 그리고 협회 표준약관 제정 및 운용문제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민간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법규정화를 통해 개별약관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법 규정을 통해 보험약관이 수록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뉴욕주 보험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약관상의 필수 기술 사항을 모아 놓음으로써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 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약관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 시에도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규범화 항목은 현행 표준약관(시행세칙)과 동일한 규제 수준인 시행세칙 내에서 규정하고 감독규정에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권의 표준약관제도는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

보험약관 관련 규제가 선진국과 같은 사법적 규제제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가 민간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약관 작성을 협회에서 맡게 될 경우 관 주도의 경우와는 달리 표준약관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보험 관련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 ‘보험상품위원회’를 구성한다. 표준약관의 제정을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가 담당할 경우 표준약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별약관의 원칙적 신고 조항은 의미를 상실한다. 감독당국은 보험협회가 만든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의 공정위 의견 반영 절차는 감독당국 신고와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공정위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약관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표 제시, 우수 사례 권고, 그리고 표준약관 이해도 평가 실시를 제안한다.

표준약관 제정주체가 금융감독원장에서 보험협회로 변경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통보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제정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관조항은 규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협회가 만든 표준약관이 약관작성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표준약관은 공정위 통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에 대한 사전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간 등에 대한 사전적인 협정이 요구된다.

결론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상황에서 약관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약관이 요구되나 표준약관은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회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2015년 10월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표준약관의 제정주체가 변경되어 보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새로운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새로운 표준약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험회사, 감독당국,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 중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임준환(선임연구위원)·황현아(연구위원)·기승도(수석연구위원)·김경환(수석연구위원)·장동식(수석연구위원)·김진익(수석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동차보험제도 과제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우리원은 자동차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행행태별 요율 차등화제도’,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험제도 개선 방향’,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용역 수행결과는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주요내용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규모는 매년 GDP의 약 1.61%에 이른다. 자동차사고 발생률을 줄이거나, 자동차사고 발생 이후 치료 및 수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환경오염 등 부수적 사회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용역에서 제안하고 있는 운행행태별 요율 차등화는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제도이며, 대체부품 활성화는 사고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는 사고 발생률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제도 등에 대한 선제적 개선 방향의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용역에서 제안한 연구 주제 중에서 우선 ‘운행행태별 요율 차등화제’를 보면, 동 방안은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제도에 운행행태별 요율 차등화요소가 포함되도록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운행행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치 비용, 2) 정보를 송신하는데 드는 송신 비용, 3) 보험요율을 만들기 위한 통계자료 공유 등이 운행행태별 요율 차등화제도가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치 비용의 국가보조, 무료 와이파이 등을 활용한 통신비 절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하여 동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험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에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 간 민사적 측면에서 사고책임배분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공유되는 사고책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사고책임을 배분하는 방법은 1) 제작사가 완전히 책임을 지는 방법, 2) 보유자가 완전히 책임을 지는 방법, 3) 제작사와 보유자가 책임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정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GDP의 1.61%에 이르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발생률 및 사고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관련 당사자들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 수립 시에 ‘운행행태별 요율 차등화제도 활성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사고책임 배분방법’, ‘대체부품 활성화’ 등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체부품 활성화 방법은 공급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었던 것에 주목하고, 수요측면에서의 대체부품 활성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자동차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능고장으로 인한 수리와 사고로 인한 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수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연간 약 5조 원 수준에 달한다. 사고수리는 주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 자동차보험제도는 사고수리 시 신부품으로 수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사고수리 시 신부품을 허용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원리 중 하나인 피보험이익의 원리를 벗어난 관행으로 피해자 또는 보험수리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사고 보상원리에 부합하게 사고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지 않은 대신에 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동 방안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대체부품의 수요 확대 효과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고수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본 용역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이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체계적으로 실시된다면 매년 GDP의 1.61% 수준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전용식(연구위원)·임태준(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연구용역

80

연구배경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거시경제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중국 증시 폭락 및 그리스 파산 위기, 국제 유가 급락 등 세계경제의 위기요인 및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과 신흥국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정치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시경제 변수 변화가 보험수요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모형 개발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 개정으로 금리 변동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화의 영향 분석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소비자들의 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초회보험료와 해지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보험산업 블록을 포괄하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보험소비자의 초회보험료와 해지 등 보험계약 체결과 계약 유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수입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환경 변화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소비자의 행태 변화와 이로 인한 보험수요 및 보험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여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거시경제 환경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실험을 통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기존의 보험산업 전망모형을 보험계약의 해약률 및 보험회사 수익성을 예측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산업의 신계약(초회보험료), 그리고 해약률을 통한 계속보험료 규모 변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약률에 대해 GDP 성장률, 지난 1년간 GDP 평균, 콜금리 변화율, 지난 1년간 콜금리 평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방정식을 수립한다. 상품별로 추정된 해약률과 초회보험료를 이용하여 계속보험료 추정방정식을 수립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변화하는 거시경제 환경이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신계약(초회보험료)과 해약률의 변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므로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거시경제 변수 변화가 보험수요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모형 개발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산업 블록을 포괄하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로, 해약률 추정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높은 설명력이 요구되어진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해약률과 계속보험료 추정방정식이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상품별 계속보험료 추정방정식의 적합도는 해약률 방정식과 초회보험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계속보험료 추정치와 실제치와의 오차, 즉 평균자승근(rMSE: Root-Mean Squared Error) 오차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상품의 rMSE는 1% 미만으로 해약률을 활용한 계속보험료 추정방정식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모형은 크게 일반거시 부문과 보험산업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거시 부문의 주요 변수들의 값이 결정되고 난 후 이들 변수가 다시 보험산업 부문에 영향을 주는 형태이므로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한다. 1단계에서 일반거시 부문과 보험 상품별 초회보험료 및 해약률을 동시에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추정된 해약률과 이전의 계속보험료 추정방정식을 이용하여 보험상품별 계속보험료를 추정한다. 그리고 분석 모형의 동태적 안정성 및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1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5년에 대하여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반거시 부문 주요변수들의 rMSE 오차는 대부분 5%보다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고, 보험산업 부문 주요변수들의 rMSE 오차도 대부분 10% 내외의 작은 값으로 추정되어 양 부문 주요변수들의 rMSE 오차는 안정적인 값을 갖는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1)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2) 해외금리 인상, 3) 국제 유가 하락세 지속 등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로 대변되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벤치마크 결과와 시나리오 결과를 비교하니 중국 GDP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해외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GDP와 소비자물가는 하락하고, 상품별 차이는 있으나 해약률은 상승하고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는 감소한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GDP와 소비자물가는 상승하고, 상품별 차이는 있으나 해약률은 감소하고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는 증가한다.

결론 본 연구로 국제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6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KIRI 리포트 포커스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 고령화리뷰 포커스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보험금융연구

인구 변화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요율 최적화

장봉규(포항공과대 교수)·최창희(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2호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수지상등 이하의 요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타 손해보험 종목의 경우 추세를 고려한 수지상등 요율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와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수지상등 이하의 요율이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연령별 손해율 변화 추세를 요율 산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인구 변화를 고려해 최적화된 연령대별 요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고는 인구 변화가 연령 구간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인구 변화를 고려해 자동차보험의 영업손해(이익)를 최소화(극대화)하는 연령대별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품 다각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남윤미(한국은행 부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2호

1970년대 이후 많은 연구들은 사업 다각화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사업 다각화가 범위의 경제, 위험감소효과, 차입능력 제고, 절세효과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다각화로 인한 조정 비용, 사업확장에 따른 운용 비용 증가 등을 통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사업 다각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기업 또는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증적인 질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FY2003부터 FY2012 사이 국내 생명보험회사 상품 다각화가 보험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보험회사 수익성을 두고, 상품 다각화 수준과 자산규모, 사업비,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 자산운용수익률, 비대면채널 판매비율 등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상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각 보험회사 상품 다각화 수준은 보장성, 저축성, 투자형 보험상품군 수입보험료 비중을 기초로 계산된 허쉬만-허핀달 지수와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보험회사 수익성은 총자산수익률(ROA)과 위험조정자산수익률(RAROA)로 평가하였다.

먼저, ROA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은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이용한 경우와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한 경우 모두에서 상품 다각화가 수익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 수익성을 수익의 변동성을 고려한 RAROA로 평가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상품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이 U자 형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보험회사나 모든 상품군을 고르게 판매한 보험회사가 변동성을 고려한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품 다각화 수준이 낮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품 다각화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상품 다각화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에는 추가적인 상품 다각화가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 상품 다각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 자산이나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수익성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국내 논문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 다각화와 수익성의 관계의 형태를 유연하게 설정하여 이들 간 비선형 관계를 추정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동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방법은 국내 타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형화된 사실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과 경영 성과

변희섭(한림대 조교수)·조영현(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장기 금융상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장기자금을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자산운용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미래 자금유출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는 금리, 환율 등의 변동과 같이 투자영업활동에 수반된 위험요인을 장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도 있으므로, 미래 위험요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어,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영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며,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실증분석 결과, 위험가중자산 대비 파생상품 거래액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효과는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활용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부실자산비

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어 파산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초자산, 거래기법에 따라 구분한 분석에서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신용 및 선물, 스왑의 활용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와 지속화되는 증시여건이 불안한 여건하에서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이 수행된다면 경영 성과 개선 및 건전성 제고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의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동 거래를 장려함으로써 글로벌화된 자본 시장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CEO Report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김석영(연구위원) | CEO Report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규제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상시화하기 위한 『금융규제운영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동규정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퇴색되고 그림자 규제 등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은 무효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집행 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사문화되었던 행정지도 운영규칙 등을 부활시키고 이의 엄격한 준수를 위한 장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에 대한 개입금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모호한 소비자보호 기준으로 가격, 배당 및 인사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자율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금융당국의 운영규정 취지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 CEO Report

2016년 국내경제는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내수 활력 저하와 장기간 수출부진에도 건설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수준인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브렉시트(Brexit)로 재발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문제 등 경기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하락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0.2%p 낮은 1.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국내 실물경기 둔화,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 완화정책 기조 유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 2.0%보다 하락한 연평균 1.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경제의 불안정성 확대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23원 높은 1,203원(2016년 연평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산업의 경우 2015년 10월 전망 당시보다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6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전망을 당초 전망치 7.8%에서 4.8%로 하향 조정하였다.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0% (보장성보험: 9.2%, 저축성보험: 2.6%, 단체보험: 14.5%)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가 5.4%(기존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목별로 보면, 우선 보장성보험이 다양한 형태의 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 6.1%를 상회한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저금리로 연금보험 판매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망(4.7%) 보다 하락한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체보험은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정책으로 12.8%(기존 31.6%) 증가가 예상된다.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성장으로 전년대비 4.8%(장기손해보험: 4.9%, 개인연금: -2.1%, 퇴직연금: -0.1%, 자동차보험: 10.7%, 일반손해보험: 1.8%)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3.8%(기존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에도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전년대비 3.3%(기존 5.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은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특종보험과 보증보험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2.4%(기존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은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로 1.0% 감소(기존 -0.2%)가 전망된다. 퇴직연금은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규모의 원수보험료 유입(기존 28.6%)이 전망된다.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CEO Report

향후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부채가치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로 RBC 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뿐만 아니라 경과조치도 필요한데, EU Solvency II가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EU는 부채시가평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체계인 Solvency II를 시행하였다. EU는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Solvency II)의 연착륙을 위해 수년간 여러 차례 계량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2011년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에서 실시한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에 따르면, Solvency II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EU는 2016년 1월 Solvency II 시행 이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하였다.

EU Solvency II의 주요 경과조치는 크게 가용자본, 요구자본, 자본요구조건,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용자본 측면에서

의 주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 가용자본의 분류 및 인정 범위 완화가 있다. 요구자본 측면에서의 경과조치는 주식 리스크, 집중 및 스프레드 리스크의 단계적 반영이 있다. 또한, Solvency II 도입 시점에서 구 제도(Solvency 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새 제도(Solvency II)의 자본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2년)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Solvency II 보고 및 공시에 필요한 자료(예,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등)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4년) 동안 보고 및 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다. 현재 유럽 상당수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점진적 반영 등 지급여력평가에 영향이 큰 경과조치를 각국 금융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상태이다.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국내 도입시 EU Solvency II에서 활용한 경과조치를 벤치마크하여 연착륙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용자본과 관련된 경과조치(책임준비금 금액, 무위험 이자율 등)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의 연착륙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선행적으로 충분히 수행하여 구체적인 경과조치 방식 및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이태열(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간 감사원 등이 비급여 관리 관련한 현행 제도(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제도, 진료비 실태 조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의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법제화하자는 김춘진 의원의 법안이 수용되어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이용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의료법 개정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비급여 정보 인프라는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진전된 수준에 따라서, 1) (정보 표준화)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단계, 2) (사용 의무화)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 시 사용 의무화 단계, 3) (DB 구축)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DB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는 a) (정보 공개·소비자 선택) 소비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

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유형, b) (진료비 심사) 전문심사기관이 의료이용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비급여 진료 정보를 표준화(1단계)하여, 이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2단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3단계)하여야, 의료이용건별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정보 인프라의 수준은 1단계인 “정보 표준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는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스스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수준(a단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공·사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지만,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차원에서 실손보험금의 청구 서식과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실손보험금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을 스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 청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비 공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소비자 역량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Ri 리포트 포커스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 점검과 대응 방안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68호

2016년 초부터 국내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고에서는 국내 경제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들과 각 요인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섰고 주가는 1,880선으로, 유가 급락은 저물가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은 원유가격 급락, 중국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국내 가계부채 및 기업 채산성 악화 등이다.

원유가격 하락은 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입 단가 조정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나 저유가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률 둔화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중국경제 둔화는 위안화 평가절하와 복합적으로 유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던 중동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폭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015년 8월 -5.5%를 기록하였는데, 중국의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5년 26%로 2000년

10.7%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졌고, 수입비중은 2000년 8%에서 2015년 20.7%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신흥국 경제 불안, 원화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중국경제 둔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심화시킬 수 있다. 2013년 6월 이후 신흥국 경제 불안의 정도는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원유가격 하락, 중국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가 국내 가계의 부채부담 가중, 기업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9월 약 170%이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한계 기업 비중은 2010년 12.9%에서 2014년 15.2%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장기 부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부문의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 변화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69호

92

정부는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제혜택 방식 전환은 연금저축에 대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또한, 세액공제 도입 시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세제혜택 방식 전환의 주요 근거였다.

2015년 발표된 국제통계연보를 토대로 세제혜택 변화가 연금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 방식 전환에 대한 반응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감소했음에도 연금저축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저축여력이 크지 않으면서 세제혜택이 줄어든 중·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과 납입금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세액공제 도입으로 중산층의 혜택은 줄어들었고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당초 세액공제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는 정부의 당초 예상과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이후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2015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이 15%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인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태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0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행태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 금융소비자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행태경제학은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실에서 사람들(Humans)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결정을 왜 못하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행태경제학은 소비자가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는 편향현상을 다루는데, 금융상품은 추상적이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편향현상이 특히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편향현상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당국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수단에 행태경제학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행태편향현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유형은 크게 정보 제공 개선, 선택환경 설계, 상품설계나 판매에 대한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보 개선을 통한 방법의 사례로는 통합형 소매투자상품 및 투자형 보험상품(PRIIPs)의 핵심정보자료(KID: Key Information Document)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들 수 있다. KID는 리스크 지표, 성과 시나리오, 비용, 정보 제시방법 등에 관한 2단계의 소비자실험 결과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구조, 내용, 표현과 관련하여 공통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동 자료를 가지고 상품들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선택환경 설계를 통해 소비자 편향 문제를 개선하는 개입수단의 사례로는 연금저축 자동가입 방식이나 연금저축비율 자동증가 방식 등이 있다. 선택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연금저축의 자동가입 방식은 넛지(쿡 찌르기, Nudge)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을 이용하여 은퇴저축 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근로자의 미래 급여 중 연금저축에 배분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미리 약속하는 SMarT프로그램 또한 선택설계를 통해 은퇴저축 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셋째, 상품판매 규제 사례로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주 상품에 추가되어 판매되는 손해보험상품(GIAO)에 대해 추가 구매를 기본옵션으로 하는 판매 방식을 금지한 조치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금융소비자정책 사례들이 국내 금융소비자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행태경제학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실험과 충분한 분석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수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행태 경제학적 특성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

김석영(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0호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보험요율을 통제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가격 및 형태를 규제하여 왔다. 이와 같은 보험상품 규제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각 회사만의 강점을 살린 전문 보험회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비슷한 사업모형을 가진 백화점식 보험회사로 성장해 왔다.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건강보험은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인상하지 못하여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손실보전을 위해 종신보험의 이익을 축소하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손실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공급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가격 자율화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상품들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온라인채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저해약환급금 적용, 최저해지환급금 폐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인상률은 시

장경쟁으로 인하여 회사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규제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인상하는 정상화 과정과 더불어 역으로 높게 유지되던 위험률을 낮게 조정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개혁조치로 보험상품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보장되지 못하던 위험들이 보장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금융개혁 초창기에 나타나는 보험료 변동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문화된 상품과 적정 가격을 통한 보험회사의 질적 경쟁은 양적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금융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규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고와도 같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금융개혁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MetLife 분사 계획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2호

MetLife 보험그룹은 지난 1월 12일 미국 내 변액연금 등 가계성 보험 사업부문을 그룹으로부터 분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SIFI 지정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SIFI로 지정되는 금융그룹은 미국 FRB의 감독대상이 되며 리스크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자본을 쌓아야 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FSOC에 부실화 시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로 지정하는 권한을 주었다. FSOC는 MetLife의 사업모형 중 주로 변액연금 등 비전통적 보험상품과 자본시장과 연계성을 높이는 비보험 금융상품이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여 SIFI로 지정하였다. 특히 변액보험 등 가계성 보험에 부가된 보증 옵션은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보험회사를 노출시키면서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금융그룹의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SIFI 지정에 대한 MetLife의 대응은 시스템 리스크가 큰 가계성 사업부문을 본체로부터 분리시켜 시스템 리스크를 낮춤으로써 SIFI 지정 및 이에 따른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MetLife의 그룹 구조는 가계성보험(Retail), 단체보험(GVWB: Group, Voluntary & Worksite Benefits), 퇴직연금을 포함한 기업성 금융상품

(Corporate Benefit Funding), 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EA)의 6개 주요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계성보험, 단체보험, 기업성 금융상품과 남미를 아울러 미주(Americas) 사업부문으로 통칭한다.

MetLife는 미국 내 가계성 사업부문 중 변액연금, 보증옵션을 포함한 변액보험 등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부를 분리시킨다는 계획이다.

분리 형태는 주식공개(IPO)를 통하여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분리공개(carve-out) 방식, 분리되는 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 넘기는 방식(spin-off), 그리고 분리되는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직접 매각(sell-off)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들 방안은 MetLife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사회 논의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감독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MetLife 사례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그룹감독을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시사점을 준다. 향후 SIFI 감독이 도입된다면 대형 보험회사는 지정 시 고려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모형상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 시 시스템 리스크가 높은 사업부문을 선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전 또는 분사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 인상 타당한가?

최장훈(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4호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요율 인상, 연금급여 조정, 보험료와 급여의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연금급여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및 언론에서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소득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거로 첫째는 소득계층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든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소득상한액을 두고 있는 것은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수급 시 연금급여의 격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함이다. 소득상한을 통해 연금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은 수지상등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연금급여 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연금급여 수준은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소득상한(421만 원)은 재정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득상한

수준을 더 올리게 되면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금을 받게 되어 그만큼 연금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상한을 올리게 되면 상위 14%에 속하는 고소득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되어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고소득자는 사적연금을 통해서도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소득상한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소득상한 인상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커지게 되어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강한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상한을 올리게 되면 기업(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채용 등 노동시장에서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소득상한 인상은 이로 인한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적용소득의 상한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해지 및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은 과도한가?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5호

연금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해지 및 일시금 수령 시 과세가 과하다는 주장의 핵심은 일시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이 납입 시 받는 혜택보다 크고 세금이 원금에도 부과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수령하는 연금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금납입 시 세제혜택은 과세시점을 수령 시로 이연시킨 것이므로, 중도해지로 축적된 자산을 수령할 경우 미루어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것 역시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있는 곳에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의 대명제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 세금부과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금융회사가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자산 축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이를 해지하거나 만기 시 적립금을 목돈으로 인출할 경우 징벌적 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책의 목적과 과세 논리를 세제혜택을 홍보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저금리환경하에서 신상품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조재린(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6호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 압력과 저성장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표준해약금 규제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해약행위를 토대로 한 신상품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보장성에 대한 표준해약금 규제 변화로 새로운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종신보험은 저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해약환급금형은 고객이 납입기간 중에 해약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고 해약환급금미보증 상품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없애는 대신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를 인한 한 상품이다.

이러한 새로운 종신보험들은 보험회사의 관점에서는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상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약환급금의 지급보다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해약 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새로운 보험상품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의 상승 압력은 경기불황과 맞물려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선, 예상보다 저금리 환경이 길게 지속되면서 예정이율 인하 압력이 커질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보험수요 축소로 신상품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저성장·저금리와 같은 위협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신상품 개발에 있어 신수요 출현과 감독규제 완화 등을 성장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결정을 자율화할 것을 밝힌 만큼, 앞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보험회사 기업대출 증가 원인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7호

98

최근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3%에서 2014년 16.2%, 손해보험의 경우 30.9%에서 47.5%를 기록한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5.5%, 2014년 7.8%에 불과하다.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확대는 가계대출 축소와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 감소, 그리고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수익률에 기인한다. 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감소한 원인은 2009년 예대출 규제 도입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등에 있다. 향후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비율 규제가 확대될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 이자율이 연 3.2%,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연 3.8% 수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1.8%의 두 배에 이른다.

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증가는 보험회사에게 양날의 칼(Double Edged Knife)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기업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는 보험업권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기업대출은 저금리 상황에서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

를 통한 금리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기업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확대는 보험회사의 신용 위험 평가 역량이 뒷받침될 때 효과적일 것이다. 유럽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는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되면서 증가한 것이며, 이에 반해 일본 보험회사들은 신용위험 평가 역량, 대출 회수 가능성과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해서 기업대출을 축소시켰다.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8호

최근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는 근로기 연령대보다 고령층에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기대여명 격차는 연금소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득과 사망력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장기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은 1920년생과 1940년생의 기대여명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였는데, 20년 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

로 4.8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로는 최하위 10%의 경우 기대여명 증가가 1.7세(1920년생 24.3세, 1940년생 26.0세)인 반면, 최상위 10%는 8.7세(1920년생 29.3세, 1940년생 38.0세)나 증가하였다. 이는 사망률 개선이 주로 상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금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기대여명의 차이로 저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이 고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보다 짧아지게 되어 생애연금소득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 둘째, 국민연금의 수급 부담구조에 영향을 준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수익비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기대여명의 격차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수익비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게 되면 모든 소득계층이 동일한 기간만큼 연금수급기간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기대여명이 더 짧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생애연금소득의 감소가 더 커서 생애연금소득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 기대여명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노후 소득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률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생존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히고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노후 소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연과 같은 정책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대여명 격차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보험 가입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생명보험 가입률(87.3%)이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주로 질병보험(83.7%), 사망보험(28.6%), 연금·저축성보험(25.3%)에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26.9%가 생명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대비를 위해 공·사연금의 가입이 가장 적합한(68%)것으로 응답한 반면, 자녀의 지원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0.8%)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응답자 본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비 월 평균 저축액은 32.1만 원으로 다른 세대의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노후 비용의 45.2%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공·사연금 가입률은 90.2%, 공·사연금 납입보험료 수준은 월 평균 27.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결과 우려되는 것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61~63세)까지 국민연금 미수급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퇴교육 확대를 통한 은퇴 준비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보험 가입이 대부분 보장자산에 집중하고 있어 은퇴자산으로 분산하여 장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식 전환과 함께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제적격 납입기간(10년)의 탄력적 조정 및 세제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연금화하여 퇴직금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자영업 진출 확대 등 창·폐업에 따른 자산 소진으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7년 적용 예정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용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들이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상당수가 10년 이상 가입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으므로 연금 수급권 확보 차원에서 가입기간과 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도입에 대한 제언 : 호주 퇴직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전성주(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79호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현행 법에서 DC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14년 퇴직연금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영기관을 회사 단독으로 선정한 경우가 33.5%에 달하며, 운용기관 선정이 연금자산 운용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운용기관이 사용자의 주도하에 선정될 경우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대한 절감 노력이나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할 유인이 없어질 수 있다.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가입자 선택권 보장법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퇴직연금 기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1992년 도입된 의무퇴직연금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은 DC형이 80%를 차지하며 산업형기금, 소매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소형기금 등 크게 5가지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구성된다. 가입자 선택권 보장법 도입 이전에는 근로자 대부분이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연금 기금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의 기금선택이 자유화되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기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의 기금 변경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금 간 경쟁을 강화시켜 전반적인 퇴직연금 기금의 수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매형과 기업형, 산업형기금은 각각 약 18%, 45%, 2% 감소한데 반해 공적기금과 소형기금은 각각 약 12%, 3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85%에 이르던 소매형 기금의 총수수료율이 2013년에는 0.28%p 낮아졌으며 동일 기간 기업형, 산업형, 공적기금의 총수수료율은 각각 0.02%p,

0.1%p, 0.05%p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가입자를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수수료 절감 및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선택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0호

현재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주식투자분에서는 100만 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채권투자분에서는 10만 원의 이자소득과 20만 원의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투자자는 투자한 펀드를 결산 시 총 7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100만 원의 투자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30만 원의 투자 이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의 단순한 이자·배당 위주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금융상품과 괴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저해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도입된 ISA에 대한 과세제도는 손실 시 기간통산, 투자상품 간 통산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 과세 등 현재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다. 그리고 수익과 손실의 통산 및 과세대상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는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납세자가 느끼기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금융소득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소득 과세일체화’ 개혁을 통해 금융투자 소득의 손익을 통산하고 과세방식을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미국 역시 금융투자에 대한 상품 간, 기간 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직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득 과세의 합리화가 꼭 필요하다.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진단과 평가

박선영(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1호

최근 들어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축 인허가 및 미분양 재고 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물량이 소화되지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과잉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가세하면서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주택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현 정부 집권 초기에 거시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규제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부채 건전성이 향후 악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시장을 만기 일괄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개혁이 단행되었다.

주택정책이 경기 활성화나 금융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되면 부동산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시장의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어 장·단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단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증가뿐 아니라 주택별실, 지역별 주택수요 편차 등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차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황조건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 대출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미시적 시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 평가절하에 따른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반·추납 및 임의가입 확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최정훈(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2호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하면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반·추납,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국민연금 반·추납, 임의가입을 통한 가입 확대는 급여 적절성(Adequacy), 재정 안정성(Sustainability)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먼저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증가는 국민연금 급여수준 증가로 이어져 노후빈곤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반·추납, 임의가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로 분석하면, 각 1.6%, 1.4%, 5.6%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재정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재정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반·추납, 임의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의 0.6%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 증가로 기초 수급 노인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전반적인 국가재정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가입 등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노후준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즉, 추가적인 가입을 통해 급여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적정 노후소득보장 관점(OECD 권고 소득 대체율 70%)에서 보면 미미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사적연금과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3호

2011년 한국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도입했으나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조정이 진행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 여야는 사망·중증 상해 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사망·중증 상해 사고 이외의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이 과실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의료분쟁조정제도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국가들은 노폴트(no-fault) 환자보상보험(PCI: Patient Compensation Insurance)을 도입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실책임주의 법리에 따라 의료인·의료기관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후에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

다 퀘벡, 호주 등은 의료인·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폴트 PCI로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노폴트 PCI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의료인·의료기관의 명성 보호, 의료분쟁 관련 비용 절감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1975년 노폴트 PCI를 도입한 스웨덴은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노폴트 PCI제도를 운영하는 스웨덴의 인구당 보험료 부담은 13,959원(2014년 기준) 수준이다. 월드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노폴트제도에 따른 비용은 미국 과실책임제도의 1/10 수준이다.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스웨덴 노폴트 PCI 사례를 고려해 노폴트 PCI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노폴트 PCI 상품 개발, 공공 의료기관 중심의 PCI 보험 가입 독려, 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보험회사들의 노폴트 PCI 공동인수 방안 검토 등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조용운(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4호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기초로 가격 및 의료 공급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자료 확보 및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법 제45조의 2).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비급여서비스 가격을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 가격이 요양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환자는 그것을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대질환자는 가격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구매하여 치료를 하려고 할 것이어서, 요양기관은 중대질병 치료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자가 그 가격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자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불합리를 겪고 있다.

경증질병 환자가 사전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중증질병의 경우와 다르다. 경증질병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높으면 참고 지내거나 자가 치료를 하고, 가격이 낮으면 의료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가격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 속에 놓여져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됨과 동시에 합리적 소비 유도를 통한 과다의료이용의 감소 및 경쟁촉진을 통한 공급가격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는 사전적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요양기관 간 가격비교를 통해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는 비급여 진료 행위 코드 표준화가 미흡하고 이번 개정으로 전면적 공시의 실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

지만 비급여 부분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큰 걸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5호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는 금융감독 기조를 보험, 금융투자, 은행 등 여러 금융권역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이사회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금융회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으로 명시하여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그 내용과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

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영에 대한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업무집행책임자 중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별도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권한에 비례한 강화된 규율을 적용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정하여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고된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감독에서 금융안정성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타겟데이트 펀드의 역할과 의미

전성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6호

최근 대표상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연금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타겟데이트 펀드(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개인에게 특화된 연금자산 운용전략을 시행해주는 대표상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자동투자 옵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상품의 하나로 지정될 TDF는 연금 가입자의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의 편입비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준다.

TDF는 개인의 은퇴시점에 맞춰 원하는 투자실적을 얻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 등의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해 자동적으로 최적의 자산배분을 시행해 준다. 특히, TDF의 자산배분은 초기에 위험자산에 높은 비중을 투자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를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전략을 구사한다.

2007년 적격디폴트 투자상품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TDF를 통해 운영되는 자산규모가 연평균 2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5년 약 7조 6,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TDF 운용자산의 절반이 은퇴를 앞둔 51~65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펀드로 운용되고 있으나, 개인 자산 내 TDF 활용도는 20대의 젊은 근로자들이

자산의 35%를 TDF로 운용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디폴트 상품인 TDF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손해를 입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0년 디폴트 투자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표상품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적의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TDF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들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잘 인지하도록 공시제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표상품에 대해 투자전략, 수익률, 위험지수, 수수료 등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는 TDF에 관한 연금운용지침서를 마련하여 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조재린(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7호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IFRS4 2단계 시행과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경영상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IFRS는 투자자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IFRS4 2단계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예상 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지급 능력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평가제도 또한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보험부채평가의 적정성을 보고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계리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의견서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현행 보험부채원가평가하에서는 계약 시 보험부채의 크기가 확정되므로 선임계리사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다시 말해 현재 선임계리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부채시가평가 시 미래 현금흐름 산출을 위한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며 가정 산출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보험부채 적정성 검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가정 설정 수준에 따라 부채의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보고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부채원가평가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로 이행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현재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무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선임계리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가평가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선임계리사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청구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임계리사는 감독당국을 대신하여 회사가 지켜야 할 원칙 준수 및 관리 여부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임계리사는 준비금 산출과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감독당국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금 평가와 관련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선임계리사가 감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8호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총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 원을, 그 외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

고 있다.

신고에 의한 부당확인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4.6%(2013년), 민영보험 5%(2014년)로 나타난다.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하여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1987~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이례적으로 민영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대행소송을 허용한다.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공·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하여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89호

108

조선·해운업 등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부실 증가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 해운업 이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등에서도 선제적, 상시 구조조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과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 기업 수익성 회복 지연으로 인한 부실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은 인력 및 생산시설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은 구조조정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경우 은행, 보험회사의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큰 보험회사 기업대출도 향후 부실이 확대될 경우 자산건전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해운업 등 5개 업종의 수익성 둔화와 생산 감소는 기업성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성보험이 60%를 차지하는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조선, 해운업 등 업종의 생산 위축이 가시화된 2012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은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를 초래하였고 보험료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 장기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 부진은 장기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가계의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감액은 2012년 99조 1,778억 원에서 2015년 93조 1,80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일반손해보험의 위축,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용절감 방안,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인수위험 다변화, 사업 및 지역 다각화 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 : 비교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경희(상명대 교수)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1호

연금저축상품은 장기계약 특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계약이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적립금을 이체시키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의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연금저축상품 간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권별로 상이한 사업비 부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탁(은행) 및 펀드(증권·자산운용)는 실적배당형으로 적립금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초기사업비는 낮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증하는 반면, 보험(생보·손보)은 금리연동형(최저보증이율 존재)으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므로 초기사업비가 높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구조이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에 공표된 자료

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분기 조회 시점 기준으로 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상품 전체의 단순평균 수익률은 3.5%, 10년 경과 후 적립률(적립금÷납입원금)은 115.1%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판매된 전체 상품에 대한 투자성과를 신탁·펀드·생보·손보상품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평균값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동일 업권 내 상품 간 수익률 격차는 펀드상품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나, 펀드상품 선택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고 동일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신규 가입 및 계약이전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펀드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품도 존재하므로, 자신의 위험감내도를 추가로 고려하고 투자대상 및 투자시점을 잘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유지할 경우, 금융권역 특성보다 금융회사별 상품관리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제휴전략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2호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원을 상회하고 가입률은 56.1%에 이르는 등 큰 폭의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위상 약화는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의 보험회사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즉, 보험회사 단독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회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상품 및 업무 측면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일본생명은 그룹 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2014년 현재 DC형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3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즈이스미토모해상 등은 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손보재팬 등은 DC형 연금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 특징은 크게 DC형 퇴직연금 중심, 중소기업 중심, 그리고 운용서비스 차별화 중심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일본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는 대

체로 DB형 퇴직연금보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대기업은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장 선점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보험회사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순수 위험보장기관에서 연금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 기조,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그리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DB형 퇴직연금 운용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일본 제휴 사례 등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의 운용능력을 제고하여 DC형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험회사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상품 및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연금운용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관계금융회사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그룹화전략)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퇴직연금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전속설계사채널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김석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3호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인 전속설계사 조직은 인구 변화와 새로운 판매채널 등장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큰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홈쇼핑, 온라인채널 등 새로운 판매채널이 계속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다. 신규 채널들은 전속설계사채널과 달리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설계사채널보다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 비전속채널인 방카슈랑스채널의 등장 및 성장은 보험시장의 점유율에 영향을 주었다. 2015년 말 현재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 10만 2,148명, 손해보험 8만 1,148명으로 2012년 말 기준 생명보험 11만 6,457명, 손해보험 9만 5,017명보다 각각 12.3%, 14.6% 줄어들었다. 반면, 독립대리점(GA)의 설계사 수는 2010년 3월 말 기준 12만 1천 명에서 2015년 6월 말 기준 19만 2천 명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생명보험에서 설계사채널이 보험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FY2008 39.7%에서 2014년에는 19.5%로 축소되어 설계사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설계사채널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젊은 연령대의 설계사 조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사는 타 직종 대비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규 설계사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사채널

의 축소가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외국의 경우에도 인구고령화와 젊은 연령층의 설계사 기피로 인하여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계사 수 감소와 설계사 고령화 그리고 새로운 채널의 성장은 전속설계사 수에 기초한 기존의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설계사 수의 감소는 독립대리점(GA)의 규모와 설계사채널의 판매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험회사는 저비용의 새로운 판매채널 등장으로 전속설계사의 활용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온라인채널과 같은 새로운 채널은 상품 판매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계사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채널 믹스전략이 요구된다. 전속설계사 조직의 규모에 의한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보험회사는 상품을 통한 경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M&A에 의한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4호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그동안 M&A가 드물었으나, 최근 M&A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생명보험회사는 5건의 M&A가 성사되었으며, 현재 일부 회사가 매각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 소유구조에 따라 이해관계, 사업시너지 창출, 자본조

달 역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전략 및 성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성사된 5건의 생명보험회사 M&A 중 3건의 소유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서구계와 산업계의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2011년 총자산 기준으로 생명보험산업의 15.5%를 차지했던 서구계가 4년 만에 8.3%로 비중이 대폭 축소된 반면, 중국계는 0%에서 5.4%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계는 동 기간 동안 1개사(동양생명)가 줄어들고 비중도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

향후 사전적 규제 철폐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하여 생명보험산업의 M&A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가 대형화하여 산업 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지속과 자본규제 강화에 의해 향후 생명보험회사는 지배주주의 자본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산업계, 기타금융계, 서구계 보험회사는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계 금융회사와 은행계 지주회사는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대형화 및 점유율 상승으로 생명보험산업에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중국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산운용과 상품 출시, 그리고 핀테크 기반 보험사업 확대로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새로

운 경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류인 산업계 및 기타금융계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확대에 대응할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5호

급속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노후소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을 통한 소득대체율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30만 원(현 20만 원)으로 증액(더불어민주당)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어 급여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 개혁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 보완형 혹은 공·사연계형 연금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축소하되 이를 보완할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공·사연계형 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강화 차원에서 공·사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또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연계형 연금인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2028년 소득대체율 40%)이 약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공·사연계연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공·사연계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6호

현재 드론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보험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드론 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에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0년까지 미화 100조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드론 시장의 급격

한 성장으로 인해 관련 보험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상업용 드론 시장 확대가 드론보험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영공 침해, 정보유출 배상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 있다.

현재 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판매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향후 드론보험 시장 확대에 대비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능력을 제고, 드론 손해가 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약관·요율 조정, 드론 제조기업과의 제휴, 단종보험대리점 판매채널 구축 등을 통해 드론보험 시장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 Solvency II 개정의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7호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장기투자 재원 조달 역할이 약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디레버리징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의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장기투자란 다년간의 개발과 회수기간을 가진 자본집약적 활동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며, 장기투자자는 장기 또는 만기일까지 자산을 보유할 능력, 의향,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 장기투자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전통적으로 공적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재정적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감소되었다.

한편, 장기부채에 대해 장기자산으로 매칭해야 하는 보험회사에게 사회기반시설은 적합한 투자대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므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장기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Solvency II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요구자본(capital charge)을 완화시킨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요구자본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

는 스트레스 테스트, 현금흐름 및 수익의 예측 가능성, 재무구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의 지역적 제한은 없으나, 정해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유럽경제지역(EEA)이나 OECD 지역의 프로젝트일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RBC)에서도 사회기반시설금융에 대해서 여타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보다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신용위험계수 부과 대상은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한정적이어서 보험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수익률 제고와 금리리스크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특정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도 위험계수를 경감시키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모든 해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은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위험계수 경감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OECD 국가의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경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 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8호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행복하였던 가정 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해결을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1일 평균 71.6건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의 사고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사망, 부상과 후유장애의 사고심도는 비음주운전에 비해 각각 1.5배, 1.7배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시 사망자와 중증 후유장애자가 양산되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파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위험이 큰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적으로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제도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억제하는 기능하고 있다. 특히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음주운전 사고를 면책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고 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사전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보다 효

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담보를 보상하지만 자기차량담보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빈번한 음주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이 커지도록 일본과 같이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것을 사회적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부담금(대인배상 I·II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약관의 개선에 대한 검토와 병행하여 보험요율제도도 음주운전 억제에 유도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 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의 사전 방지와 억제에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하여 보험제도와 법규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신질환자의 보험 접근성 제고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399호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의

27.6%로 성인 10명 중에 3명꼴이다. 경쟁·불평등·소외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부정적 환경 심화와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치료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의 경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보험권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어져, 「보험업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상기 조항 위반 시 금융위원회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 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객관적 위험을 평가에 근거하여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하다.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급증과 과제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0호

116

2016년 상반기에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136.3억 달러 늘어서, 주요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일각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를 저금리에 의한 손실만회를 위한 수익률 추구행위(searching for yield)로 여기며, 향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야마토생명도 수익률 추구 목적으로 해외투자비중을 급격히 늘렸으나 위험관리가 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2008년 파산에 이른 바 있다.

먼저 보험회사가 해외투자를 확대시키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는 시장금리 하락에 의한 금리역마진 확대와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한 자본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요구자본 경감이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면서도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리부 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장기 자산만으로는 이러한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장기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다양한 우량 장기 회사채가 발행되어 투자매력도가 높다.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익률 추구행위로서가 아니라 저금리와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투자 리스크를 축소 혹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외투자 확대가 리스크관리 없이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님을 시사한다. 보험회사는 대체로 금리·신용 리스크를 경감시키거나,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들은 자산다변화를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다소 낮추고 있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헷지비용과 헷지만기를 조절함으로써 수익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해 적정한 요구자본을 산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적 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차량 노후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

송윤애(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0호

우리나라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006년 3.04명에서 2016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 자동차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6년 0.98대에서 2016년 1.14대로 증가하는 등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 보급률 확대, 자동차 기술 발전,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차량 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평균 연령이 2001년 5년에서 2015년 7.5년으로 상승추세에 있고, 차령 10년

이상의 비중이 2001년 7.1%에서 2015년 25.7%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차령 5년 이하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차령 10년 초과 비중이 증가하는 등 차령 양극화가 나타났다. 2015년 EU 회원국의 평균 차령은 9.7년, 미국의 경우 11.5년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노후화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상 가능성 증가, 일반수리 및 Non-OEM·중고·재제조 부품 수요 증가, 그리고 신품·OEM 부품 교체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확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차량 노후화가 자동차보험 담보물건의 질적 변화와 신규 담보위험 생성을 의미하는 바, 보험회사는 차량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첫째 차량 노후화 등이 운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차량별 안정성 정도에 따라 자기신체 손해담보의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동차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보험과 같이 평균차령 상승과 차령 양극화가 고려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셋째, Non-OEM·중고·재제조 부품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하는 인센티브가 장착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주는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1호

117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부동산 펀드 환매 중단 조치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영국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 침체와 자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브렉시트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개방형 펀드의 단기 유동성 부족 사태와 영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부동산 자산의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펀드별 현금 유동성 보유 비중에 따라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일시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6년 브렉시트의 시장 충격은 근본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영국 부동산 시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 위주여서 미국과는 달리 부동산 담보 구조화 상품에서 비롯되는 투자 위험 확대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영국 런던 시장의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파리, 프랑크 푸르트 등 유럽 주요 거점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투자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은 고수익 추구보다는 장

기적인 임대수익이 예상되는 안정적인 핵심 부동산 위주의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진 유럽시장보다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중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2호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이후 관측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진의 경우 발생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포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두 가지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 공동주택, 온실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 공공보험회사, 재보

험회사, 보험폴 등의 설립·운영, 모든 보험에의 지진담보 포함,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 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송윤애(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3호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약 1조 5,558억 원으로, 건강보험(전년대비 6.9%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 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하며,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한방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

인당 통원진료비, 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높다. 둘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한방비급여 항목이 견인한다. 셋째, 건강보험 한방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상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고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제도의 요건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급여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한방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고시되어 있으나,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기준이 미흡한 바,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먼저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심사 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방 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3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의 소프트웨어 트랜딩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부터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행 차등평가모형은 2012년에 만들어져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³⁾부터는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두 현행 모형의 평가 지표인 유동성비율과 매출이익률을 유동성 리스크 비율과 사업비율로 각각 변경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지표인 부실자산 비율 대신 생명보험은 금리 리스크 비율로, 손해보험은 자본대비보험위험액으로 각각 지표를 변경하였다.

임계치 설정 방식은 평가 지표별로 만점과 0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최대임계치와 최소임계치를 설정하는 방식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금융회사의 실적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최대임계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급여력비율 최대임계치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높아졌다.

보완평가부문에서 재무위험관리능력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리는 대신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의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이고 재무위험관리능력평가의 기본점수 5점을 폐지하는

3) 이후 논의과정에서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변경됨.

방향으로 보완평가부문 평가 방식을 바꾸었으며, 등급별 회사 수에 제한이 없는 현행 절대평가 방식에서 1등급과 3등급의 비율을 40%⁴⁾ 이내로 제한하여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금번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차등평가모형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함께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차등평가모형 도입 당시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평가모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보험권역의 경우 회계제도 및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지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차등평가모형 변경도 이러한 제도 및 규제 변화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판단된다.

평가 지표의 변경과 임계치의 설정에 있어 보험권역 특성 반영이 부족하고 차등평가모형 변경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도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 지표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비율을 손실회복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생명보험의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를 중복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차등평가모형 제도변경 과정에서 보험권역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4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I는 교통사고 부상 환자들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보험금은 사고책임(과실)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치료관계비를 사고책임과 무관하게 상해등급 한도금액까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에 따라 상제한 후의 부상 보험금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을 경우에도 대인배상 I·II에서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및 사고책임(과실)이 적은 부상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이라는 불공정성을 초래한다.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른다. 사고책임이 큰 부상자의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차년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에게 치료관계비를 지급할 때 사고책임을

4) 이후 논의과정에서 50%로 확대됨.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상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고,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중과실 경상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료관계비 지급 시 사고책임(과실)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치료관계비 지급에 사고책임을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환자들의 장기입원 및 과잉치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사고책임 부담은 사고발생 가능성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한다. 한편, 제도 변경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4호

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를 폐지하는 ‘연금 자유화’ 조치를 2015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연금 자유화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적립금의 25%까지는 비

과세로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그 이상 수령 시에는 최대 55%로 중과세하였다. 하지만, 연금 자유화 이후 중과세 하던 부분을 세율 0~45%의 종합 소득세로 전환하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稅)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러한 연금 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자들의 행태에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영국정부가 발표한 연금 적립금 수령자의 수령형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절반이 상시 출금이 가능한 펀드형연금(Drawdown) 혹은 비결정형연금펀드(UFPLS) 등을 이용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도 변화 및 금융회사의 노력에 힘입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나, 이자율이 낮은 종신연금 수령 비율은 감소하고 적립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고 추후 일시금 수령 및 종신연금 전환이 가능한 펀드형연금(Drawdown) 수령비율은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고 연금수령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노후빈곤을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이하로 영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크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 방식 또한 다양하지 못해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후빈곤 완화를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 유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소득양극화가 가구의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5호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소득과 최하위 10% 소득의 비율(소득 10분위 배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는 가구의 보험 구매력에 영향을 줄 것이며, 보험 가입의 변화는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도 가구의 보험 가입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가구의 보험 가입 추이를 보면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 가입이 약화되고 있다. 중·상위층의 보험 가입률은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2009년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 점차 회복하고 있으나 빈곤층의 경우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보험 가입률은 2001년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비중을 보면, 중·상위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은 급감하여 빈곤층의 위험보장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구 특성별로 보험 가입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경우 청·장년층(44세 이하)의 보험 가입률이 감소한 반면, 중·고령층(45세 이상)에서 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납입보험료 역시 보험 가입률과 마찬가지로

로 중년층과 1인 및 부부가구의 보험료 증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가구 유형에서 청·장년층(44세 이하)의 납입보험료 증가율이 중년층(45~64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가구의 보험 가입률이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데 이는 주로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 구매력이 약화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납입보험료 중 빈곤층과 중산층의 비중이 줄고 부유층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중·하위 소득계층의 보험 가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보험소비의 양극화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위험보장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 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중·하위 소득계층의 위험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보험소비 시장이 중·고령의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어, 각 시장에 적합한 상품 및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중·고령의 부유층 시장의 경우 자산관리, 세제혜택, 유산상속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중산층 시장의 경우 보험 가입여력이 취약해진 것에 대응하여 비교적 저렴한 상품 공급을 통해 보험 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역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3.0과 보험산업의 정보 이용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5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혁신적인 활용을 위해 동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자는 공공데이터개방운동이 정부 3.0이라는 타이틀 아래 전개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주로 인터넷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었지만,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잠재적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험산업이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공공데이터는 의료 관련 데이터인데, 보험산업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볼 때,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언더라이팅과 지급심사 단계의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서 활용이 어려웠다.

상품개발의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의 허용 가능성은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프라이버시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었다.

최근 해외에서는 ‘통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정보보호 방식으로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정보보호체

계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정보보호규제에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접근법의 경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규제의 목적을 두지 않고, 데이터 활용의 혜택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은 수용하면서 위험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험관리 기반 규제 도입과 관련된 해외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및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데이터 공급자인 공공기관과 수요자인 산업계가 의견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미 대선결과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임준환(선임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6호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모두 과반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국민 일자리를 되찾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미국을 빠르게 재건하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은 확장적 재정정책, 금융규제 완화 및 연준(Fed) 통제 강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 공약은 공약 자체의 완성도가 높지 않고 공약의 이행과정

에서 상당한 마찰과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트럼프 경제 공약의 구체화 및 실행 수준에 따라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미국 금리는 감소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금리 상승압력 증가, 보호무역 강화 등은 달러화 강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트럼프정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측면은 국내 주식시장 불안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변액보험사업이 위축되고, 미국 보호무역정책에 따라 수출 주도형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보험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 금리상승 및 달러화 강세가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해외진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금리역마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성 확대 및 달러강세의 반전 가능성 등도 내재하고 있어 금융시장은 예측하기 힘든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된 시장위험(금리, 주가, 환율 등)관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 방향 : DCDS 운영 사례

송윤애(연구위원)·마지혜(인턴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6호

지난 6월 신용카드회사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익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신규판매를 중단하였다. DCDS란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한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2005년부터 국내에서는 전업 신용카드회사에만 DCDS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신용카드회사의 DCDS 취급은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DCDS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요율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보험과 달리, DCDS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과 불완전판매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2005~2016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수수료 대비 계약상 책임보험(CLIP) 보험료는 18.5%로, 사망보험 등에서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의 비중이 80%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는 과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DCDS는 미국의 그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DCDS와 대체상품 간 규제차이로 인해 DCDS 공급자의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회계조사원(GAO)은 DCDS와 대체상품에 대한 규제차이로 인해 주요 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익이 수입수수료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DCDS에 대

한 소비자의 편익대비 비용이 높으며,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DCDS가 신용보험을 대체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DCDS 운영 사례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규제차익과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효용이 제한됨을 보여준다.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및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고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DCDS 운영 사례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6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어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대량맞춤 생산이 가능한 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진화이다.

보험산업은 초창기에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감독당국의 규제하에서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점차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 개발이 변천되어 왔다. 최근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 가입자 세분화 및 가입대상 확대, 신기술 활용,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보험상품 개발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유병자들을 위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계약자의 개별 위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우량체보험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국내 보험회사들은 기존 경험통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계약자 속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어 상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보험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생활습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상품과 별도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상품 개발의 주요 변화는 IOT 기술 발달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계약자 특성에 맞는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별 상품(Order Made) 개발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헬스케어 상품 개발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의 개념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보험상품에 추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헬스케어 상품 개발은 보험 가입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에서 4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종합건강관리서비스 상품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험회사는 4차 산업혁명처럼 개별 계약자가 필요한 보장만을 담보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계약자는 최소한의 보험상품만 가입하게 되어 중복가입이 최소화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추가되는 서비스로 시장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자 중심의 상품 개발로 모든 보험상품은 계약자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약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개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장

착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의 의미

임태준(연구위원)·이규성(인턴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7호

생명보험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해지환급금 증가 추세를 두고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재정상태 악화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한 진위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은 2010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2분기에는 5.3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한 금액으로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1.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2016년 해지환급금은 2000년 이후 최고치(2015년 20.2조 원)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DP 대비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비율은 2016년 2분기 1.4%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2010년 2분기 대비 23.6% 상승한 수치이다. GDP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이 상승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지급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뜻하며, 장기화된 불황의 여파로 계약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2분기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5%로 2010년 2분기 대비 23.7% 상승하였다. 또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 수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은 증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불황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계약자의 보험해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지급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계의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1년 평가

김석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7호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 발표 이후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안전할증 규제도 2017년에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새로운 상품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구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이 증가하는 등 고객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준약관 관련 법규 개정 지연으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이 여전히 유효하나, 상품심의위원회는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 폐지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개혁으로 직·간접적인 가격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실손보험 등 일부 보장성 보험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가격인상은 금리하락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과 손해를 반영한 적정한 보험료 산출에 기인한 것으로 가격 자율화로 보험료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이 허용되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아직 활발히 발행

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행환경이 개선될 경우 부채 시가평가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판매채널 혁신 관련 로드맵 일정에 따라 상품비교가능성 제고 및 특정 회사상품 구매 강요행위의 금지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활성화를 위해 개설된 보험다모아 등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로드맵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 일반손해보험 요율체계 변경은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판단 요율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보험상품 등 기존 보험상품과 전혀 다른 형태의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신고 수리 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작성하는 표준약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작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시장기제에 의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부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산업이 금융개혁으로 인한 제도 변화를 따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산업이 연착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8호

128

2016년 10월 24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위자료 기준금액을 2억 원으로 적용하고 기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증액·감액 조정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나 음주운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을 상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 행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면 몇 명에게 사상을 가하는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고부담금제도는 2004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음주운전 사고발생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2004년 이후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자료 상향의 목적인 음주운전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Ⅱ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영국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별가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회사는 청구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미국 스테이트팜의 사례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정책은 음주운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 보험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여부

백영화(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8호

대리점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은 원래 제조업 분야의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은 거래의 성격상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을 공급받아서 이를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인데, 보험대리점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재판매·위탁판매하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리점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인데, 현재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오히려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도 보험업감독법규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리점법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을 둬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 명시적인 적용 제외 조항 없이는 보험대리점이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제기할 소지가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은 결국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대리점법은 금융투자업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보험대리점 계약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일부 중소형 및 개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대리점 계약 전체를 대리점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대리점법령상 보험대리점 계약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 사항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특별호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득 비과세를 축소하고 비과세 요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과,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장기저축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도입하여 저축률 제고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이 갖고 있는 산업자본 공급,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의 저축유인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은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계층에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공적연금을 보충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 중 보험회사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3.8%에 이르는 점은 장기저축성 보험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강화는 노후소득원 마련이 절실한 중산층의 노후소득원 마련 방법 중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 납부 방법의 규칙을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영현(연구위원)·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특별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국내 장기금리 상승 및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가 다소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방증으로 미국 장기금리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의한 자본유출로 인하여 국내 장기금리도 당분간 제한적으로 상승될 것이다.

완만한 장기금리 상승은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실질적 건전성을 개선시키나, 성장성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다. 부채원가법의 현행 RBC 비율은 하락하지만, 실질 부채듀레이션이 큰 보험산업의 특성 때문에 부채시가평가기준의 건전성은 개선되며, 이차역마진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다만, 저축성보험 수요 감소 및 해약 증가로 성장성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 건전성 및 성장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보험 수요 급감 및 해약 증가는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출 및 부동산, 회사채 등 위험자산의 부실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금리가 급등할 경우 현행 RBC 비율이 빠르게 악화되어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하여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보험회사들은 충격이 클 것이며, 적기시정조치(RBC 비율 100% 미만)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RBC 비율이 200% 미만인 회사들은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적인 상승세 지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의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논의와 보험상품 개발 추이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9호

일본은 총리실과 국토교통성 등 정부기관의 주도 하에 자율주행자동차(이하 ‘AV’) 개발과 상용화 정책을 공표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교통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민관 ITS 구상 로드맵”을 2016년에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한정된 지역에서의 운전자 없는 완전 AV(L4)는 2026년 이후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AV(L3 이하)는 L4보다 이른 2020년 이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AV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AV 사고 시 책임부담에 대한 논의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AV의 사고책임에 대한 논의는 보험업계와 정부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 주관기관인 국토교통성은 2016년 11월에 ‘자율운전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를 구성하고 2017년부터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방향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손보업계에서는 부분 AV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L4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을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실험실증용 보험상품 개발에 이어 L3 이하의 자율주행 시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2017년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실험실증

용 AV 보험은 주우해상보험그룹(MS&AD)과 동경해상보험그룹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주로 AV의 자율주행운행 리스크와 사이버사고, 제조물 책임 등 기타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분 AV 보험에 대해서 동경해상이 개발한 ‘피해자구제 비용 등 보상특약’상품은 2017년 4월부터 갱신되는 기존계약과 신계약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동 상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제어불능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부대한 계약에 한정하여 특약을 부대할 수 있으며 자기신체나 자차담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AV 상용화정책을 추진하고 사고책임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AV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논의와 상품 개발 동향은 국내에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본의 법제와 적용법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고책임의 부담논의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운전자요인이 배제된 자동차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담보위험결정과 효율산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 재보험시장 연성화 동향

송윤애(연구위원)·마지혜(인턴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09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일본·뉴질랜드 지진과 태국 홍수 이후, 지

난 4년 동안 대재해로 인한 보험 가입 손해액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최근 헷지펀드, 투자은행, 연기금 등의 투자자본이 재보험시장에 유입되어 재보험담보 공급이 늘어난 반면, 재보험담보 수요는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 재보험시장에 담보력 공급이 원활해지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재보험요율이 하락하고 대재해 이후에도 재보험요율 인상폭이 줄어들어 재보험요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둘째, 재보험사 간 경쟁 심화 및 요율 인하로 재보험 수익이 줄어들자 재보험사 간 M&A가 증가하였다. 셋째, 재보험사의 원보험 영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재보험요율이 세계 재보험 담보력 시장에서의 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재보험요율이 출재사(원보험사)의 위험전가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회사는 세계 재보험시장 변화에 상응한 재보험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재보험 담보력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요율 인하 및 수익 악화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원보험사는 요율뿐만 아니라 재보험사 신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보험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록 최근 4년 동안 대재해 손해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례 없는 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보험시장이 경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보험사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고려한 출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이슈분석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검토에 관한 소고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66호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납입 시 300만 원까지 별도의 추가적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무원 및 사학연금 개혁으로 인해 저소득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에 따른 특수직역연금액 감소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보전하여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특수직역연금 수령액이 낮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분석모형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전략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67호

10종의 생명보험상품 중 재해중점보장보험·중

신보험·연금보험과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볼 때,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중점·보장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질병중점보장보험을 추가로 권유하는 판매전략이나, 상기 보험상품 개발 시에 질병중점보장내용을 포함시키는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연관법칙분석 결과

구분	기존구매 상품	추천상품	추천 성공률
1	재해중점보장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35.98% (1,359)
2	연금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16.10% (1,161)
3	종신보험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8.79% (1,088)

주: 1) 본 분석결과와 추천 성공률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 값이 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시킨 것임.

2) 추천성공률이란 일반 소비자에게 추천상품을 권유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 대비 기존구매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천상품을 권유했을 때 그 상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의 비율임.

차이나리스크가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68호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차이나리스크 확산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의 시장개입으로 금융시장이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차이나리스크가 지속 또는 확대되면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 강화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달러화, 엔화 등 선

진국 통화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심화로 인한 자본유출로 환율 약세, 주가 하락, 채권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차이나리스크가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간접적 영향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된 이유는 국내 보험회사의 중국 투자 비중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하락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 및 채권의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국고채 수익률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차이나리스크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 사항

조재린(연구위원)·이경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69호

예금자보호법 개정(2015년 12월)으로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대지급, 계약이전 등의 예금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보장함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변액보험 전체가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으로 오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보호 대상금액이 영업정지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건(만기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한 계약 중 적

립금이 최소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최소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되어 지급되는 금액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특성상 일반 보험계약과 동일한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보험계약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나 변액보험은 보험금 성격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보장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조치, 그리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험다모아」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박선영(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0호

정부의 핀테크 육성책과 맞물려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지난해 11월 23일 첫 시연회를 가진 이후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는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향후 사업비 절감효과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다모아」 모형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원스톱 서비스 결여, 가격비교기능의 실효성 의문,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 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보험다모아」가 실질적인 소비자 채널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객

들이 상품비교에서부터 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현,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검색조건 분류, 고객 니즈에 맞는 검색조건 세분화, 그리고 「보험다모아」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CM상품 판매 증가의 영향 및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0호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 CM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보험슈퍼마켓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CM상품을 개발, 공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CM상품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CM상품의 상품가격 특성측면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CM상품 판매증가가 가격하락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수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CM상품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경영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CM상품 가격인하가 대체상품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등 부수적인 가격경쟁은 자동차보험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있어 보인다. 최근 수년간 자동차보험 산업의 총 영업

수지 적자 규모가 약 1조 원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손해보험회사는 CM상품 개발취지에 부합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적절한 경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의미와 시사점

임태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1호

일본중앙은행은 2016년 2월 16일부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실험적 성격의 유동성 확대정책으로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인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으로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일본중앙은행 판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표면적 목표는 유동성 확대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게 될 초과지급준비금의 규모는 10조 엔에서 30조 엔 사이로 그 규모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공격적인 국채매입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유동성 확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의 실질적 취지는 엔화의 평가절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외국자본이 일부 이탈하여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과 수출품목이 많이 겹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진작방편으로써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출 부양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던 만큼 선불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2호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보험상품 측면의 고려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월세 위주의 주거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의식주 관련 필수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의료비 지출발생 시 기초생활 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지출 불확실성과 함께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며, 고연령의 경우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예상치 못한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저연령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임. 60대 이상 고연령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에(66.7%)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료가 저렴한 사후(死後)처리 관련 보험 개발도 고려될 수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 특화된 보험상품도 개발될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하나

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므로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일시정지 표지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2호

2013년 현재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한 것이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횡단보도·교차로 일시정지 표지판의 설치와 이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을 수 있다.

미국·영국 등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큰 액수의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반해 현재 한국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통·경찰 당국은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확대, 과태료·벌칙금·벌점 강화, 단속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이정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3호

오바마케어로 통칭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PPACA)은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품질 향상, 의료비 통제 등을 주요 목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의료비 증가가 억제되고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혁에 따른 성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2000년 12.5%에서 2010년 16.4%로 10년 동안 3.9%p 증가하였으나, 개혁 이후 3년간 16.4%에서 정체 국면으로 실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보험 가입 의무화, 저소득층 공적건강보험(Medicaid) 적용범위 확대, 차상위 빈곤층의 건강보험 지원 등 의료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무보험자의 비중이 2010년 18%에서 2015년 13%로 감소하였다. 특히, 의료보험 혜택자의 확대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의료비 증가세 둔화는 미국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제성장, 인구고령화, 건강보장 확대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20년까지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완결될 경우 의료비 증가 추세는 지금보다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3호

최근 재보험회사들의 실적이 회사별로 명암을 달리하면서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세계 재보험시장은 강한 연성시장(Soft Market)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재보험 요율인상도 쉽지

않다.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인하여 자본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본조달가격이 하락하여 재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보험 요율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요율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손해보험회사들의 재보험회사 의존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비통계 자체 판단요율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보험회사의 도움 없이 요율 산출이 가능해지고 재보험출재도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올해 안에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재보험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재보험 회사들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ACR(Asia Capital Reinsurance Group)과 Pacific Life Re는 그동안 국경 간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일반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시장에 각각 참여하여 왔으나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지점을 설립하고 영업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위험 인수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4호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노력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3월 2일 결실을 보게 되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형

량 강화, 보험사기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지보 고나 심사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잠재적 보험사기범에게 우리 사회가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전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4호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적립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 퇴직연금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조치는 의무적립비율, 적립금 과부족 관련 이행조치, 미이행 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전성 규제조치는 국제적 권고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 수급권이 건전성 측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최소 적립비율이 연금부채의 10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무적립비율은 적립금 적정수준의 7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 인 기업이 도산할 경우 30%의 적립부족(미적립채무)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적립액 평가 및 퇴직연금 부족 시 이에 대한 제재조

치가 미흡하여 퇴직연금의 적기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최소적립금 수준을 100%로 조속히 상향 조정해 적립부족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기준에 미달 시 추가부담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적기시정조치 위반 시 엄격한 제재조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중위험·중수의 투자상품으로서의 추가연계증권(ELS)

전성주(연구위원)·김미화(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4호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추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이 보험회사에 적합한 투자대상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장기에 걸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만기가 장기이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적합한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ELS 시장의 현황을 감안할 경우 만기와 원리금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 완전히 매칭될 수 있는 ELS 상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ELS 상품이 3년 이하의 만기를 지니고 있고, 원금비보장형 ELS가 전체 발행액의 79.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형적인 ELS 상품은 보험회사에 적합한 투자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

다. 다만, 장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특성에 맞게 장기 원금보장형으로 ELS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외시장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ELS 상품을 제공하는 증권 회사에 비해 높은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risk)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 가입자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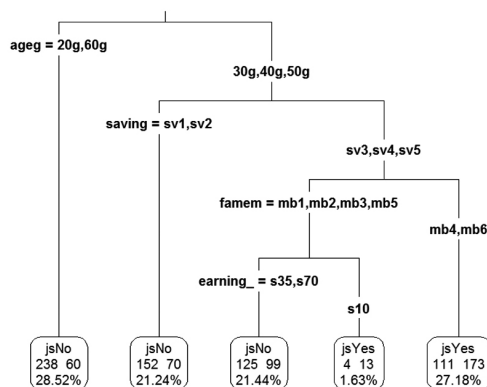
보험금융개혁 이후 생명보험 상품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특성(니즈)을 반영하는 마케팅전략이 과거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인구구조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종신보험 가입자의 특성에 부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의 나이가 핵심 경제활동연령(30대~50대) 계층에 속하면서 가구의 연간소득과 저축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계층일수록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추정값 (표준오차)
(절편)	-1.97400 (0.44260) ***
소득	0.00017 (0.00004) ***
가구원수	0.25680 (0.06959) ***
연령	-0.01652 (0.00628) **
수입가구원수	-0.18930 (0.11450) .
저축률	0.33420 (0.06451) ***

주: 1) ***는 0.001, **는 0.01, *는 0.05, .는 0.1의 유의수준
2) 수입가구원수는 월 수입 200만 원 이상인 가구원 수를 의미함.
3) 일반화선형모형(binomial(link=logit)).



주: "age"는 연령그룹, "saving"은 연간 저축률, "famem"은 부양가족 수, "earning"은 연간 가구소득, "jsYes"는 종신보험 가입, "jsNo"는 종신보험 미가입을 의미함.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가족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큰 소비자(가장)일수록 종신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러한 종신보험 가입자의 특성에 부합한 보험상품 및 채널을 개발, 사용하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욱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보험산업의 미래

김석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5호

최근 인공지능인 알파고(AlphaGo)가 세계 최정상 바둑프로기사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대결에서 승리하여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산업에도 상품 판매 및 언더라이팅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골드만삭스는 금융시장 분석을 위하여 금융분석 인공지능 프로그램 켄쇼(Kensho)를 도입하였으며, A 보험회사는 부담보 동의서 출력, 구체적인 서류내용 안내, 언더라이팅 결과 제공 등의 업무를 자동 처리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4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을 보험요율 산출, 언더라이팅, 그리고 판매채널 등에 도입할 것이며 이는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증가가 보험수요 감소를 초래하는가?

임태준(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6호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15.6%에 불과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33.4%로 급증하였으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3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8.1%에서 2015년 39.6%로 급증하였으며, 2035년에는 5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보험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다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암시하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높은 보험 가입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보험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달리, 경제 전체의 저축 및 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가 납입에 미친 영향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7호

2015년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00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및 IRP 추가 납입은 2014년 대비 7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납입방법으로는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와 IRP 중 대부분의 추가 납입은 IRP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가 납입자들이 주로 이용한 금융기관은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증권사의 성장 또한 두드러졌다. 이는 은행 6,420개, 증권사 1,216개의 지점 수의

비교우위에 따른 금융권역별 고객접근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7호

최근 정부는 기존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와 독립투자자문업(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신규 도입되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은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제공업자를 지칭한다. 독립자문업자는 보수수취방식, 경영·계열관계, 취급상품 범위 등에서 독립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판매와 연계된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해 판매로 간주할 예정이므로, 기존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 이후에는 소비자의 추가비용 부담 여부, 자문서비스 수요, 독립자문서비스의 차별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자문업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연계된 자문서비스와는 달리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 시장 상황의 지속적 점검을 통

한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증가와 위험관리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8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극복방안으로 부동산 PF를 늘리고 있는 추세로 부동산 PF 규모가 2012년 5.4조 원에서 2015년 3월 말 8.7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동산 PF는 자금조달별, 만기별, 자산 유형, 수익률 측면에서 일반대출과 차이가 있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이는 최근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축소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자산-부채 매칭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PF대출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듀레이션 매칭을 목적으로 부동산 PF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PF는 다양한 유형(대출형, 지분참여형)을 갖고 있고 건설경기 악화 등 새로운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요구되어진다.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의료비지출

이정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8호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어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1990년 4.5%에서 2010년 15%로 증가한 반면, 자녀 있는 부부가구는 57.3%에서 37.0%로 감소하였다.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특징 중 의료비 지출 패턴을 살펴보면, 자녀 있는 부부가구 대비 높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크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 없는 가구와 자녀 있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 소득 분위별로는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자녀 있는 부부가구보다 높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자녀 부양을 위한 소비 대신 자신을 위한 소비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일 수 있다. 36~55세까지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 부담이 큰 연령에서 두 가구사이의 의료비는 격차는 커지며, 자녀 있는 저소득층은 자녀 소비지출 부담으로 자신을 위한 의료소비를 줄이는 반면, 자녀 있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자녀 부양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료지출을 많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노년에 자식이 없는 것에 자신이 없어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의료지출을 많이 하고, 노년의 의료비를 위해 저축 및 민영의료·간병·장기요양보험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

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9호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013~2017년 기간 동안 총 1.5조 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주장은 실제 보험 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로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비급여에 대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주장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실제 지급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보장성 강화 영역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의 총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가장 큰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상급병실료의 경우에서도 보장성 강화 대상인 4인실이 급여화 되었으나 비급여인 1~3인실의 병실료가 증가하여 전체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etLife의 SIFI 지정 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79호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대형 보험그룹 MetLife Inc.(이하 MetLife)에 대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이하 FSOC)의 대마불사 금융회사(이하 SIFI)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하였다. FSOC는 MetLife 등 4개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s로 지정한 바 있으며 MetLife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 연방법원은 극단적 재무상황에서 보험그룹이 겪는 재무적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FSOC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업 사업모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FSOC의 SIFI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지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SIFI 지정 취소의 또 다른 근거로 MetLife는 FSOC의 SIFI 지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법원의 금번 SIFI 지정취소 판결은 시스템리스크 규제 적용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주는 위협요인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금융규제 도입 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소송 등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

전용식(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0호

최근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 국내 현지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인수가격이 동양생명 인수가격보다 상당히 낮아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향후 발생할 이차손실 손실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결과 부채가치가 자산가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인수가격이 낮게 결정된 것이다. 즉, 알리안츠 한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손실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금번 알리안츠 국내 현지법인 인수 시 사용된 평가방식은 앞으로 도입될 IFRS4 Phase2 방식과 유사하나 현행 RBC 비율 산정 시 보험부채 평가방식과는 다른 기준이다. 따라서 이번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매각 가격은 매도자인 독일 알리안츠와 매수자인 중국 안방보험이 결정한 시장가격이며 보험회사의 가치 평가 방식이 과거의 자산규모, 시장점유율 등 외형적인 지표들에 따른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번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은 향후 국내보험회사의 가치평가,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과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0호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은 WHO가 정의한 개념으로 질병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의 1, 2, 3위가 식습관, 음주와 약물복용, 흡연으로 모두 건강행태적 위험(behavioral risks)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위험요인에는 건강행태적 위험 외에도 신진대사적 위험(metabolic risks)과 환경/직업적 위험(environmental/occupational risks)이 있는데, 건강행태적 위험이 우리나라 전체 질병부담의 3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진대사적 위험이 29%를 차지한다.

우리와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신진대사적 위험이 건강행태적 위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건강행태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행태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건강행태적 위험은 학력이나 직업 계층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

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1호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사용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 주장의 근거로 2014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총보험료 기준 손해율이 80.2%(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 96.6%)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실제 경험 통계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험상품의 손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통계를 근거로 하여 가공된 수치로 실제 위험보험료보다 과대 계상된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손익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한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총보험료”이나, 정확한 기준인 “(지급보험금+실제 사업비)/총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상기 기준 모두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02%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구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율, 합산비율 등 다양한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포함되는 비교 대상 변수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불필요한 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보험회사의 진출 기회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1호

2016년 1월 17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따라 UN, 미국, EU,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가 부과했던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과의 교역 및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란과의 교역 및 기업의 진출 확대는 교역과 관련된 기업성 보험 수요 증가와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이란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이란의 총수입 금액은 964억 달러이며 이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UAE(34.3%), 중국(28.5%), 인도(5.2%)에 이어 4번째이다. 이란의 원유수입과 자동차 부품, 철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환경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적하보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란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손해보험회사의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높은 시장집중도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이란 진출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란 손해보험시장은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 기준 70.6%로 집중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란은 우리나라 기업들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에게도 기회요인이기 때문에 이란 손해보험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에게 성장기회일 수 있으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고 담보할 수 있는 역량 배가가 필요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여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이러한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운용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하는 수탁자(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엄격한 수탁자책임(Fiduciary Liability)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기금형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ERISA법을 통해 신중한 관리자 원칙(Prudent Man Rule)에 기초하여 수탁자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IG, Chubb, Hanover 등이, 일본에서는 손보재팬(Sompo Japan) 등이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는 미·일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금형 제도와 연계된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2호

146

지난 4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이 중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기대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완화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 활성화 및 새로운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다양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규제당국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운용역량 발전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도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해외투자자와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이태열(선임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3호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민영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민영의료보험

의 최소손해율 제도가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 도입과 함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과는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료보험은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과 비교할 때 위험인수자가 보험회사라는 것만 동일할 뿐이며, 강제 가입 방식에 지역 요율을 사용하고 있고, 인수 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다른 체제의 보험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체제에 있어서도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제3자 지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지역요율을 사용하고 인수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책임보험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보다도 공보험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은 양국 민영의료보험 간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최소손해율 제도는 추가 이익의 사회 환원과 더불어 적정 이윤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사회 환원에만 초점을 맞춘 해외사례 인용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4호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2012년 4/4분기 0.95%에서 2015년 4/4분기 1.67% 상승하였고, 규모는 4,929억 위안에서 1조 2,70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대출채권 유동화 증권을 보험회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원인은 2009년 경기부양정책 시행 이후 투자 증가는 절강, 조선, 중화학공업 산업의 생산규모 확대로 이어졌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기업의 수익성과 대출상환능력 악화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다한 기업부채와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저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저성장기 생명보험 마케팅 전략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4호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언론에 보도된 신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현재 저성장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렴한 상품, 가성비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등 불황

기의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권에 대해서도 보험해지 증가, 약관대출 증가, 저렴한 보험상품 선호와 같은 불황기의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저렴한 상품개발 및 공급, 저성장기에 보험상품 활용방안 홍보와 같은 불황기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연금포털 현황과 평가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5호

금융감독원은 2016년 4월부터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연금가입정보를 개인에 제공하며, 2016년 4월 말 현재 약 1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가입 정보 제공 확대는 통합연금포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해외의 경우 추정연금액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재무컨설팅 및 상품안내에 활용되나 통합연금포털은 제한적인 시뮬레이션 방식과 연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연금포털도 해외사례를 참고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이용자의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정보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

고, 세제비적격 연금상품과 주택연금 등 추가적인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연금가입 정보확인 빈도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적·사적 연금관련 제도 및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알림을 통해 연금정보의 재확인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방안 검토

김석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5호

최근 유병자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고혈압, 당뇨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등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표준하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상승하고 있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60대의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남자 13.3%, 여자 14.5%이나, 개인연금 가입률 증가폭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하체 연금상품 개발은 새로운 시장의 개발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율산출의 어려움과 장수리스크가 매우 높아 보험회사들이 개발에 소극적이다.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표준하체 연금상품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상품 설계가 필요하며 장수리스크와 표준하체의 범위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연금사망률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ISA 판매 현황 분석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6호

ISA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10주가 지난 시점에서 가입자 수는 약 200만 명 가입금액은 총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업권별로 가입형태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시장 점유율에서는 가입자 기준으로 90%의 가입자를 유치한 은행권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가입형태 면에서는 은행 고객은 신탁형 가입형태를, 증권회사 고객은 상대적으로 일임형 가입형태를 각각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경우 ISA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인데, 이는 ISA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ISA 판매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회사는 ISA가입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간접투자 및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 되고 있는 만큼 시장변화에 대비한 ISA 제공에 관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평가와 시사점

임태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6호

일본중앙은행은 지난 2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였으나, 3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기

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 가치 하락 및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신흥국 경제위기 등으로 증폭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 증대로 이어져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불거진 일본통화당국의 환시장 개입을 둘러싼 미·일 간 입장 차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통화당국은 추가적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월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 금리 도입 이후에도 원화평가절상이 실현되지 않았던 만큼,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환율방어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

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7호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을 허용함에 따라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되었다.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되었으나, 피보험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보험자 동의 방식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 발의되었으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러한 기존 전자서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본인 확인에 있어 자필 서명보다 정확하고,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일반 전자서명의 단점을 보완한다. 또한, 생체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정보만 추출 후 암호화, 분할 과정을 거쳐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함께 요구된다.

금리 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용운(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8호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가 1.50%에서 1.25%로 조정됨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리 인하로 인해 예정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낮아질 경우 환급금이 감소하여 신계약 판매가 위

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채권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금리하락은 금리역마진을 확대시키고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 아울러 금리하락은 금리역마진위험액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기조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금리하락에 대비해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투자처 발굴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을 만족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하락으로 인한 채권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므로 중수익 투자편입비중 확대 등과 같은 수익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8호

지난 20년간 붕괴사고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 보험제도가 붕괴사고 손해 담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거나 붕괴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다.

이로 인해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당국은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법제화 및 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의무보험에 붕괴담보 추가, 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붕괴 리스크 관리 강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 조건

변혜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9호

최근 주요국의 정보 공개정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는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또는 마이데이터(midata)라는 전자공시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정보공시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변형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선택엔진(choice engine)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선택엔진의 예로서는 401(k) plan을 분석하여 각 상품의 점수를 산출, 펀드의 순위 분포를 제공하는 미국의 BrightScope나 소비자의 실제 거래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제시하며, 특정 상품으로 이동할 때의 혜택 또는 비용을 추정해주는 영국의 Gocompare.com을 들 수 있다. 국내 금융 분야에서도 소비자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시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선택엔진 개발자 간의 협력, 선택엔진이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의 데이터 집적, 정보보안 관련 조치 등과 같은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김미화(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89호

장기 요양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5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재무·회계기준 적용 대상 기관을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 둘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 받는 요양급여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급, 셋째, 3년 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개설된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들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법인 기관보다 더욱 빈번하게 허위·부당청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및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이 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안에서 제시한 인건비 지급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브렉시트 현실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0호

브렉시트(Brexit) 현실화로 영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 여파로 EU 탈퇴가 다른 국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원화 가치 하락 및 주가 폭락과 더불어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 하락 추세는 이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해외자산 운용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 설계단계에서부터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자산 측면에서 금리 위험을 헷징하는 소위 매크로 헷징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매크로 헷징은 금리 위험액을 경감시키므로 금융감독자는 요구자본산출액에서 금리위험경감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현재 완전 환위험헷징을 하고 있는 해외자산운용에서도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부분 환헷징 전략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

이기형(선임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0호

영국 교통부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이하 ‘AV’ 라 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2015년 7월 AV 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시험운행규정을 마련하여 AV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에서 AV 사고 시 책임 부담은 현재의 책임보험제도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동운전의 진행정도에 따라 제조자책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drian Flux 보험중개사는 2016년 6월 초 업계 최초로 AV 전용 자동차보험(driverless car policy)을 기존 자동차보험상품에 추가 담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Trinity Lane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 동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현행 손해배상 책임법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자동차보험에 추가하여 AV의 자율주행 리스크로 인한 사고와 장치 등에 대한 부가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상품은 AV 주행사고에 대해 최초로 개발된 상품이므로 향후 다양한 AV 전용 상품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의 논의에 따라 보험약관조항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시판될 테슬라 모델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는 AV의 사고 걱정 없이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회사에게는 다양한 AV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AV 보험의 담보범위 등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AV의 상용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2016년 2월 시험운행기준 마련을 통해 3월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의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1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규제의 폐지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규제 변화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명확하게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 중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폐지이며, 수익제고·자산투레이션 확대·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폐지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활성화 및 수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일 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폐지와 동시에 RBC제도에 집중리스크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더욱 분산하여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후적 규제 패러다임 하에서 보험회사는 더욱 엄격한 자산운용원칙 준수와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의 공동행위 관련 쟁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2호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시술이 보장에서 제외되자, 보험회사의 담합 여부를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약관 변경이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그 취지 내에서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따르는 행위와 별도로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 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행정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특히 표준약관의 제정주체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 이전의 단순한 청원행위만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2호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 과거 문헌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국내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6.8%에 불과하고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공공·민간 보험 가입 실적이 미미하다.

미국, 터키, 일본 등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지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고려한 지진보험 제도 도입과 지진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전속 채널에 대한 감독규제 개편 필요성

박선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3호

우리나라에서 최근 규제 사각 지대에 있는 비전속 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대형 판매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속채널 위주의 감독규제 환경 속에서 대형 비전

속 대리점의 경우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한 형태로 전속 설계사 등과 동일한 감독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속 대리점의 경우 전속 설계사와 달리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제시하고 비교 추천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가 큼에도 전속과 비전속을 구분하는 분리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전속 채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대형 비전속 대리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 개정 보험업법(제303조)은 “규모가 큰 특정 보험모집인”을 명시하여 처음으로 법률상 대형 보험대리점제도(우리나라의 대형 GA와 유사)를 도입하고 이들을 금융청의 직접 감독 대상으로 포섭하였다. 이밖에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 대리점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시 특정상품을 제안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서면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속 채널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비전속 채널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일본 사례를 토대로 판매채널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납부기간 확대 방안

최장훈(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3호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4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질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소득대체율은 최대납부가능기간의 절반수준에 해당되는 실질납부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납부기간이 최대납부기간보다 짧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실제가입시점의 지연과 납부예외 등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시작연령은 18세로 보고 있으나 실제 가입시점은 이보다 상당히 늦어져 실질적인 납부기간이 줄어든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불안정 등으로 상당부분을 납부예외 상태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 연장, 추후납부와 크레딧 제도 등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나 의무가입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59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무가입기간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에 맞추어 연장하도록 조정한다면 실질소득대체율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납부제도의 보완을 통해 납부예외상태에 있었던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납부의 경우 실제로 납부한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으나, 납부해야 했던 과거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면 추후납부제도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군복무크레딧 제도 강화로 국민연금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대납자 소득공제법안의 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4호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임의가입자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임의가입자의 약 80%가 여성이므로, 전업주부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방안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논란과 사적연금시장의 축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즉,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형평성 논란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적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환으로 사적연금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동 법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 사적연금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혜택 확대, 그리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개정으로 만 55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자산 운용 및 연금수령 선택범위가 한층 다양해졌다. 예컨대 과거에는 은행의 IRP에 있는 적립금을 종신행 연금 수령을 위해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경우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적립금 이전 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적립금을 이전시켜 원하는 형태로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 한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수령형태를 분석한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 시 종신행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신행 연금 수령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보험회사로 이동할 수 있어 생명보험회사는 지급기 연금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의 중금리 대출사업 관련 고려 사항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6호

최근 중금리 대출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회사들도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될 경우 중금리 대출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시장을 고객의 위협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존의 고금리 이용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은 긍정적이며 중신용자 규모에 비추어보면 중금리 대출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일 수 있으나 대출수요자의 신용특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요구자본 부담, 추심과정에서의 평판리스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및 사후 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7호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로,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나 이상사고를 냈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하였다. 이로써 경찰이 가해운전

자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의심해 불만한 기회를 상실하였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운전면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자는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한다(법 제88조).

「도로교통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찰사고를 의무로 규정하지만, 신고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교통사고가 2014년 기준 약 80%(905,822건)에 이른다.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으로 교통사고 경찰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인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P2P 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7호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P2P(peer-to-peer)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P2P금융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P2P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Friendsurance는 주택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 등에 대해 P2P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보험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P2P보험업체들은 Friendsurance와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보

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P2P보험 수요가 존재할 것이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재물보험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일부 담보만을 P2P형태로 판매할 경우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을 그룹화해서 보험료를 낮추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P2P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보험회사가 P2P보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벌면제로 인해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취지가 반감되고, 인명경시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오히려 약화되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교특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유

도라는 교특법의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에 대한 폐지,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다만, 교특법 전면 폐지는 수사기관의 업무 폭증 및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특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특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본질적 업무 위탁 필요성

김석영(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9호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도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금지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본질적 업무에 대해 제3자에게 업무위탁을 금지하는 이유는 금융업의 인·허가 취지를 훼손하여 인허가 행정행위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회사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 본사의 통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단순한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수지침이나 지급심사지침 자동화과정에서 본질적 업무의 위

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핀테크가 활성화될 경우 본질적이라 해도 자동화가 가능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경영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자회사 또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금융업 인·허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의사결정 등 핵심적 사항을 제외하고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 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초장기 국고채 도입 의미와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399호

2016년 8월 기획재정부는 초장기 국고채 신규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여 50년 만기 국고채의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초장기 국고채 도입의 기대효과는 첫째, 정부 측면에서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및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채무관리 능력 향상이다. 두 번째 기대효과로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장기 투자 자산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거나 다양한 장기 투자 자산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초장기 국고채 도입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장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를 감소시켜 금리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국채 만기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채권발행시장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되고, 보험회사는 장기 우량회사채 투자를 통한 투자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는 금리기간구조의 왜곡완화 및 장기 국채시장 유동성 증가를 통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강성호(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1호

노후준비가 덜 된 은퇴직전 세대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50세 이상자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금자산 축적을 강화하여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추가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연간 700만 원)을 증액하거나 여기에 적용되는 공제세율을 높여주는 탄력적 세제정책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생산물리콜보험의 활성화 필요

송윤애(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1호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recall)사태에서 보듯이 리콜은 기업의 존폐여부가 거론될 만큼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이다. IBK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리콜비용이 최대 1조 9,548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50조에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리콜손실위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리콜보험이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리콜보험은 불량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비용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며 이에 따른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책 평가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2호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보완대책으로 고소득층까지로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둘째 자녀부터의 남성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다자녀 우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출생아 2만 명 + α대책」을 발표하였다.

첫 자녀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의료비를 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고소득층의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산모의 연령이 높아서임을 고려할 때 지원금 정책이 저소득층만큼 고소득층에게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또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 수당을 인상의 경우, 애초에 남성의 육아휴직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직장문화에서 수당인상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번 긴급보완대책과 같이 단기적인 출산율 등락에 대응한 정책이 반복되게 되면 장기적인 시계를 갖는 근본적인 대책이 등한시될 수 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육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최근 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은 만혼·비혼으로 인한 혼인 건수 감소와 자녀 없는 부부가구 증가 등 가족형성 패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안정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혼인, 출산,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이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

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2호

160

9월 30일 시행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체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보험금 지급지체가 가능한 합법적인 사유가 현행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것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보험금 지체사유의 명문화 및 확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 적용 및 구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

오승연(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3호

건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행태인 소위 행동적 해이(behavioral hazard) 현상이 주목 받고 있다. 행동적 해이는 의료이용자의 잘못된 심리적 편향으로 인한 실수나 행동편향(behavioral bias)에서 비롯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을 말한다. 행동적 해이는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와 구별된다.

행동적 해이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과소이용은 본인부담액이 높을 때 심리적 편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과소이용할 수 있다. 행동적 해이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을 줄이면 의료소비자가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후생이 높아지게 된다.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본인부담액을 높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치가 큰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은 낮추고 가치가 낮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은 높여 필요한 의료의 과소이용과 불필요한 의료의 과다이용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비급여 관리 관련 논쟁

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4호

최근 국정감사 실시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현행 비급여 진료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성희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풍선 효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비급여 문제는 의원급에 집중되어 있고 비급여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분석 및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전해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생성되거나 진료량이 확대되지 않도록 비급여 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둘째, 의원급을 비급여 관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셋째,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서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최창희(연구위원)·송윤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4호

최근 개인신용정보 조회 조건을 강화한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해 신용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제도 개선 이후 개인신용정보 취득상의 어려움으로 일부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보험 계약이 보험자로부터 거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문제를 신용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원활한 신용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채권자의 개인 채무자 신용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신용거래를 위축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신용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신용정보법에 예외 조항 추가, 신용정보 관련 타 법 개정 등을 통해 신용거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조재린(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4호

162

2016년 10월 한국회계기준원(KAI)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IFRS4 2단계 도입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K-IFRS의 제정·개정(이하 제정)절차는 크게 ‘IFRS 제정 참여’단계와 ‘IFRS 채택 절차’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번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4 2단계 도입 연기에 대한 요청은 ‘IFRS 제정 참여’단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제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법인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실효성 제고 방안

변혜원(연구위원)·박선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5호

최근 대형 법인대리점 영업행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상품비교가능성 제고 및 특정 회사상품 구매 강요행위의 금지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동 개정 규정은 대형 법인대리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감소시키고, 독립대리점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상품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번 조치가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와 항목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판매자가 조건검색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상품들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의향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이에 맞는 보험상품을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는 의향 확인 과정과 더불어, 비교상품 중 특정 상품을 추천권유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확대와 그 배경

조영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5호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하였다. 이들의 해외투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자국 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한 전략이지만, 시장 및 규제 환경도 해외투자에 우호적이었기에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순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저금리 환경에 대응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변동성이 높아 환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환경이다. 국내 보험회사는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해외투자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자율적 환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도입과 과제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5호

지난 10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한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해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였다. 과거 변액연금 상품은 투자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만

기 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옵션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상품도 판매되었다.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번 판매규제 강화는 이에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로 소비자가 기존 원금보장 변액연금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병행하여 원금보장 변액연금상품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GMAB 수수료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모집 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금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상품이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타 업권의 투자형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타 업권과 유사한 수수료 구조 적용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평가

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6호

미국 등 선진국이 글로벌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보험회사들의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중안보험(众安保险)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탕샤오베이(糖小宝)’를 출시하는 한편, 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알리안츠는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KAISHI’(임산부와 태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 건강보험시장에 진출하였다. 최근 중국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을 통한 신 수익모델 창출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혁신과 협업의 결과로, 그 배경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와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건강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국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업환경에 맞는 제도적 정비 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헬스케어 인프라에 대한 육성 정책의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관련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금저축 가입 현황과 맞춤형 세제 지원 필요성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6호

최근 연금저축 납입액, 적립금 수령 행태 및 금액 등을 분석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가 분석한 연금저축 가입자의 행태를 요약하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평균 28만 원으로 적은 수준이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역시 6.4년으로 짧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연금적립액

이 적고 적립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기 위해 연금수령 인정 기간인 5년에 맞춰 연금을 수령했다는 의미이다. 이를 토대로 해석할 때 현재 연금저축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충분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령 및 연금저축 납입의사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가입자에 특화된 연금저축 세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고차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력 제고 필요

송윤아(연구위원)·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6호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규모는 2015년 기준 367만대로, 신차 거래량의 2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지만, 중고차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만연하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판매자가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허위 고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

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구매자가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에 오류·허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보증책임 이행에 대한 구속력과 접근성이 미흡하다. 이에 보험제도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의 보험책임 이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7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해당 이익을 기업내부에 유보시킬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환류세제의 내용은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시키고 이전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당기순익에서 투자, 임금인상분, 배당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금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소득에 대한 환류세제 적용은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세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보험회사의 현금보유에 대한 과세는 미래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지급여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회계연도에 법인세 부과 시 납부환류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 방식을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보험 판매채널 진출 의미

김석영(연구위원)·이선주(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7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이미 튜링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하면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보험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이 앱의 형태로 개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기존의 온라인 판매채널이 가진 단방향 소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설계사채널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전속설계사 수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험산업의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설계사 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완전판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지비용은 기존의 설계사채널에 비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보험산업 진출로 보험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의 당선과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방향

이승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7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대표공약 중 하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기조 아래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폐기 또는 축소를 들 수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2010년 제정되었다. 특히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FSOC에 미국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로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그룹의 지정 및 이들에 대한 강화된 감독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저항을 받아왔으며, 특히 SIFI 지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상·하원의 구성으로 봤을 때 도드-프랭크법의 존립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변화폭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폐기 또는 축소 등 미국 금융규제의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 일변도이던 국제적 금융규제의 기조를 흔들 수도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8호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상품 자유화 조치로 인해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시장퇴출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보험산업 퇴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산업 퇴출제도 가운데 현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이전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분담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반면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비례형의 일본식이나 절충형의 캐나다식 등은 향후 국내 손실분담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에 참고해볼만한 방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 방안과 고려 사항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8호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현재 성장세가 둔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기간 연장, 현재 200만 원인 비과세 혜택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ISA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SA가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제혜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1.5%에 불과한 낮은 수익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ISA흥행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며 단지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층 및 자산가의 ISA가입 유인을 강화하여 이들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증식이 ISA의 도입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가입대상 확대의 초점을 중산층으로 전환하여 동 계층에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 방안

김석영(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8호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IFRS17 제도 도입 시 보험회사(특히, 생명보험)의 재무회계 자본 및 가용자본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보험회사의 자본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사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재보험은 전통적인 위험전가와 더불어 요구자본, 가용자본, 자본 비용의 변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

선시킬 수 있어 해외에서는 위험전가와 손실가능성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의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금융재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활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순환과 해지환급금

임태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9호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경기변동과정에서 가계의 재무건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변동이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이 장기적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변동하는 현상을 뜻하므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이 가계의 재무건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한 해약환급금의 순환변동요인(cyclical component)을 살펴보아야 한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순환변동요인을 산출한 결과, 해약환급금은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추세보다 감소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또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의 순환변동요인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해약행위는 반경기순환적

(counter-cyclical)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하강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해약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해약이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경기불황기에 해약률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평가와 과제

정성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9호

정부는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 실손의료보험 인프라 정비,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2016.12.20).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상품 구조 개편안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단독형 의무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손실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보험료 산출원리의 이해 부족에 따른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인 비급여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본형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풍선 효과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상품 구조 개편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충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및 공·사 간 협업의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의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이규성(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제409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 완화, 위자료 상향 조정 등 제조물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경제주체의 수익 변동성을 강화시켜 관련 사고 발생 억제 동기 유인을 부여하고 관련 보험 수요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따라 PL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들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부합하는 PL보험상품을 개발해 시장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리뷰 포커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계와 개선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호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시행된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써버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IRA(개인퇴직계좌)를 보완한 제도이다.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이직 또는 퇴직 시 나오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설정된 IRP로 이전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IRP 도입 당시엔 퇴직연금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지표에 의하면 2016년 3월 말 IRP 적립금은 11조 3,617억 원으로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법정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은 IRP로 이전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금재원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IRP로 이전된 퇴직적립금의 경우도 약 80%가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도인출은 IRP 해지로 이어져 IRP의 본연목적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 간의 연계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불어 전업주부, 저소득 공무원 등은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로 형성되고 있으며 엄격한 연금수령요건으로 연금으로 전환이 미흡하다.

따라서 IRP제도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자영업자 이외에 전업주부,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IRP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정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도 자동적으로 IRP로 이전을 의무화하여 퇴직일시금이 연금재원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60세 정년연장 추세에 맞추어 퇴직급여제도에서 IRP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도인출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자율적인 인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정년연장 추세에 맞추어 IRP 자동가입 연령을 60세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의 비과세 검토가 필요하다.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비: 생애말기 의료비를 중심으로

오승연(연구위원)·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호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사망률 저하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는 미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나오면서 의료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령뿐만 아니라 생애 말기 의료비와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65세 이상 인구)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부분과 노인 1인당 의료비 증가로 인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5세 이하 연령층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은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지만, 기대수명 증가가 노인 1인당 의료비를 증가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만성 질병 환자들의 증가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말기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애 말기 의료비 급증의 원인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부문 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의 생애 말기 의료비는 같은 연령의 생존자에 비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애말기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비급여의료비 지출 양상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과 비슷하게 고령자의 생애 말기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은 같은 연령의 생존자 보다 크고, 사망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애 말기 의료비가 고연령일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1인당 의료비 증가가 생애 말기 의료비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대수명의 증가가 1인당 노인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생애 말기 의료비뿐만 아니라 건강수명에

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수명 증가는 노년기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건강수명의 증가로 노인들이 과거보다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고령화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노인인구 수 증가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쳐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데는 연령뿐만 아니라 건강수명과 생애 말기 의료비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애말기 의료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급성질환 치료중심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로 의료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순인데, 이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다. 만성질환의 발생 이전부터 예방하고, 발생 이후에는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 과제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호

본고는 최근 도입된 ‘내집연금 3중세트’ 등 주택연금 제도를 검토하고, 가입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평가한 후 주택연금의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 소득흐름으로 전환하여 노후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4월에 기존의 주택연금에 비해 대상범위와 지원수준을 확대한 ‘내집연금 3중세트’를 출시함으로써 노후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내집연금 3중세트’ 주택연금은 기존의 ‘일반형’에 추가하여 대상범위와 지원수준 확대를 통해 가입유인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의 소득보장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인 세대의 노후소득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노인빈곤 해소 등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에 의하면 약 1억 9천만 원의 주택은 60세 이상 대상자의 소득대체율이 23.9% (실질소득대체율 15.2%)로 추정되었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1분위의 소득대체율은 48.1%, 5분위의 경우는 12.6%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입자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거노인가구, 하우스푸어 등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의 가구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유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도의 도입 여건 평가 및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3호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근로자가 모든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9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 지속적인 수익률저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자산을 대표상품(특정투자상품)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디폴트 옵션제도는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탁자책임 등 가입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등과 달리 기금형이 아닌 계약형제도로 운용되어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디폴트 옵션제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가입자 교육을 통해 투자지식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폴트 옵션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대면교육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키는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즉 영세사업장의 가입자 교육을 자산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디폴트 옵션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사전에 대면교육을 통해 제대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수탁자가 아닌 가입자의 이익보호 차원에

서 충실의무, 주의의무, 자산배분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디폴트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탁자책임을 명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리스크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리스크측정, 운용기관감시 등으로 구분한 수탁기관 리스크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통해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퇴직연금가입자의 안전자산중심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제도초기에는 원리금보장상품중심으로 디폴트투자상품 구성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의 변화와 특징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4호

본고는 고령화 단계별로 OECD 주요국이 대응한 공·사적 연금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빈곤 문제 등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연금의 미성숙으로 향후에도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3.1%(2015년),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단계를 먼저 거쳐 온 OECD 주요국은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상당히 개선시켜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고령화 단계별로 보면, 고령화사회(7~14%)에서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14~20%)에서는 공적연금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적 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2007년 15.1%, 2010년 12.8%, 2012년 12.6%)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OECD 주요국이 고령사회에서 추진한 공·사적 연금의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방향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개혁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차등제도 적용

정성희(연구위원)·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제1호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에서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고·청구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건강보험사들은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차년도 갱신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무청구자 할인(No Claim Bonus/Discou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에서 연간 공제금(Annual Deductible) 운영에 상응한 가입자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험료 환급제도(Premium Refund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험료 차등제도를 통해 무사고, 무청구자 혹은 소액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손 가입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료 차등제도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의료과다 이용자(Risky)와 의료필수 이용자(Unlucky)를 구분하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관된 기준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보험료 할

인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보험료 할인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실손보험료 수준 유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거치연금의 노후소득 증대 효과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제2호

노후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퇴 시 모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대다수 은퇴자는 자산의 일부만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건강악화 시 비용에 대한 대비,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치하락, 그리고 유산상속에 대한 동기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과 자산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유동성 확보 방법 간의 상호 노후소득을 비교해 보면 즉시연금보다는 거치연금을 활용할 때 연소득액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은 사망률이 적용되므로 자산운용보다 높은 소득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거치연금은 대기기간 동안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한 보상 효과로 인해 즉시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커지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치연금 판매는 매우 저조하므로 거치연금 활용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여 거치연금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혼·비혼자의 성별 특성과 저출산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제3호

174

초혼연령과 30대 비혼율의 급격한 증가가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저출산 대책이 기혼여성의 출산력 제고에서 만혼·비혼 해소를 위한 고용 및 주거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만혼·비혼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일 자리와 주거 문제 외에 결혼시장에서 남고여저 구성비의 변화는 비혼·만혼 증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남녀의 비혼율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율과 소득에서는 여성의 경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노동시장 참여율과 소득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과 반대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결혼과 부부관계에서 남성은 경제력을 부담하고 여성은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부부관계가 여전히 사회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혹은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것이라면 고용과 주거 정책이 초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으나 배우자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비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시장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출산을 하락을 반영할 경우 중단기적 저출산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목표 출산율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거래 비용의 표준화 필요성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제4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28일부터 퇴직연금의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 정보를 통합 공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연금 공시 서비스의 실시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최근 외부 비용(explicit costs)뿐 아니라 내부 비용(implicit costs)도 포함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 금융규제국(FCA 2016)은 거래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여 표준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계산방법을 표준화하면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며 또한 자산 관리자가 금액에 걸맞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를 위해 발생비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부 비용을 거래가 이루어진 실제 자산 가격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 자산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기본개념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내부 비용 계산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자본·채권 시장 등에서의 거래수단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므로 비

용 계산의 표준화가 이러한 거래수단 변화에 대한 흐름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한 공개 등 상세한 정보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국제 비교

오승연(연구위원)·김미화(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제4호

국제보건기구(WHO)는 재난적 의료비 기준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가구소득의 40%를 넘게 지출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 비중은 3.7%로 매우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비중이 높은 원인은 본인부담 의료비(out of pocket payment)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상한액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상한액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OECD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본인부담상한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며, 유럽 선진국 중 비교적 본인부담금이 높은 벨기에의 경우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약 57~23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우리나라(120~5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가계 의료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 심사 등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 오바마케어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제4호

2016년 제45대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공약으로 오바마케어 완전폐지와 함께 각 주의 법률에 의해 특화된 건강보험상품을 모든 주에서 판매토록 하여, 보험회사 간 경쟁을 증진시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폐지 여부와 폐지할 경우 그것을 대체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국의 건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역사상 최저로 낮추었으며, 의료비 관리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오바마케어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 평균보험료 상승과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 전망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약 2,400만 명의 신규보험혜택자들은 무보험자가 될 것이며, 이 중 약 1,450만 명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구체적인 대안 없는

완전폐지는 트럼프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완전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폐지 대신 과반 투표만으로도 가능한 예산 재조정(budget reconciliation)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연기연금의 혜택은 누가 받는가?

정원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분석

제4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신청연령이 도래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1개월 늦추면 연금수령액은 0.6% 늘어나는데, 최대 60개월을 연기하여 최대 36%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본 제도의 도입취지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고령 이후 충분한 연금을 수령케 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도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기연금은 기대여명이 평균보다 긴 사람들에게는 신청유인이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 및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연기연금의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연금 이자율을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2016년 주관 행사

정책·경영세미나
국제세미나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고령화포럼
금융정책포럼
기타행사



Chapter

정책·경영세미나

- 제주의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과 가능성
- 한국의 지진 리스크, 현황 점검과 대비 방안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 방향
-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방안
- 자율주행차시대, 법적 현황과 과제
-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

제주의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과 가능성

행사명 : 2016 제주 글로벌 금융허브 세미나 | 주관행사

180

행사개요

- 일시 : 2016. 4. 22(금) 14:00~16:00
- 장소 : 메종글래드 제주
- 주제 : 주제, 글로벌 금융허브가 가능한가?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축사 : 원희룡 (제주도지사)
 - 발표 : 김석영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제주 지역은 그간 중국인 관광특수 등 관련 서비스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힘입어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서비스 산업과 여타 산업 간 균형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정학적 특성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제주는 관광 부문의 견실한 성장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싱가포르도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금융허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오랜 시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차별화된

발전 모델을 갖게 되었다. 이에 역외(offshore) 금융시장의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 제주가 향후 금융허브의 한 축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 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업과 농림·어업 등 양대 산업을 발전축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평균 50.6%에도 미치지 못하는 36.4% 수준이다. 제주 지역 금융업은 중간수요율이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지역 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높은 편이다. 지역금융의 원활한 공급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지역발전이 다시 지역금융을 촉진하므로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제주의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금융의 역할을 통해 실물과 금융 간 선 순환적인 균

형발전 도모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이 지역 내 자금수요 부족으로 자금을 역외운용 중이나, 지역 내 기업의 영세성으로 새로운 자금 수요처 발굴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내 금융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탄탄한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이전,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BT), 아시아 컴퓨터 영상기술(CGI) 등 미래성장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해외 주요 금융중심지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글로벌 ‘mid-shore’ 금융중심지로서 싱가포르에서 관리되는 자산은 1.4조 달러로 홍콩(2.2조 달러)과 함께 아시아의 양대 **Wealth Management** 시장, 외환거래 규모는 동경을 넘어 아시아 최대이며, 캡티브는 66개가 등록되어 아시아 최대 시장이다.

버뮤다는 배후에 전 세계 캡티브 70%인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는 장점이 있다. 최소한의 규제, 우수한 인프라, 낮은 세율(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없고, 높은 소비세와 관세 및 사회보장세만 존재)을 유지하고 있다.

라부안의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er**에는 투자지주, 무역, SPV, 선박, 파트너쉽, **Protected Cell Company** 등 9,487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전략, 고객 비밀주의 유지 및 이슬람권 시장에 대한 경쟁력

이 성공 요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으로 금융수요가 많은 동북아의 지역적 중심지이고 제도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 조세특례 적용, 국제적 교육시설 인프라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생태계적으로 우수한 환경유지로 금융인력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

제주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은 **Mid Shore** 지향, 제주의 경제적 부가가치 외부 유출방지, 제주도 산업구조 개편, 기존 산업과 시너지 가능 모델 제시, 여론 조성, 그리고 고임금/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초기 모델로 캡티브 보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 일본기업의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 증가 추이 등으로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의 캡티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잠재적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도와 가까운 거리에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지역이 없고 관광과 금융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다.

캡티브보험을 도입 시 주요쟁점은 캡티브 보험회사의 부실화, 재보험 비용 부담 및 보험료 산출 어려움, 세금 이슈, 국내기업에 대한 캡티브 보험 허용 문제, 전문인력 부족 및 고용효과, 그리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다.

캡티브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진입형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허용지역, 대상, 범위를 명

제주도는 금융발전을 통해 실물과 금융 간 선순환적인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 금융중심지인 싱가포르, 버뮤다, 라부안은 캡티브보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제주도가 캡티브보험을 도입할 경우 관광과 금융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확히 하여야 하며, 세제 및 인적·물적 지원과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치 지원조직 구축 및 금융인프라 구축이 요구되어지며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캡티브보험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지진 리스크, 현황 점검과 대비 방안

행사명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6년 제1차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한국리스크관리학회·보험연구원 공동 주최)

183

행사개요

정길호 과장 (국민안전처)

- 일시 : 2016. 6. 2(목) 14:00
- 장소 : 코리안리 12층 강당
- 주제 : 한국의 지진 리스크, 현황 점검과 대비방안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이창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사회 : 장동한 교수 (건국대)
 - 제1주제 : 한국의 지진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 개선 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우리나라 지진방재 기술과 정책 (국민안전처 박병철 대형복합재난 협업담당관)
 - 제3주제 : Earthquake Risk Modeling and its Application to Risk Management (RMS 김영석 박사)
 - 제4주제 : 지진화재로 인한 리스크 및 경감 대책 방향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영규 수석 전문위원)
 - 토론 : 장동한 교수 (건국대)
김형준 교수 (서울시립대)
신동호 교수 (상명대학교)
이기형 박사 (보험연구원)
이범 전무 (삼성화재)

개최배경

과거 문헌에서 살펴 볼 때 과거 한국에 강한 지진이 다수 발생했고 추후에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정책성보험이 각종 자연재난 리스크를 담보해 주고 있으나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성보험이 부재하고 지진 리스크를 민간 보험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지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진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1주제

과거 문헌을 살펴보면 과거 한국에는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상당 수 발생했다. 기상청이 기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사람들이 한국의 지진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CEA를 통해 지진 리스크를 주정부가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가 일본지진재보험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지진 리스크를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일본지진재보험회사, 정부가 분할 보유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과거 2차례에 걸친

대형 지진 발생 이후 의무 지진보험제도를 보험료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지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현재 국민안전처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지진방재종합계획 등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국내외 지진재해 다발 및 대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진피해 가능성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진피해발생 후 상황 파악이 불가능한 초기단계에 피해추정 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피해결과를 근거로 한정된 구조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구조, 구급 및 초기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으로 국내 발생지진 및 위험정보

제공, 피해추정 기능, 긴급대응시스템, 대응 매뉴얼, 가속도데이터 및 기초데이터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관측 정보를 받아 피해를 예상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지진해일 침수 예상도를 작성해 이를 전국 지자체 상황실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주민 대피를 지도하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각 지역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지진발생 시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내진설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지진재해경감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95. 1월 고베지진 계기로 정부는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등 관측시스템 고도화, 시설물별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정비 등 내진설계 상위기준 설정, 내진설계기준 재정비 및 성능평가 활성화 등 내진대책 추진, 대응 및 복구, 교육 및 훈련, 연구기능 강화 및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내진설계 상위기준 설정, 시설물 내진대책 추진, 지진·지진해일 대책, 대응 및 복구, 교육 및 훈련, 연구기

능 강화 및 산업육성, 지진방재 기반구축 지원 등 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의 지진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제3주제 지진 리스크는 지진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지역 및 발생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두 다른 지역에 발생할지라도 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내진 설계, 인구 밀도 등이 지진 피해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진 발생 후 일어나는 화재, 쓰나미, 분화 등도 지진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필요가 있다. RMS는 각 지역의 지진 발생 확률 및 지진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해 지진발생 가능 지역의 지진 발생 규모에 따른 피해 유형별 피해규모를 추정한다.

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의 진동 형태는 *Macro seismic Intensity(MMI, EMS, JMA)*, *Peak Ground Acceleration(PGA)*, *Spectral Acceleration(SA)* 등의 모델로 측정된다. 각 지역의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규모는 *Mean Damage Ratio(MDR)*, *Scientific Research and Engineering Studies*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취약성 모델을 활용해 수리 모델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RMS는 지진의 움직임(*motion*) 모델, 지역별 취약성 모델 등을 고려해 각 지역에 특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시 일어날 수 있는 인명, 재산 피해를 금전적 모델로 제시한다.

제4주제 한신 대지진(1995.1.17), 동일본 대지진(2011.3.11), 샌프란시스코 대지진(1906) 등에서 볼 때 지진 발생 이후 일어나는 추가 사고의 특징은 시가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쓰나미 화재, 산업시설의 화재·폭발과 환경재난 등으로 요약된다. 과거 지진발생 문건기록에 따르면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 일대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 수도권에 과거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중부 수도권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아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할 시 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해 고려해보면 국내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가지 지진화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폭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 쓰나미 화재와 쓰나미로 인한 화재·폭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에는 지진화재 리스크와 관련한 제도가 부재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지진화재 리스크 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Exposure* 관리 필요
- 밀집 시가지의 방화구획 필요
- 자주 소방대 조직 의무화 또는 지원
- 내진·내화 보강지원 현실화(조세감면, 보험료 할인)

한국에는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진보험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터키 등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예방 기술 도입 기간 단축
- 일반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도 지진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개발 및 장려 정책 필요
- 보험산업(화재보험), 지진피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설명 강화

토론 토론자들은 한국이 지진 리스크에 비해 지진관련 제도가 부재해 이에 대한 도입 논의와 관련 기초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했고 추후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행사명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87

행사개요

- 일시 : 2016. 6. 16(목) 15: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1층)
- 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 소비자 편의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 발표 및 토론
 - 개최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축사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 : 허연 교수 (중앙대)
 - 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 소비자 편의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대환 (동아대)
김홍중 (생보협회)
서인석 (의사협회)
신현웅 (보사연)
이동훈 (금융위)
이재구 (손보협회)
이창준 (복지부)
채경옥 (매일경제)

개최배경

현재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높은 소구력에 힘입어 제2 국민건강보험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실손보험금 지급관리체계의 미비로 「손해율 급등

→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현행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모색해 보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 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현재 약 3,2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대표보험으로 성장해 왔으나, 비급여 부문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와 실손보험금 지급관리체계의 미비로 「손해율 급등 →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 상품 및 포괄적 보장 구조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제한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부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이 대부분 선량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소형 병원과 근골격계 비급여 의료비에 집중·심화되고 있으며, 비급여 의료의 명칭, 코드 등이 의료기관 별 상이하고 비급여 의료의 가격·진료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진료 적정성 평가가

현재 단일 상품의 포괄적 보장구조와 특약형 위주의 판매 관행에 따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상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편의성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미흡과 관리체계 미비로 실손보험금의 적정성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손보험 통계의 보험업계 집적관리 기준 부재로 보험회사의 통계관리가 부실하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먼저 과잉진료 방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된 보장 구조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소비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부과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3,200만 명의 기존 실손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계약전환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실손보험금의 청구·지급통계 및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 세분화에 대한 업계기준 마련 등 실손 보험금 통계 인프라 재정비와 함께, 비급여 의료 정보의 표준화·사용 의무화 추진 및 공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토론 이날 토론과정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코드사용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 전문심사체계 마련, 비급여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명 :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세미나 | 주관행사

189

행사개요

- 일시 : 2016. 6. 28(화) 14: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 주제
 - 제1주제 : 퇴직연금시장 환경 변화와 보험산업 대응
 - 제2주제 : 개인연금시장 환경 변화와 보험산업 대응 -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 발표 및 토론
 - 발표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 사회 : 이봉주 교수 (경희대)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60세 정년시대 도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시장 환경 변화의 내용 및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제1주제에서는 향후 퇴직연금시장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 변화를 경험한 미·일 보험사들의 대응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주제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영업과 개인영업과의 연계를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일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보장성 기능을 조합한 상품, 수탁자배상 책임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연계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 재무행태를 반영한 다양한 옵션 연금상품 개발 등으로 퇴직급부 배분(지급)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주제에서는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라 정년의무화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증형 크레바스연금(가칭) 및 공사연계연금(가칭)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연금법 제정은 연금성격 및 도입취지를 고려하되 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 제정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인연금법 제정은 연금성격 및 도입취지를 고려하되 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 방향

행사명 :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191

행사개요

- 일시 : 2016. 7. 15(금) 7:30
- 장소 : 더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 주제 :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방향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사회 :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 제1주제 :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대응 및 시사점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 방향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개최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보험산업은 미증유의 힘든 환경에 직면해있다. 이에 더해 향후 부채시가평가 등 급격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어 보험산업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을 모색하는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회사 수익성 하락 및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

로 하는 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은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일본, 대만, 독일 등 해외 주요국 보험회사들 또한 저금리로 인한 금리역마진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로 부채부담이율이 높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보다 금리하락 속도가 빨라 투자수익률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높은 부채부담이율 및 투자수익률 하락이 금리역마진 초래하였다.

이에 주요국들은 보험회사가 금리역마진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환경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격자유화, 해외투자규제 완화 등 준비금 적립 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보유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회사가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에 대응한 준비금 추가적립과 이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및 보험산업 환경,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시행한 EU Solvency II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에 대응한 준비금 추가적립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금융당국은 시장환경과 도입영향을 고려하여 신지급여력제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준비금 추가적립을 위한 영업이익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수년간 여러 차례의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 최장 16년 동안의 경과조치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대규모 외부 자본조달이 어려우므로 영업이익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들이 상품포트폴리오를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소비자보호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은 작년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둔 생각이다. 이미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지난 1월과 4월 가격·상품 자율화 조치를 완료했고, 대부분 과제를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자산운용 규제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하여 금리 변화와 과거에 판매된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비용 및 신규 자본 확충 등 파장이 클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서가 발표

되면 세부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행사명 :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보험연구원 공동 주최)

193

행사개요

- 일시 : 2016. 9. 30(금) 15: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 주제 :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환영사 :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 축사 : 김수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사회 : 정홍주 교수 (성균관대)
 - 제1주제 :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상품 공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 토론 : 김철영 국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국)
남상욱 교수 (서원대)
백광엽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이규복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조운미 운영위원장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차경욱 교수 (성신여대)

개최배경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자후생 증대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후 1년이 되어가
는 시점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보험연구원은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주
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동 세미나를 통해 금

융규제 개혁 이후 이루어진 소비자 보호와 관련
된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1주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에서 제시한 보험규제 개혁은 상
품개발의 다양성 확대와 상품가격의 자율성 제
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
자의 상품이해력, 상품 비교가능성, 판매자 신
뢰성, 효과적 사후적 감독 등이 전제되어야 한
다. 동 발표는 소비자의 상품이해력 제고 관련
제도와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교
공시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검토하
였다.

먼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너무 많
은 양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
로 제공하고 있어, 정보의 단순화와 이용 편의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저축성 보험
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의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는 의의가 있으나,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
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상품이해력을 높이기 위
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로드맵 시행 이후 비교공시가 강화되었으
나, 비교공시사이트들은 아직까지 소비자의 이

현재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험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험금의 조기소진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가정의 소득보장 원칙을 훼손시켜 피해가정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는 가정파탄을 넘어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피해가정의 보호측면과 사회적 리스크의 경감차원에서 보험금 지급방식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가가능성이나 사용가능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효과적 정보공시를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 확인사항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교공시의 사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이화여자대학교 주소현 교수는 보험소비자 보호의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호주의 보험소비자 보호 시스템과 행위규제 내용을 소개하였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기구인 Federal Insurance Office(FIO)가 보험상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연방 정부 규제는 보험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산하의 PRA와 함께 독립기구인 FCA가 금융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Consumer Insurance Act 2012에서 보험상품 거래 의무를 명시하였

다. 호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인 APRA가 있고, ASIC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소현 교수는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스템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에서 사전적, 사후적 활동을 포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각국의 금융 및 규제 환경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상이하나, 독립된 소비자보호 기구가 존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 및 사후적 규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주소현 교수는 각국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에 활용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 제42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195

행사개요

- 일시 : 2016. 10. 11(화) 7:30
- 장소 : 조신포텔 2층 오키드룸
- 주제 :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발표 : 임준환 동향분석실장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내수 회복 부진과 수출 감소로 개인의 저축 및 투자 여력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한 보험 회사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저금리로 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예정,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감독 환경 변화도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몇 가지 근거를 토대로 보험산업의 보험료 전망을 제시함과 더불어 보험수요 변화 및 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보험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발 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16년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저축성보험 부진은 2017년에도 이어져, 2017년 전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부진으로 2016년 증가율보다 1.0%p 하락한 1.7%(퇴직연금 제외 시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증가율이 둔화되고 개인연금 부진도 계속되어 2016년 증가율보다 0.9%p 낮은 2.9%(퇴직연금 제외 시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의 배경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몇 가지 환경 변화를 제시

2017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2.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주요 경영과제로는 경영목표 재정립, 금리위험 및 자본구조 관리, 자산운용, 신수익원 창출, 판매채널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하였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관심 확대 및 인구구조 변화, 둘째, 저성장과 저금리 장기화, 셋째, IFRS17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금융규제 변화, 넷째,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이 주요한 환경 변화로 거론하였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 경영과제로 경영목표 재정립, 금리위험 및 자본구조 관리, 자산운용 전략 개선, 신수익원 창출, 판매채널 관리,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 손해율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에서 벗어나 비용관리, 위험관리, 자본관리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가치를 제고가 요구되며, 전 방위적인 경영목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성과 및 보상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가 이루어지면 자본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본을 최적화하기 위한 위험평가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며,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요구자본 관리를 고려한 부채 특성에 따른 투자전략(LDI)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험에 대한 관리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최저보증이율 위험의 효율적인 헷징 방안 마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수익원 창출과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자

문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방안, 후취형 변액보험 판매 확대, 중고자동차 보증연장보험 도입,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행사명 :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97

행사개요

- 일시 : 2016. 10. 27(목) 15:00~17:2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 주제 :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축사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주제발표 :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정호열 교수 (성균관대)
 - 토론 : 조연행 대표 (금융소비자연맹)
박종화 상무 (손해보험협회)
박성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화)
전선선 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
범죄수사팀)
김일태 팀장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문홍주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최배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는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과 과실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과실상계제도는 운전자의 사고예방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등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과실상계제도가 사고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나타난 과실비율 분쟁 증가의 원인은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와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주장 반복, 그리고 이로 인한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이다.

사고정황 관련 공신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운전자들의 주장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주관적인

최근 과실비율 분쟁 증가의 원인은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 의무화, 수정요소 적용의 법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법원 주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복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분심위가 적용하는 수정요소 적용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수정요소 적용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에서도 다른 과실비율이 결정되며 과실비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과실비율의 일관성, 즉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일관성과 형평성의 훼손은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과실상계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여 운전자 주장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이 주도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 의무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경찰신고 의무화 등 법과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운전자의 구두 진술에 근거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각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현장에서 전해들은 사고 내

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 내용을 운전자에게 보여주고 서명 확인을 받는 것이다. 사고 운전자들의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기록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다면 최소한 운전자들의 주장 반복에서 초래되는 과실비율의 변동성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실상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수정요소 적용의 법원 가이드라인 확립이다. 수정요소 적용방식은 단순화되어야 하고 객관화 되어야 한다. 즉, 2개 이상의 수정요소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선 방안 도입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 의무화 방안의 경우 사고 운전자의 진술을 문서화하고 과실비율 결정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면서 운전자의 주장 반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운전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고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고 사고보고서 작성 및 작성결과 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인 수정요소 적용의 법원 가이드라인 제정의 경우, 과실비율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증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에서는 공신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원이 주도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학계, 업계, 법조계, 경찰이 참여하는 T/F 를 구성해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행사명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공청회 | 주관행사(한국계리학회·보험연구원 공동 주최)

200

행사개요

- 일시 : 2016. 11. 28(월)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환영사 :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
 - 축사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회 : 오창수 교수 (한양대)
 - 제1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상품구조개
선, 단독형 활성화 (최양호 한국계
리학회 학회장)
 - 제2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관리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진현 교수 (서울대)
김홍중 본부장 (생보협회)
박소정 교수 (서울대)
서인석 보험이사 (의사협회)
손주형 보험과장 (금융위)
이재구 본부장 (손보협회)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동아일보)
이창욱 보험감리실장 (금감원)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복지부)
정세창 교수 (홍익대)
황기두 금융보험팀장 (한소원)

개최배경

실손의료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국민대표보험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비급여 부문의 과잉진료와 상품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는 현행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구조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병원이 이익 창출을 위한 의료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 증대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반복될 경우 고령층의 실손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및 판매채널의 수당 보전을 위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관행이 만연하여 가입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현행 상품의 보장 항목 중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고, 소비자가 ‘기본형’

현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상품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의 특약화와 자기부담금 상향, 패키지 판매 관행의 근절을 위한 단독화 방안, 실손가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부과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정보 표준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 간 협력과 함께 보험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는 ‘기본형+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약으로 분리할 항목으로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로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특약형의 자기부담 비율을 기본형(20%)보다 높게 설정(30% 이상)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끼워팔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실손 의료보험의 단독화 방안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단독형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TM 등의 채널 다각화 및 판매 유인력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연납 납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주제 실손의료보험 비용 부담 구조를 보면 실손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대로 이중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는 4%에 불과하여,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부분 선량 가입자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실적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No Claim Bonus/Discount) 당해연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Premium Refund System) 등의 보험료 차등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부과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제도 도입 검토 시 보험료 할인·환급 재원 확보를 위한 적정 보험료 수준 유지와 함께

의료 필수 이용자의 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급여 의료의 명칭, 코드 등이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고 비급여 의료의 가격·진료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실손보험금의 적정성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손보험 통계의 보험업계 집적·관리 기준 부재로 보험회사별 통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보건당국이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GOA)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인 만큼, 공·사 간 협력과 함께 보험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금의 청구·지급통계 관련한 보험업계 기한 준을 마련하고, 손해율과 비용 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토론 이날 토론과정에서는 실손보험 정상화 및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상품구조 개편, 자기부담금 비율 조정, 실손보험 손해율 적정성 검증 시스템 구축, 비급여 서식 및 코드 표준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방안

행사명 :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203

행사개요

- 일시 : 2016. 11. 30(수) 15:00
- 장소 : 코리안리빌딩 강당(12층)
- 주제 :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축사 :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 사회 : 정기택 교수 (경희대)
 - 제1주제 : 헬스케어서비스 현황과 과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산업 활용방안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대중 부연구위원 (보사연)
김동진 상품기획팀장 (교보생명)
김원식 교수 (건국대)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조선일보)
방사의 의사 (삼성서울병원)
임진환 본부장 (에임메드)
정형선 교수 (연세대)

개최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적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많은 나라의 보험산업은 IT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의료

행위가 포함된 헬스케어서비스를 비의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제공 사례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연구원 국내외 현황 및 제도 정비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참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헬스케어서비스는 질병 예방 강화와 산업 간 융합으로 최근 들어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ICT, IoT, 바이오 등 IT 기술의 접목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다.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사전진단·사후관리·일상관리로까지 서비스의 제공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도 기존 의료기관과 환자 중심에서 제조사·통신업체·보험회사와 건강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건강 맞춤형 서비스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이다. 헬스케어서비스의 최근 트렌드는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건강 관리” 및 “산업의 공급자·서비스 간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기기가 점차 소형화·모바일화 되고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하려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식사량·혈압·운동량 등 건강상태를 기록·관리하려는 추세가 확산되

우리나라도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비의료행위 기준 마련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판례상 생활습관 개선 지원은 비의료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자회사로 참여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 처방전을 활용하여 비의료행위 업무를 건강생활서비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중산업 진입으로 공급자 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스마트기기, IT 플랫폼 등의 보급으로 서비스 간 연계가 용이해지면서 통합적·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가 긴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 다음의 과제 추진을 제안해 본다. 국민의료비 관리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비의료행위 기준 마련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규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강정보의 생성 및 관리 주체와 정보의 다양화에 따라 보호 정책을 강화하되, 정보 표준화 및 클라우드 허용 등을 통한 활용 확대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건강생활서비스(Wellness Service)

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국내에서 동 서비스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뿐이다. 건강생활서비스는 1단계 건강위험도 측정 및 건강위험수준 계층화, 2단계 첫 회 상담을 통한 행동목표 설정 및 처방전(지원계획서) 작성, 3단계 지원도구(문자, 전화, 이메일 등)를 이용한 생활습관 개선 지원, 4단계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면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어서 비의료행위 부분은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특정 행위를 권유하였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는 경우를 비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단계와 4단계는 비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은 현재의 법제하에서도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함으로써 비의료행위 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은 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를 자회사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피보험자와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피보험자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회사는 질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어서 서로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지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첫 회 상담을 통한 행동목표 설정 및 처방전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개인별 처방전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생활서비스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처방전 작성 등 의료기관의 업무가 증가하며, 처방전 작성을 위한 의료정보가 비의료기관에 집적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여 단기간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필요성과 함께 보험회사나 헬스케어서비스 업체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허용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으며, 더불어 정부가 주축이 되어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역할 범위 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율주행차시대, 법적 현황과 과제

행사명 :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정책토론회 | 주관행사(강효상 국회의원실·보험연구원 공동주최)

206

행사개요

- 일시 : 2016. 12. 9(금) 10: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제 : 자율주행차 시대, 법적 현황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강효상 (국회의원)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축사 :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사회 :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1주제 :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제2주제 :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과 손해배상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문영준 소장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준 교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김준기 부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백재호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홍운석 센터장 (교통안전공단)
정의경 과장 (국토교통부)

개최배경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그에 따른 도로교통체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고, 특히 자율주행차 단계별 발전에 따른 책임주체 확정과 운전자, 제

조사의 법적 책임 분배 및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강효상 국회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제도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제1주제

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도로교통안전국)는 2016. 9. 20. ‘연방자율주행차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캘리포니아주는 2016. 9. 30. ‘공중운행규정’ 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자율주행차 관련 미국의 정책 및 규정의 변화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우리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차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 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 정의 시 자동차 기준의 정의방법과 운전자 기준의 정의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자동차기술협회)의 분류 기준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관련하여, 미국 NHTSA가 발표한 정책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험운행 주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 NHTSA 성능 가이드스, 시험운전자 요건 및 교육, 사고보고의무, 자율모드 이탈 보고의무 등

자율주행차의 정의, 시험운행 및 공중운행과 관련하여 미국연방 NHTSA와 캘리포니아주는 각종 제도 및 규정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자율주행차 사고 시 그 법적 책임을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보호, 자동차보험제도, 불법행위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NHTSA에서 제시하는 각종 시험운행 관련 제도를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자율주행차 공중운행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규정상의 각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규정은 제조사의 사고 관련 주행 기록의 보존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출의무, 안전결함 보고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의무를 우리 법제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을 가로막는 법’이 아닌 ‘길이 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2주제 현행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 책임이,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이나,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현행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 피해자 구제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한적인 반면, 자율주행차 자체 하자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율주행차 제작사(하드웨어 제조사 및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고, 나아가 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제작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고예방, 안전성 제고는 물론 손해배상책임 범리상으로도 타당하다.

제작사 책임부담의 구체적 형태로는, ①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안, ②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③ 자율주행차 제작사 및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공동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위 각 방안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토를 거쳐,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관련 산업의 발전, 사고 원

인 규명 및 예방, 불법행위책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책임 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현실적 운영 방안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

행사명 :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 정책토론회 | 주관행사(김성태 국회의원실·보험연구원 공동주최)

209

행사개요

- 일시 : 2016. 12. 26(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InsurTech) 혁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성태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축사 :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제1주제 : 블록체인 - 4차 산업혁명의 국가 핵심
인프라 (인호 고려대 교수)
 - 제2주제 : 인슈어테크로서의 블록체인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정유신 교수 (서강대, 핀테크 지원센터장)
 - 토론 : 김연준 과장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김 욱 전무 (교보생명)
박성준 교수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신승현 대표 (테일리금융그룹)
이재형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조준상 단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단)

개최배경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 보험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인슈

어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실과 보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 주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인 구변화와 산업환경의 급변에도 낡은 성공 패러다임에 집착하여 소프트웨어, 디지털 혁신을 각 분야에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신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현 경제 위기를 타계할 중요 전략이다.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GDP의 10%가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하고 창조적 파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산업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다양한 플랫폼 활용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위에 거래가 될 정도로 시장이 크고 중간 유통업자가 없어 P2P(Peer-to-Peer: 개인 대 개인) 비상장 주식 거래, 전자 상거래, 전자투표, 클라우드 펀딩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 또한,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노드(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모든 거래 장부를 복사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검증하기 때문에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정치, 공공, 행정 서비스에서도 혁신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 4.0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이 투명성과 익명성을 지원하므로 전자투표에 응용되어 투표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여 국가적인 블록체인 산업 로드맵을 작성하여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시범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2주제

인슈어테크(InsurTech)란 보험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보험관련

핀테크(FinTech)를 의미한다. 최근 보험산업에서 인슈어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사업모형이 제공하지 않는 소액금융, 맞춤형 상품, 실시간 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 행동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슈어테크는 상품개발부터 보험지급 단계까지 보험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하다.

보험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다양하게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만약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면 보험업 가치창출 프로세스의 검증 및 확인 절차가 단순화되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사업모형 도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연계

보험 및 소액보험 개발과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보험회사는 컨소시엄 구성 또는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스타트업은 신상품 개발 및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경영적, 기술적, 규제적 측면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 첫째 경영적 측면에서는 보험업에 접목가능한 새로운 사업모형 발굴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통해 기술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보험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보안과 노드 확보 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제적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메커니즘과 계약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법적 분쟁 및 소송 관련 제도가 정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Chapter

2

국제세미나

-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행사명 :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

214

행사개요

- 일시 : 2016. 10. 19(수) 09:00
- 장소 : 조선히텔 그랜드볼룸(1층)
- 주제 :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o 개막사 :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 o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o 축사 :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 o 기조연설 :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 o 세션 1. 해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전략
 - 제1주제 : 저금리 환경하에서의 보험상품 혁신 (앤드류 개스켈, RGA 글로벌 상품 개발팀 수석계리사)
 - 제2주제 :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사례 (린 볼 송, 푸본생명보험 투자부문 상무)
 - 제3주제 : 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리: AXA의 경쟁우위 (장 세바스티앙 라가세, AXA 글로벌다이렉트 ACD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
 - o 세션 2.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 제4주제 :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따른 보험 회사의 자본관리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5주제 : 보험산업 국제회계기준 대응방향 (박진해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팀장)

o 토론

- 좌장 : 이창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 린 볼 송 (푸본생명보험)
- 박진해 (금융감독원)
- 앤드류 개스켈 (RGA)
- 장 세바스티앙 라가세 (AXA)
- 조영현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연동형 상품을 확대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역마진으로 보험회사의 손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IFRS4 2단계가 예정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저금리 장기화와 규제 변화는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하락 및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과 대만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저금리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1주제 RGA 글로벌 상품개발팀의 앤드

류 개스켈 수석계리사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보험급여 대상은 늘고 있으며, 의료비와 생존율이 높아져 보장금액도 늘고 있어 보장을 높이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효율적 언더라이팅(보험심사) 강화 전략으로는 웰니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운동, 식단, 알코올 섭취, 흡연, 수면패턴 등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해 청구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저금리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보험사들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유지율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보험계약 심사(언더라이팅)를 다양화하는 RGA의 사례를 소개했다. 저금리 대응 해법으로 투자 위험을 공유하고 보장 중심의 상품 설계를 해야 한다.

제2주제 제2주제 발표에 나선 푸본생명보

험의 린 볼 송 상무는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만 생명보험회사는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고자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해외투자 비중이 1995년에 2%였으나 2005년 31%에서 2015년 58%까지 급증하였다. 해외투자 급증한 원인은 첫째, 대만은 국내 채권시장 규모가 작아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필요성이 높다. 둘째, 대만 금융당국의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다. 셋째, 대만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재무상태표에 외환충당금 계정(FX volatility reserve)을 허용하여 외환 오픈포지션에 의한 손익변동을 완하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대만은 변동관리 환율제로 환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만 생명보험회사는 헷지 만기와 헷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해외투자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푸본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최적 헷지전략을 수립하며, 헷지비율을 70~80% 수준에서 조정하고 헷지만기는 주로 1년 미만으로 함으로써 헷지비용을 낮추었다.

한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해외투자 비중을 급증시키고 있으나, 대만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IFRS4 2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듀레이션 확대 및 투자수단 다양화가 필요하며, 해외투자는 좋은 대안이다. 단,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제3주제 장 세바스티앙 라가세 AXA글로벌다이렉트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는 조직 내 리스크 관리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XA는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직 내에 확립하기 위해 15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직 내 리스크 관리를 전략적으로 확립하고, 이 모듈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을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XA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계리사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각 지역 CRO에게 보고하고, 로컬 CRO들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보고 체계로 CRO는 각 지역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파악하고 독립성과 책임을 가질 수 있으며, CEO는 리스크에 대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위험관리 향상을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결정하고 솔벤시II를 도입한 AXA의 경우 조직 내 자본관리의 투명성과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솔벤시II 도입 후 약사는 주요 사업 결정에서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제4주제 제4주제 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은 어려운 외부 자본확충 환경과 자본비용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이익의 내부유보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

이 바람직하며, 금융당국 또한 보험사별 내부 자본확충여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채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량과 변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부채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큰 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하락 시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부채시가평가 제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관리 방안은 자본확충과 ALM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익과 신계약가치 제고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주주와 채권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 신종 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 등 외부조달을 통한 자본확충 환경은 어렵다. 외부 확충보다는 내부 유보를 통한 확충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익을 내부유보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최근 자산듀레이션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듀레이션 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장기자산의 부족으로 대다수 생보사가 해외투자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리스크 및 다

양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또한 필수적이다.

제5주제 제5주제 발표에 나선 금융감독원 박진해 팀장은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국제회계기준과 건전성 감독기준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을 마련해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고 보험회사 지속성장을 위한 감독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새로운 회계기준과 위험관리체계가 시장에 연착륙하는 데 감독 방향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또한 급격한 부채 증가에 대비해 미리 자본확충에 나서고 장기적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정비에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부채 공정가치 평가, 손익·자본변동성 확대 등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도 이에 맞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감독당국도 정책지원, 경영전략 모범사례 연구 및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IFRS4 2단계 시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이번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발표자들과 함께 저금리로 인한 보험업 위기상황 진단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Chapter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장기보험 계약가치 평가 및 활용 방안
- IFRS4 2단계하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시장 구조 변화 및 투자 환경
-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위험경감기법 비교와 활용 방안

장기보험 계약가치 평가 및 활용 방안

행사명 : 제18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20

행사개요

- ☐ 일시 : 2016. 3. 17(목) 16:00
-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 주제 : 장기보험 계약가치 평가 및 활용방안
- ☐ 발표 및 토론
 - o 발표 : 장원재 박사 (메리츠화재)
 - o 토론 : 황인창 박사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메리츠화재는 장기보험 계약가치를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험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계약가치의 공정가치 평가는 영업보험료, 보험금, 환급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 유출과 유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위험율, 유지율, 적립이율, 사업비율, 할인율 등은 평가시점에 최선가정으로 재산출된 값을 사용한다. 특히 할인율은 평가시점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수익률을 기초로 산출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위험률은 담보, 갱신 여부,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모델을 만든 후

채널, 성별, 연령, 직업급수별 상대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유지율은 배당유무, 납입 방법, 판매채널, 상품군, 만기에 따라 경과기간별로 산출한다.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에 보험계약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사업비는 신계약 판매 시 직접적으로 변동하는 비용인 비례수수료, 신계약 성과수수료, 미유지 환수수료만을 고려한다.

다음으로는 신계약의 공정가치를 고객기여수익률, 1-수당배분율, 영업보험료현가로 분해하고, 영업보험료현가는 다시 계약유지기간, 건당보험료, 인당 계약 수, 설계사 수로 분해한다. 그리고 모든 보유계약의 공정가치를 경과기간별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메리츠화재는 담보별 집중리스크 관리를 관리하고, 수당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성과평가와 연계함으로써 현업 스스로 손해율, 유지율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 손익 변동성에 연계한 위험자본비용부과(risk capital charge)를 통해 현업부서의 리스크관리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위해 메리츠화재는 전사 가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사의 통일된 가정 관리 및 검증, 가정별 주관부서 선정 및 크로스 체크 활동을 하고 있다.

IFRS4 2단계하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행사명 : 제19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21

행사개요

- 일시 : 2016. 5. 18(수)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IFRS4 2단계하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오세경 교수 (건국대학교)
 - 박기남 박사 (건국대학교)
 - 토론 : 박진해 팀장 (금융감독원)
 - 노건엽 박사 (보험개발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liquidity)과 관련된 이슈는 최근 10여년 사이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다. 그리고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통해 자본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2008년에 은행의 유동성 규제 체계를 보다 강화한 기본원칙을 공표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사들이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유동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IFRS4 2단계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에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하에서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인율의 기간구조를 추정하였다. 브로커 중심의 장외 채권시장이 발달하고 신용 파생상품이나 커버드 본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무차익 접근법의 일종인 정부보증채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유동성 프리미엄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고채의 유동성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측정하고 기간구조를 추정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의 유동성 과잉·부족, 신용 우량·경색 등에 따라 정책당국이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를 위해 이론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동성 프리미엄의 측정과 할인율 추정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시각 : 구조 변화 및 투자 환경

행사명 : 제20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22

행사개요

- 일시 : 2016. 11. 17(수)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8층 회의실
- 주제 : 최근 중국경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시각
: 구조변화 및 투자환경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최유삼 자문위원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중국경제는 지역별로 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하고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시각도 비관론과 낙관론이 오랜 기간 동안 혼재해 왔다. 기적을 달성했다는 중국내부의 시각과 언젠가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외부의 시각이 그것이다. 일부지역과 업종에서의 국지적 경착륙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경착륙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경제는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이 근간을 형성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로서, 외부에서는 중국 당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목표는 안정과 발전으로 매우 간결하

고 명확하며 매년 6%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탄탄한 제조업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이노베이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보다 앞선 부문에서 catch-up해가면서 중국 내의 value chain도 완성되어 가는 흐름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투자주도형, 신용팽창형 성장모델의 유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중국도 성장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좁은 길을 지나야 한다. 구조개혁은 어느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정책과제이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 구조개혁이 작동할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하다. 90년대 구조개혁과 함께 WTO 가입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 지방정부 주도하에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이 중국경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듯 새로운 도시화, 시장화 및 혁신에너지 창출을 통해 중국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계 금융회사들은 IPO부터 M&A까지 대형 deal flow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기회를 통해 성장경로를 넓아가면서 약진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최근에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바, 홍콩 국제금융시장도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빠르고 저렴한 차입이 가능하고 rule of law 확립을 통해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위험경감기법 비교와 활용 방안

행사명 : 제21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23

행사개요

- 일시 : 2016. 12. 21(수)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위험경감기법 비교와 활용방안
- 발표 및 토론
 - 발표 : 노건엽 박사 (보험개발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외 지급여력제도에서 제시하는 요구자본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국내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최근 해외의 지급여력제도 동향을 살펴보면 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하여 지급여력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IAIS의 ICS 도입(2020년 예정), 유럽 Solvency II(2016년 시행), 중국 C-ROSS(2016년 시행), 캐나다 LICAT(2018년 시행) 등 제도가 변경되며,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 회계기준인 IFRS17은 2021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신 RBC)를 준비하고 있다. 신 RBC 도입 시 보험부채는 시가평가에 기반하며, 요구자본은 시나리오 방식으로 산

출된다. 또한 요구자본의 신뢰수준이 현행 VaR 99%에서 99.5%로 상향될 예정이며, 요구자본 측정대상 리스크가 장수, 해지, 사업비, 자산집중 등 현재보다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요구자본량 증가로 인해 RBC 비율이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하여 RBC 비율의 하락폭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CS, Solvency II, LICAT 등 해외 제도에서 위험경감기법은 크게 금융위험경감과 보험위험경감으로 구분되며, 금융위험경감 중 시장리스크는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신용리스크는 담보,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이 활용된다. 한편, 보험위험경감은 재보험, 특수목적회사 등이 활용된다. 파생상품 활용 시 평가기준일에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므로 동적헷지는 표준모형에 적용되지 않고 내부모형승인을 통해 적용된다. 신 RBC 도입 시 위험경감기법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 보험사도 이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보험사의 RBC 비율이 약 300%로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변경 시 비율 하락이 예상된다. 신 RBC하에서는 가용자본 증가 외에 요구자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본 최적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Chapter 4

고령화포럼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OECD 국가의 공·사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행사명 : 2016년 제1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226

행사개요

- ☐ 일시 : 2016. 3. 16(수) 16:00~18:00
-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 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 발표 및 사회
 - o 발표 : 선우덕 박사 (장기요양학회 회장)
 - o 사회 : 오승연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보충적 혹은 보완적 역할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설계과정에서부터 큰 역할을 수행해 온 선우덕 박사를 초빙해서 200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및 서비스 전달 과정, 등급판정, 재정,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현황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였다.

주제발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평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장기요양시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소규모 시설들은 장기요양대상자

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케어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케어 질이 낮은 편이다.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양 만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케어메니지먼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지원센터’에서 care plan을 수립해주고 있다.

또한 요양시설의 케어 수준이 낮은 뿐 아니라 비용부담도 높기 때문에 재가 서비스 장려 정책을 통해 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돌볼 경우 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어 유럽의 경우 현금지원과 같은 가족돌봄 지원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도 현금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공·사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행사명 : 2016년 제2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227

행사개요

- 일시 : 2016. 11. 25(금) 15:00
- 장소 : 보험개발원 5층 회의실
- 주제 : OECD 국가의 공·사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 발표 및 사회
 - 발표 : 이용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 사회 : 강성호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고령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OECD 주요국가의 공·사 연금개혁 정책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적연금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선진국의 연금 및 사회보장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아진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연금을 확충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저성장, 고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관대한 공적연금급여에 반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현재 공적연금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재편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 도입이 늦은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을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도입하였으나, 90년대부터 저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재정안정화 중심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중부담·중급여형’ 내지 ‘기초연금 기반 저부담·저급여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내실이 부족한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중상위 소득계층 및 정규직 중심의 공·사 연금 적용으로 인해 노후보장의 양극화가 심하며, 연금제도 간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발표자는 벤치마크 할 국가로 캐나다의 노후보장체계를 꼽았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내실화하고 공·사 연금 간 구속력 있는 상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제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으며,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낮으면서도 세계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공·사 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낮은 노후소득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적연금 보다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Chapter

5

금융정책포럼

- 미국 GA의 선진 사례와 한국 판매채널의 발전 방향

미국 GA의 선진 사례와 한국 판매채널의 발전 방향

행사명 : 2016년 제1회 금융정책 포럼 | 주관행사

230

행사개요

- ☐ 일시 : 2016. 5. 12(목) 14:00
-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 주제 : GA 선진사례와 판매채널 발전방향
- ☐ 발표 및 토론
 - o 발표 1 : Larry Hartshorn (LIMRA)
 - o 발표 2 : 박선영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최근 들어 판매채널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비전속 채널인 독립대리점(GA) 관련 미국의 선진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판매채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발표

미국 보험시장은 수차례 불완전 판매 스캔들을 겪으면서 2000년 이래로 점차 전속 중심에서 비전속, 즉 독립채널 중심으로 채널 구조가 변화해 왔다. 미국의 보험 판매채널 종사 인원은 33만 5,000명으로 이 가운데 직판조직(Direct Sales Forces)이 14만 5,000명, 독립채널(Independent Sales Forces)이 19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중개조직(intermediaries)은 보험회사와 에이전트 및 브로커 사이에서 판매 및 교육 등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중개조직을 일컫는 말로 브로커독립대리점(Brokerage General Agency, 이하 BGAs), 독립대리점(Personal-Producing General

Agency System, 이하 PPGA), 독립마케팅조직(Independent Marketing Organization, 이하 IMOs)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GA와 가장 유사한 미국의 모집채널이 독립대리점(PPGA)이다. NFP(National Financial Partners)는 1999년에 설립되어 전국적인 소규모 독립법인으로 구성된 보험상품 중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판매중개회사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독립채널들은 회계시스템 및 고객관리 시스템, 후선 지원업무 등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속채널 위주의 규제환경 속에 비전속 채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에 대한 재편논의가 일고 있다. 비전속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특별한 관계나 제후에 따른 이해상충 없이 운영될 필요가 있어 전속 채널에 비해 독립성 요건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판매 채널의 대형화에 따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유럽의 경우처럼 판매인에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기타행사

-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 보험사기 규모 추정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행사명 : 보험연구원 2016년 기자간담회 | 주관행사

232

행사개요

- 일시 : 2016. 4. 28(목) 11:50~13:30
- 장소 : 프라자호텔
- 주제 : 신입원장 운영방침 및 연구방향,
2016년 보험연구원 핵심테마 설명회
- 환영사 및 발표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 발표자 : 임준환 연구조정실장 (보험연구원)
 - 참석자 : 일간지, 경제전문지, 방송사 기자 등
30명

개최배경

신입원장의 취임 1년차 포부와 함께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주 제

신입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험연구원이 현안이슈에 관해 정책 및 전략을 적시에 적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취임 1년차의 포부를 밝혔다. 이론적 접근보다 현장 중시적이고 실행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보험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보고서 결론과 시사점이 현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변화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① 보험부채시가평가 연착륙 방안 ② 비급여의료비 관리 ③ 보험업법 개정 ④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보험제도 ⑤ 보험산업 신성장Ⅰ(사적연금 활성화) ⑥ 보험산업 신성장Ⅱ(해외진출, 핀테크, 헬스케어, 신종위험)을 우선 선정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보험사기 규모 추정

행사명 : 보험사기 규모 추정 과제 설명회 | 기타행사

233

행사개요

- ☐ 일시 : 2016. 9. 26(월) 11:00~12:00
- ☐ 장소 :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
- ☐ 주제 : 보험사기 규모 추정
- ☐ 발표 및 토론
 - o 발표자 : 임준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 o 참석자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심사,
언더라이팅 담당부서장 또는 팀장

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급청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를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개최배경

본 설명회는 보험사기 관련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추정결과에 의하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 5,455억 원이고, 이를 가구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만 원 정도 된다.

추정에 사용된 보험사기 정의는 광의의 정의로 보험금 사기뿐만 아니라 보험료 사기도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추정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과 지급청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의 경우에는 보험사기 관련 보험

III.

2017년 주요 연구계획

회계·자본제도 대응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 제고

신성장 동력 발굴

경영효율화 지원

회계·자본제도 대응

236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방안

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은 회계정보를 보험 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국내 보험 회사 지급여력평가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보유계약 비중이 높아 보험부채 가치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와 자본변동성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IFRS17 도입과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전략

조영현(연구위원) | 보고서

향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IFRS4 2단계와 IFRS9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회계기준과는 달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와 금융자산의 손상 및 분류·측정 기준의 변화 등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회계기준 전환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회계기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새로운 회계기준하에 적합한 자산부채관리(ALM) 및 손익변동성 축소를 위한 자산운용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고령사회에서의 보험역할 제고

퇴직연금세제 환경 변화와 개선 방안

강성호(연구위원) | 보고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적립IRP, 퇴직IRP), 하이브리드형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먼저 퇴직연금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발전시켜 온 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와 OECD 주요 국가들의 퇴직연금 세제 및 특징 등을 비교·검토한 후 퇴직연금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증가 추세로 가입자가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운용하기 위한 가입자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선택

폭 확대로 실효성 있는 투자 교육 등 종합적인 가입자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가입자 교육 체계 미흡으로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가입자 교육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가입자 교육 체계 및 실태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가입자 교육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후 자산포트폴리오 적정화 방안

최장훈(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은퇴 후 노후 소득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자산은 은퇴 전 소득 및 자산, 혼인상태, 자녀유무, 건강상태, 교육 정도,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으면 보험료 지불 여력이 있고 보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보험 가입 비중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자산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노후

자산 구성에서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주요국 공·사건강보험 연계체계 분석

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국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공공 부문과 이해 관계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민영 역할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보장성 확대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는 공·사 간 합리적 역할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공감하면서도, 민영건강보험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를 보충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평가해 보고, 향후 민영건강보험의 발전 방향과 공·사 간 균형적인 협력 모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도덕적 해이 완화 정책의 후생효과 분석

오승연(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보험의 위험보장 역할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개선 방안 도입 시 효율성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보장 기능,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발전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관해 기존 이론과는 다른 사회후생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덕적해이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실손형 보험(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후생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이론 및 실증 결과들을 정리하고, 그에 근거해서 정부 정책 및 상품설계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최창희(연구위원) | 보고서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발생으로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국민들은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에 가입하거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지진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나 지진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지진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를 주요 담보로 하고 있어 풍수해 위험이 적은 개인이 지진 위험 관리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 연구는 해외의 다양한 지진보험제도 현황을 파악해 한국에 적합한 합리적인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건강생활서비스 보험산업 활용 방안

조용운(연구위원) | 보고서

건강보험은 전통적으로 질병 발생 후 보험금 지급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급관리를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질병 발생 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급관리를 하려는 경향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 및 유병자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을 지급관리에 적용시키는 사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 및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심사, 간편심사, 혹은 간편고지 보험상품의 누적 판매건수가 2016년 중반 현재 400백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예방활동을 통한 사전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방활동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및 보험산업이 동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범국가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신질환 보장 상품 활성화 방안

이정택(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신질환 차별금지에 대한 법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에서 정신질환 보장의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은 신체질

환과는 다른 특이성으로 인하여 보장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 실태를 파악하고, 정신질환별 특성을 분석하여 부보 가능한 위험을 선별하여 정신질환의 보장 형태와 위험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 보장에 관한 해외 사례를 통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2001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연간보험료가 2000억 원 규모인 보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동 보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제조물책임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어 제조물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보험약관과 요율제도 등 보험상품도 변화가 적어 활성화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후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제조물책임법의 기능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W 연계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EW(Extended Warranty: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것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서비스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EW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화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에서의 EW 관련 입법례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EW에 대한 적정한 규제 범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EW와 연계한 보험상품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상품 변천과 향후 과제

김석영(연구위원) | 보고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판매된 다양한 보험상품 정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발될 상품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예정이율, 사업비, 보장 담보 등의 변화를 분

석하여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IOT 및 Big Data 기술 발달에 기인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 개발현황을 조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상품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종합 정리 및 상품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상품 개발 전망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영효율화 지원

4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방안

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료 차등제도는 계약자에게 개별 위험 정도를 반영한 보험료를 부가함으로써 보험료 부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국내에서는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에 할인할증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일부 계약자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계약자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한 손해율 급증은 선량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료 차등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 및 적용 이론을 살펴보고, 국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약 1조 5,558억 원으로, 건강보험(전년대비 6.9%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한방진료 관련 법제 미비가 과잉진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국민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개선 방안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경제·사회의 변화는 교통사고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과 방식이 교통사고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금 지급 제도의 경우 보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

란도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의 문제점은 자동차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서 초래되는 불공정성 여부, 실손보상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현재의 지급 기준과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해외투자 환헷징 전략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는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효과적인 환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감독 헷지거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년 이상의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투자 시 통화별(기축통화, 신흥국통화 등), 금융상품별(채권, 주식 등)로 환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V.

2016년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KiRi 고령화리뷰
각종 대외 연구 활동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 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16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1호 (2016년 2월)	제 목	저 자
	소득계층별 위험금융자산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임병인, 윤재형
	포아송 로그-이중선형 모형을 이용한 한국 남성 사망률의 베이지안 추정 및 활용	황지연, 고방원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의 이율보증평가 : 동적해지율 적용을 중심으로	오창수, 박규서
	Optimization of Dynamic Guaranteed Minimum Return, Investment And Reinsurance Strategy By Balancing the Risks And Benefit of Both Insurers And Consumers	Hong Mao, James M. Carson, Krzysztof M. Ostaszewski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General Procedure for Forecasting Mortality	Sang Il Lee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2호 (2016년 5월)	제 목	저 자
	Households Debts and Financial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최원호
	생명보험산업의 연대적 성격에 관한 질적 연구	김현수, 김재현, 김기덕
	인구변화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요율 최적화	장봉규, 최창희
	상품 다각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남윤미, 변혜원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2016년 8월)	제 목	저 자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박준범, 성주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압류·양도 금지 조항에 관한 소고	김성완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과 경영성과	변희섭, 조영현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경영효율성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조석희

2.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동향분석실은 경제·금융·보험 관련 환경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KiRi 리포트』,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제공하고 있다.

『KiRi 리포트』는 격주로 발간되는 웹 저널로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말까지 총 409호가 발표되었다. 특히, 2016년 10월에는 과거 『KiRi 위클리』가 『KiRi 리포트』로 개편되었으며, 그 동안 주간 발간되던 것이 격주 발간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KiRi 리포트』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포커스, 주간 이슈, 글로벌 이슈,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로 구성된다. 포커스는 경제, 금융, 보험산업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제공한다. 주간 이슈는 실물경제와 금융 및 보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핵심 정보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한다. 글로벌 이슈는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금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채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한편, 1년 동안 발표된 『KiRi 리포트』를 집적하여 매년 1회 『KiRi 리포트 모음집』도 발간하고 있다.

『보험동향』은 분기별로 연 4회 발간되며,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시장 동향, 해외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6년 가을호부터 그 동안 제공되던 테마진단은 폐지되었다. 경제금융 동향은 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국내보험시장 동향은 보험회사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집계하여 보험료, 구성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성과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이사항 및 추세 변화 원인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해외보험시장 동향은 데이터 집적이 가능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보험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는 보험회사의 분기별 경영성과, 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시장점유율, 자산운용 수익률, 판매채널 등을 간략히 분석하여 영문으로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는 보험시장을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한 보험시장의 변화 추세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보험료, 수익과 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영문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수요 변화, 보험 가입 행태, 보험산업 주요 이슈 등의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권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결과 데이터와 통계치는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감독 당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일부는 보험 관련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조사 결과를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 활용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분석 자료로 재 활용하고 있다.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해 2016년 5월 시행되었으며,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추출된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총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보험 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기본조사에는 보험 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이유와 관련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에는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가 포함되었다.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6)	연 도	주요 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 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 자산관리서비스, 대출 관련)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2012년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2013년	방카슈랑스 채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2014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LTC(Long-term Care Insurance)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세계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해약/효력상실 해지, 개인정보 보호
	2015년	실손의료보험, 징년제,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노후소득 등의 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2016년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4. KiRi 고령화리뷰

사회안전망연구실이 주관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는 『KiRi 고령화리뷰』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현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사적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시사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 관련 통계, 정책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소개하고 있다.

『KiRi 고령화리뷰』는 과거 연간보고서로 발간되었던 것을 반기별로 발간하다가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월간지 형태로 개편하였다. 『KiRi 고령화리뷰』는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는 포커스, 전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한 이슈분석,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다루는 국내 동향/해외 동향, 고령화와 관련된 각종 핵심 지표들을 업데이트하는 고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령화 지표는 관련 지표들을 인구 및 복지재정, 노동·빈곤 및 노후소득, 건강 등 3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여 순차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공적 사적 부문 간 균형 있는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발간되는 정간물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KiRi 고령화리뷰』의 차별성과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다.

5. 각종 대외 연구 활동

5.1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향” 토론회

행사 내용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6. 3. 9(수) 14:00,
광화문 S타워 컨퍼런스룸 II (22F)
- 사회 : 조준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토론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토론회

행사 내용

- 주최 : 김종석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생명보험협회
- 일시 및 장소 : 2016. 11. 24(목) 09: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사회 : 이주호 (KDI 교수 /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제2주제 : 고령사회의 인프라: 노인고용시장의 구축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6. 3. 25(금) 14:00,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
- 사회 :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 제3주제 : 국내 보험산업의 퇴출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봉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유지호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
-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도산제도는 행정부 단독 주관으로 이뤄진다. 다만 보험선진국처럼 행정부, 사법부, 금융감독국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연금학회, “2016년 제1차 정기세미나”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연금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6. 5. 27(금) 16:30,
금융투자교육원 802호 강의실
- 사회 :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주제 : 사적연금 세제 개선 방안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한국보험법학회 2016년 춘계학술발표회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보험법학회 및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2016. 4. 29(금) 13:00,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모의법정
- 사회 :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1주제 : 보험제도에서의 핀테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서재욱 (푸르덴셜생명보험 법무팀장),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5.2 작업반, 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및 제3보험 상품위원회 참여를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각종 T/F	작업반명 / 주최	참여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도 개선 작업반 / 손해보험협회	전용식
	기업성보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작업반 / 금융위원회	전용식
	EU Solvency 2 기준서 번역을 위한 작업반 / 금융감독원	조재린, 황인창
	재난의무보험 조기정착 민관 합동 작업반 / 국민안전처	최창희
	「재난보험법」 제정 전문가 작업반 / 국민안전처	최창희
	핀테크 선진화 작업반 / 금융위원회	황인창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 작업반 / 국토교통부	기승도
	표준약관 정비 작업반 / 금융위원회	김세중
회의/ 자문/ 포럼	작업반명 / 주최	참여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회의 / 금융감독원 (2016)	변혜원
	신 감독기준 부패평가방안 자문 / 금융위원회 (2016.1~3)	임준
	연금제도 조사연구 제2차 좌담회 / 금융감독원 (2016.3)	전성주
	청계 포럼 / 예금보험공사 (2016.4)	윤성훈
	제3보험 상품위원회 / 금융위원회 (2016.10)	조용운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관련 회의 / 금융위원회 (2016.10)	정성희

6.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6.1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6년 9회를 맞이하였다. 2016년에는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16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16년 10월 19일)	건실한 의료비 보장체계 확립 및 공·사 건강보험 협력 방안	
	소주제	발표자
	저금리 환경하에서의 보험상품 혁신	앤드류 개스켈, RGA 글로벌 상품개발팀 수석제리사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사례	린 볼 송, 푸본생명보험 투자부문 상무
	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리: AXA의 경쟁우위	장 세바스티앙 라가세, AXA 글로벌다이렉트 AGD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산업 국제회계기준 대응방향	박진해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항장

6.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자료 작성과 보험·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와 관련된 일련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 대한민국 OECD 대표부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보험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6년 12월의 제98차 OECD 보험회의까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6년에는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와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는 시장중심의 보험 및 사적연금 시스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보험, 사이버리스크보험, 재해 리스크 재원조달과 보험, 보험산업의 기술혁신(Insurtech)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7.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6년 12월 말 현재 단행본 25,000여 권, 학위논문 1,700여 권, 정기간행물 10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500여 종, 비도서 자료 11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V.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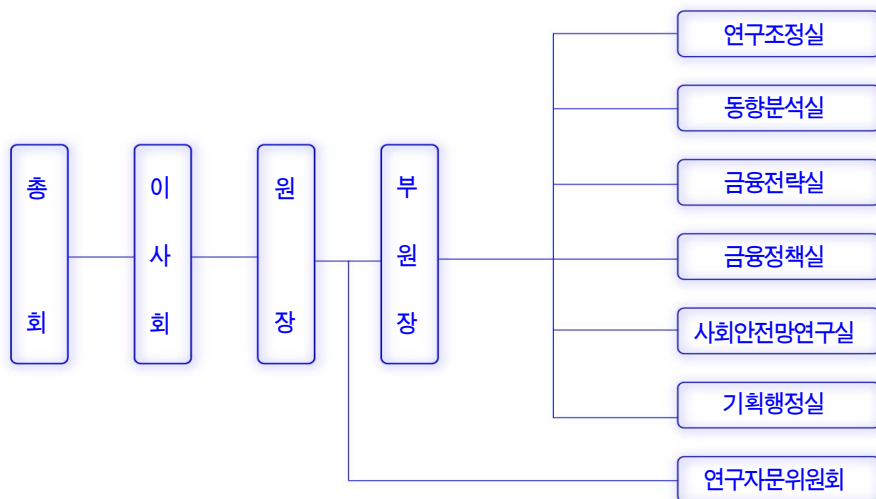
3대 강호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 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 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8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16년에는 2016년 2월 1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2016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6년 연구자문위원회는 2017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16년 11월에 개최되었다.

4. 임직원 현황

(2016.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29	22	4	8	2	5	71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성명	직위	최종학위
한기정	원장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 박사

부원장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결위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안철경	부원장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연구조정실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기타 연구 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업무분야
윤성훈	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김해식	연구위원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학 석사	보험회계, 재무건전성 평가
김경환	감사/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감사, 연구행정 업무
장동식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 정보통계학 박사과정 수료	행사, 연구행정 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홍보, 전산 업무
오상희	인턴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사무보조 업무

동향분석실

-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국내 보험회사 재무분석
-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금융 및 경제관련 주요통계의 집적관리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 보험 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전용식	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김진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최원	선임연구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이소양	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중국동향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전략실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일반생명보험 관련 연구
-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연구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 자산운용 연구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재무건정성감독 연구
-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연구
-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성명	직 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조재린	실장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비모수회귀분석, 최적디자인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최창희	연구위원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 박사	보험계리, 경영과학
황현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수료/변호사	보험법, 상법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황인창	연구위원	KAIST 경영공학 박사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임태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금융경제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채원영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응용통계
이아름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금융, 무역
김미현	연구조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경영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이규성	인턴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한성원	인턴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수료	

금융정책실

-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 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관한 연구
-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연구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석영	실장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임준	연구위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론
백영화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변호사	보험법
변혜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박선영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투자론, 부동산금융, 국제재무, 자본시장
오승연	연구위원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김세한	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 및 보험
박정희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이혜량	연구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박사과정	소비자정보, 공정거래
이선주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이유리	연구조원	고려대학교 언론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마지혜	인턴연구원	단국대학교 법학 석사	

사회안전망연구실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공·사 연금에 관한 연구
- 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사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반 이슈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정성희	실장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응용통계(회귀분석, 실험설계), 보험계리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강성호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최장훈	연구위원	University of Minnesota 통계학 박사	요인분석, 다변량분석, 보험계리
김세중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보험, 연금
이정택	연구위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응용미시, 노동경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김동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김미화	연구원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김유미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김영주	연구조원	단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기획행정실

-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 의전 및 비서업무
-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업무분야
김선아	실장	기획행정업무 총괄
홍성연	파트장	회계, 출장, 규정 업무
이상윤	수석담당역	자료실 업무
이정환	파트장	기획, 총무, 행사 업무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예산 업무
이성원	담당역	급여, 회계 업무
우민선	인턴	사무보조 업무
박규찬	사서	사서 업무
장지연	인턴	사무보조 업무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정기간행물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보험금융연구	연 4회(2, 5, 8, 11월)	사회안전망연구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8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8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KIRI 리포트	격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월간	사회안전망연구실
용역보고서	보고서 명	저 자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 방안: 판매단계 이후 및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박선영 외 4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장기 가입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및 재정 설계	김석영 외 6인	
	우체국 고객복지 증진방안 연구: 시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조영현 외 4인	
	보험상품 표준약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석영 외 3인	
	제2차 자동차기본계획 중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임준환 외 6인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전용식 외 2인	

2016 연차보고서

발 행 인 한기정
편집위원장 윤성훈
편 집 위 원 장동식
편 집 실 무 오상희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17. 1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